



2020년 사업보고 및 결산
2021년 사업계획 및 예산

2021년 2월 25일

(재) 아이쿱협동조합연구소

www.icoop.re.kr

차 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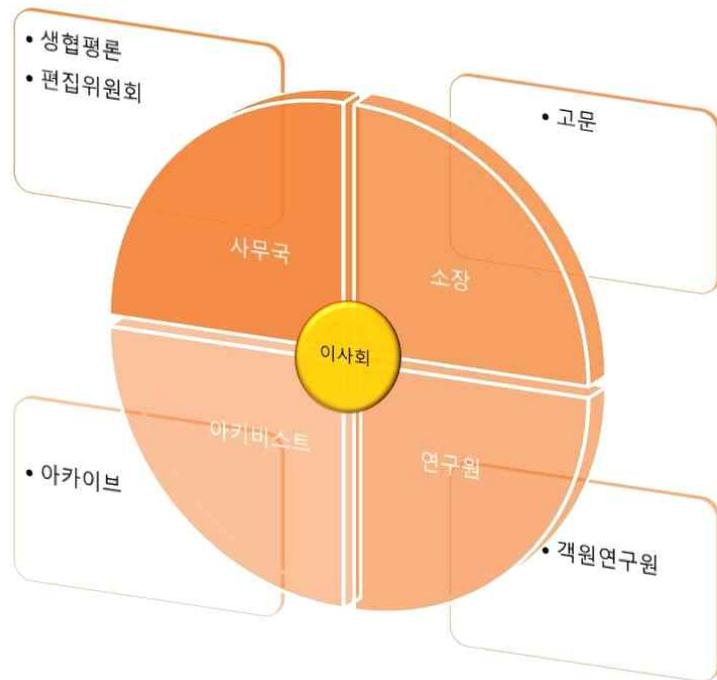
I. 2020년 사업 및 회계 감사보고서	7
II. 2020년 사업 보고 및 평가	11
III. 2020년 운영성과표 및 재무상태표	67
IV. 제3차 중기(2019~21) 활동계획	77
V. 2021년 사업계획 및 예산안	87
VI. (재)아이쿱협동조합연구소 함께하는 사람들	102
VII. (재)아이쿱협동조합연구소 정관	104
VIII. (재)아이쿱협동조합연구소 제 운영규정	113
IX. 연구소 발행 단행본 및 보고서 목록	171

이 사업보고와 사업계획은 2021년 2월 25일
(재)아이쿱협동조합연구소 2021년 제1차 이사회에서 승인되었습니다.

협동조합의 가치

협동조합은 자조, 자기책임, 민주, 평등, 형평성 그리고 연대의 가치를 기반으로 하며, 조합원은 협동조합 선구자들의 전통에 따라 정직, 공개, 사회적 책임, 타인에 대한 배려 등의 윤리적 가치를 신조로 한다.

조직도



아이쿱생협의 싱크탱크와 협동조합운동의 플랫폼

I . 2020년 사업 및 회계 감사보고서

감사보고서

- 일 시 : 2021년 1월 18일 11시 ~ 12시
- 장 소 : 셰이프넷 지원센터 회의실
- 감사범위 : 2020년 1월 1일 ~ 2020년 12월 31일의 업무 및 활동 전반
- 감사자료 : 2020년 사업계획 및 예산자료, 2020년 사업보고와 평가자료, 2020년 예산대비 실적표

2020년은 전례없는 감염병의 유행으로 국내외적으로 모든 분야에서 큰 어려움이 있었지만, 아이쿱 연구소는 3차 중기계획의 두 번째 해의 사업을 무리 없이 마무리하였습니다. 2020년의 주요 사업으로 계획하였던 협동조합 생태계 연구, 연구회 운영, 조사 및 교육사업, 해외연구동향, 출판기금, 생협평론, 아이쿱 아카이브, 연구 후원 및 연구 포럼 등의 여러 사업들이 계획한대로 진행되었습니다. 코로나 19로 인해 연구 포럼 및 일부 대면 접촉 사업이 제한적으로 운영되기는 하였지만, 전체 사업의 흐름에 영향을 끼치지지는 않았습니다.

이사회는 정기적으로 개최되었고 연구소 운영 관련 논의와 연구소의 홍보 및 연구사업, 행사 등에 대한 이사들의 참여도 활발하게 진행되었습니다.

공제 연구회 등 연구회 사업은 현장의 다양한 경험과 필요를 토대로 한 실천 방안의 모색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어 보입니다. 연구회의 연구결과물이 현장으로 공유됨으로써 사회적경제 내부의 실천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회적경제 관련 출판지원, 해외협동조합 연구동향 소개, 생협평론 발간 등은 사회적경제 관련 기본 소양과 지식을 대중적으로 공유할 수 있는 사업으로서 시의적절한 주제 선정으로 사회적경제의 사회적 역할을 확인하고, 연구소와 대중을 있는 가교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연구소와 타 연구기관 대학 등과의 연구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사회적경제 지식생태계 사업은 성격상 코로나 19의 영향을 받고 일부 오프라인 사업이 제한되었지만 다양한 연구사업을 지원하였습니다. 연구 네트워크 기관들과 연구 위탁 및 공동 연구사업을 통해 사회적경제 지식생태계가 보다 활성화될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됩니다.

2006년 연구소 개소 이후 축적되어온 연구소 내외부의 연구역량은 다양하고 깊이 있는 연구 사업의 핵심자원입니다. 축적된 연구역량을 기반으로 한 연구주제 및 분야의 다양화가 향후 기대됩니다.

연구행동으로 세상의 변화에 참여하는 연구소의 모든 구성원들의 사업과 활동이 지속적으로 성과를 거두기를 바랍니다.

2021년 2월 16일

감사 김환식 

(재)아이쿱협동조합연구소 2020년 회계감사 보고서

(재)아이쿱협동조합연구소 이사회귀중

2021년 02월 05일

<감사 의견>

1. 본 감사는 (재)아이쿱협동조합연구소(이하 “연구소”) 정관 제34조에 근거하여 정기 회계(결산)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2. 본 회계감사는 2020년 01월 01일부터 12월 31까지 기간 동안의 수입 지출내역을 표시한 운영성과표와 2020년 12월31일의 재산상태를 표시한 재무상태표를 검토하여, 결산보고서의 적정성 여부를 평가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3. 감사결과 아래의 특기사항을 제외하고 특별한 문제점이 발견되지 아니하였습니다.

<특기사항>

1. “연구소”의 운영성과를 예산과 비교해보면 수입과 관련해서는 고유목적사업상의 기부금수입이 예산을 초과하여 달성되었고 지출과 관련해서는 사업수행비용과 일반관리 비용이 모두 예산에 미달하여 집행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사업수행비용 지출이 예산과 대비하여 크게 감소하는 데에는 2020년이 대면 활동에 대한 제약이 심한 상황이었다는 점이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산 절감의 원인에 대한 심도 있는 분석을 통해 비대면 상황에 맞는 효과적인 예산집행 방안을 고민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 수익사업부문의 운영성과 중 매출을 보면 “아이쿱 공정무역사업 백서” 발간사업과 관련된 계약금액 전액을 매출로 인식하였으나 이와 관련된 비용 1,180만원이 2020회계연도의 비용에 반영되지 않고 2021년도로 이월되었습니다. 이 금액이 비용에 반영되었을 경우 수익사업의 운영성과는 손실로 전환됩니다.

(재)아이쿱협동조합연구소 감사 장



Ⅱ. 2020년 사업보고 및 평가

2020년 사업 총평

[총평]

2020년 3월 11일, 세계보건기구(WHO)는 코로나 19 팬데믹을 선언하였고, 우리의 일상은 정지되었다. 연구소가 계획한 주요 사업들도 정상적인 진행은 어려웠다. 포럼이나 교육 활동은 축소되었고, 연구사업은 계획대로 진행되기는 했지만 영향을 안 받을 수는 없었다. 연구소는 재택근무를 활성화하여 대응하였고, 임직원들과 그 주변 사람들이 코로나 19에 감염되지 않은 것은 다행이었다.

코로나 19 이후의 세계는 그 이전 세계와 달라질 수 밖에 없다. 기후위기를 절감하고 지속 가능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시민들이 총력을 기울여야 할 때이다. 연구소의 2020년 사업도 이러한 흐름의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어, 이사회는 몇몇 단체들과 공동간담회를 기획하여 이후의 방향을 논의하였다. 2020년 연구소 주요 활동은 [표1]에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정리했다.

표 1. 2020년 사업 일람표

분류	사업	성과물
목표1 핵심연구분야 : 인구감소· 고령·사회전 환 시대 협동 조합 생태계 연구	조합원 관여 제고의 가능성 탐색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아이쿱생협 조합원 조사 일람(지민진)
	사회적 가치와 협동조합 연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치 전환 시대의 협동조합의 사회적 가치(지민진)
	공제와 협동조합 연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국 사회적경제 공제의 커뮤니티 기여(이향숙) 플랫폼 노동 종사자를 위한 공제회 설립방안(이향숙, 한국노총중앙연구원 공동연구)
	아이쿱의 공정무역 이야기 정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아이쿱의 공정무역 도서 사업(김선화, 신효진) 아이쿱의 공정무역 백서 사업(김선화, 신효진)
	세이프넷 오너 파트너십 진행 배경과 경과에 대한 자료 수 집 및 기록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세이프넷 소유노동(노동자소유)과 오너파트너십 전개 과정과 의의(이은정)
	담론 연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을 둘러싼 갈등 분석: 행위자 네트워크

		크 이론(ANT)을 적용(염찬희)
	협동조합 비즈니스모델 과 공급사슬 연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ICA CCR 발표문 Entrepreneurial Innovation in a cooperative way: in the case of iCOOP Korea's cluster 공급사슬 연구는 진행하지 않음. 2021년 진행 예정
	학술지·원고 게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국 사회적경제 공제의 커뮤니티 기여(이향숙) 동일성 원칙과 협동조합 조합원 지분에 대한 탐색적 연구(신창섭) 사회적경제 기업의 사회적 성과 분석-부가가치 정보를 중심으로(최은주)
목표1 연구회 운영	협동조합과 노동연구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6회 세미나 진행 생협평론 투고 '노동자협동조합의 노동관계와 노동법의 적용에 관한 검토' (조제희 변호사)
	협동조합조세 제도연구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4회 세미나 진행 제50회 아이쿱포럼 발표 및 자료집 게재
	공제연구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4월 구성. 5회 세미나 진행 일본생협총합연구소 공제연구회 온라인 세미나 1회
목표1 조사 및 교육	수탁연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플랫폼 노동 종사자를 위한 공제회 설립방안(고용노동부 11월 제출. 이향숙, 한국노총중앙연구원 공동연구) 아이쿱의 공정무역 도서 사업(아이쿱생협연합회 12월 제출, 김선화, 신호진) 아이쿱의 공정무역 백서 사업(쿠팡무역 12월 제출. 김선화, 신호진)
	경제·소비 동향 브리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회경제 동향(최은주)
	생활동향 모니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생활 일기 모음집: 2017~2019
	기본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직원만족도 조사 진행하지 않음
	세미나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하계 세미나(2/5) 한국 경제, 최근 경기 동향과 전망 강사: 정준호

		<p>②하제 세미나(9/16)</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반응과 적응 - SAPENet 기업가 역량 개발 · 발표1: SAPENet 기업가 역량 개발 계획(최은주) · 발표2: 세이프넷 역량인정제도 도입과 전망(김아영) · 발표3: Producer 과정 보고와 평가(자료집으로 대체) · 패널토론1: Producer 과정에 대한 참여자의 평가(천우현) · 패널토론2: Producer 과정에 바라는 기대(김홍범)
	직원경영 아카데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6기:4/22-7/1, 군포. 25명 수료 · 제7기:10/7-12/23, 군포. 31명 수료
	세이프넷 기업가 역량 개발 프로그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Producer 과정 제1기: 6/12-8/14, Producer 19명 배출
<p>목표2 선도적 기본 과 토양이 되 는 중장기 연 구와 대중적 학술정론지</p>	해외협동조합 연구동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업과 푸드시스템은 기후위기에 어떤 영향을 주고받는가? (이미옥) · 채식 위주의 식단이 주목받는 이유(이미옥) · 유기농을 넘어 지구환경을 되살리는 농업방식(이미옥) · 식료품 과잉생산과 음식물 쓰레기 해법을 찾아(이미옥)
	출판기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9년 출판기금 지원 「협동조합 클로즈업」(김현하), 1/20 발간 · 「IMP 임팩트 정의와 측정」(문철우), 12월 발간 · 「퀘벡 사회적경제 30년」(Nancy Naetan 지음, 홍기빈 옮김), 2021년 1/4분기 발간 예정 · 「협동조합 경영 아카데미」(신성식), 2021년 중반 발간예정 · 「한국협동조합운동100년사 I, II」요약본 영문판, 2021년으로 발간 연기(비매품) · 아이쿱의 공정무역 도서 발간을 위한 연구 진행
	생협평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8호 사회적경제 법, 제도의 쟁점과 과제 · 39호 재난의 시대, 사회적경제의 길 찾기 · 40호 생협평론 10년, 돌아보기와 내다보기 · 41호 기후위기와 사회혁신, 사회적경제 · 창간 10주년 슬로건 '연대의 길 밝혀주는 지혜의 별자리'
	아이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전자기록물 4,389건 / 전자기록물 8,063건

	아카이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료관리시스템 등록 현황 797건 · 주요수집물: 오너파트너십 연구자료 · 자연드림 매장 자료 · 해외연수자료 · 웹전시: 1회(어느 수감자의 원고: 윤리적 소비) · 기록관리 설명회: 1회(강서구 마을공동체 지원 사업)
<p>목표3 협동조합 교육연구 거점 대학과 의 연계활동 및 아이콤피디어 를 통한 정보 발신</p>	학술행사 후원	· 한국협동조합학회 2020 추계학술대회 후원
	아이콤피 펠로우 공동연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이프넷 역량인정제도 연구(김아영) · 자연드림파크 가치평가 연구(서진선)
	연구 협력 및 후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UNRISD Sustainable Development Performance Indicators 파일럿 테스트 참여(2020.10~2021.2) · IMP 공동연구: 진행되지 않음 · 거점 대학과의 연계: 진행되지 않음 · 세이프넷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에 대한 연구자료 제공
	생협활동가 장학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0년 상반기 9명 · 2020년 하반기 8명
	빛트인 매거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소 칼럼:연구소 이사진이 작성(6회) · 칼럼 '청년, 협동조합에 로그인하다':송주희,이예나,주세운 · 칼럼 '김종걸의 창' 종료 · 12회 전송
<p>목표4 차세대 기회 제공 · 발굴 사회적경제 지적재산의 공유와 보급 에 기여</p>	논문 지원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지원 · 해외 협동조합 선진사례 도입의 과정과 효과 조수미(성공회대학교 일반대학원 협동조합경영학과)
	아이콤피포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50회 협동조합 정체성을 강화하는 세계 개편 방향(사회적경제연대포럼과 공동포럼 진행) · ICA 125주년 대회는 2021년 12월로 연기됨
	외부 포럼 · 세 미나 발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동공제포럼 세미나 '공제의 논리와 역사, 제도와 정책'(이향숙) · 소비자기후행동 공동연구 참여
거버넌스	이사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기 이사회 6회 · 연소라 공동 간담회 1회
	사무국	· 소장직무대행 체제(3월 이후)

- 직급체계 폐지
- 정품소프트웨어 완비(윈도우, MS Office, 한글 등)

이러한 활동을 제3차 중기활동계획에 비추어 보아 평가해보자면 [표2]과 같다.

표 2. 제3차 중기계획 대비 2020년 사업평가

목표	3차 중기 연구·조사 사업
<p>목표 1</p> <p>아이쿱협동조합연구소의 핵심역량 발휘</p> <p>아이쿱생협 운동모델의 이론화</p> <p>협동조합 운동과 연구 견인</p>	<p>◎ 핵심연구분야</p> <p>□ 인구감소·고령·사회전환 시대 협동조합 생태계 연구</p> <p>1) 협동조합 비즈니스모델 연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외 협동조합의 비즈니스 모델, 아이쿱의 경험을 해석·이론화 - 생애주기에 따른 더 높은 차원의 소비자 조합원의 욕구 실현 필요 - 성공한 협동조합 사례를 참고하여 아이쿱의 비즈니스모델 제시 <p>2) 협동조합 거버넌스 연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협동조합 생태계를 형성하기 위한 협동조합 거버넌스에 대한 연구 - 협동조합에서의 조합원과 파트너십, 협동조합과 노동조합,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경영 체계와 관행 발전(예, 협동조합 인사제도) <p>3) 협동조합 법제도 개선 연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협동조합에 고유한 거버넌스를 구현하기 위한 법제도 개선 과제 도출 <p>◎ 연구회 운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도개선연구회: 제도개선이 필요한 분야를 주제별로 세분하여 연구회를 재구성하고 각 연구회에 새로운 전문가 영입 • 생활동향연구회: 기존의 연구회 역할과 내용을 고려하여 적절한 개선방안 탐색 <p>◎ 조사 및 공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탁조사(지역조합, 사업조직, 외부기관의 위탁사업) • 기본조사(2021년): 조합원/생산자/직원 실태와 의식조사(사회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부위탁도 검토 가능 • 하계세미나 <p style="text-align: center;">평 가 (85/100)</p> <p>■ 연구회 운영을 기반으로 협동조합 조세 제도에 대한 공동포럼을 개최. 협동조합 조세 제도에 대한 수탁연구를 소관부처에 제안하였으나 수탁연구는 이루어지지 않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9년에 이어 공제에 관한 연구와 연구회를 운영하여 연구결과물을 학술지에 게재하였고, 하반기에는 한국노총중앙연구원과 함께 공동연구를 수행함 ■ 협동조합 비즈니스 모델 연구의 일환으로 세이프넷의 오너파트너십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였음. 또한 2021년으로 연기된 ICA CCR에서 발표하기 위하여 협동조합 방식의 기업가 혁신에 대한 연구를 내부에서 공동으로 준비하고 있음 ■ 협동조합과 사회적경제가 산출하는 사회가치를 측정하는 일의 중요성이 나날이 증가하고 있음. 규범적 연구에서 나아가 사회적경제의 규모와 가치를 측정하는 실증연구가 뒷받침되어야 함. 이에 대한 사전 연구로서 협동조합의 사회적 가치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였음 ■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진행된 생활동향 모니터들의 생활 일기를 모아 생활 일기 모음집을 발간함 ■ 수탁연구는 2편을 수행. 2편 모두 아이쿱 공정무역의 역사와 의미를 정리하는 연구임 ■ 세이프넷 공급사슬에 관한 연구는 2021년으로 연기됨. 세이프넷 직원 그룹에 대한 기본조사는 사업의 영역과 직무가 다양해짐에 따라 조사방법과 조사내용도 다양해질 필요가 있어 좀 더 사전 검토가 필요하여 진행하지 않음 ■ 2020년 코로나 19로 인해 오프라인 행사는 축소되어 하계세미나는 2회 진행되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업가역량개발 프로그램을 런칭하는 등 의미 있는 시도도 있었음
<p style="text-align: center;">목표</p>	<p style="text-align: center;">3차 중기 연구·조사 사업</p>
<p>목표 2</p> <p>선도적 기본과 토양이 되며 중장기적인 연구</p> <p>대중적 학술정론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협동조합운동 100년사> (2017~2019) • 출판지원기금 운용: 협동조합고전, 기본문서 • <해외협동조합연구동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체제이행국가에서 협동조합 발전과정, 쟁점과 과제 - 남북한 공동 사회적경제 발전 방안: 유사사례 발굴 예)독일 • <중장기 연속기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목표1'의 주제들 중심 연속 연구성과물 생산 - SGDs 달성에서 협동조합의 역할: 통계 및 성과평가와 연계 • <생협평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편집위원장과 편집위원(조합원) 선임: 임기 만료. - 신임 편집위원장 체제 출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이쿱아카이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이쿱생협의 아카이브로서 아이쿱생협 관련 기록물 중심으로 수집 <p style="text-align: center;">평 가 (90/100)</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협동조합운동 100년사」 I·II 권 요약본 영문본 발행은 ICA 대회가 연기됨에 따라 2021년으로 연기함 ■ 단행본으로 「IMP 임팩트가 정의와 측정」을 발간하였고, 번역서 「퀘벡 사회적경제 30년」번역 작업 중임 ■ 연구소가 발간하는 도서의 유통을 담당하는 (주)알마와 협의하여 2021년부터 브랜드 런칭을 할 예정임 ■ 「생협평론」이 지령 제40호로 창간 10주년을 맞는 해였음. '연대의 길 밝혀주는 지혜의 별자리'라는 슬로건을 채택하고, 십자말풀이, 밑줄긋기 이벤트 등 다양한 독자 이벤트도 시행하였고, 정기구독자는 821권으로 증가하였음 ■ <해외협동조합연구동향>은 '기후위기 시대의 푸드솔루션'을 주제로 4개의 보고서를 발간함. 코로나 19로 인한 대전환 시기에 적합한 주제 선정이었음 ■ <아이쿱아카이브>는 웹전시를 지속적으로 발굴·기획할 필요가 있음
목표	3차 중기 연구·조사 사업
<p>목표 3</p> <p>연구네트워크 구축 사회적경제 지식생태계 오픈이언츠의 형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동행사 및 공동연구/타 연구기관, 타 협동조합&사회적경제조직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제: 세이프넷, 협동조합금융조직, 사회적금융 등 • 지역 연구기관, 대학 육성 및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동연구, 공동세미나/포럼, 연구원 교류, 인턴제도 활용 • 협동조합 교육연구 거점대학과의 연계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적경제 인재양성 - 연1회 공동행사(학술대회, 국제학술대회 등) 주관 • 아이쿱미디어를 통한 정보발신 <p style="text-align: center;">평 가 (85/100)</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 연구기관, 협동조합 교육연구 거점대학과의 연계활동은 코로나 19로 인해 오프라인 세미나가 어려워 진행되지 못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이쿱 펠로우와의 공동연구는 역량인정제 평가와 자연드림파크 가치 평가 등 의미있는 주제로 진행되었음 ■ 세이프넷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에 대한 연구자료 제공이 연간 2회 정도 이루어지고 있으며, 연구결과물은 연구소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 ■ 2년째를 맞는 생협활동가장학기금은 운영규정을 보완하며 진행되고 있고 이를 통해 기금 운용의 경험을 축적하고 있음
<p style="text-align: center;">목표</p>	<p style="text-align: center;">3차 중기 연구·조사 사업</p>
<p>목표 4</p> <p>차세대 기회제공·발굴 사회적경제 지적재산의 공유와 보급에 기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이쿱 협동조합 논문 지원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재 방식 지속, 추후 주제를 정해서 연구 위탁하는 방식으로 전환 고려 • 아이쿱포럼(국제포럼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협동조합 제도개선 관련 포럼 (국회사회적경제포럼 등과의 공동주최, 2019년 봄엔 스페인과 포르투갈 협동조합법)
	<p style="text-align: center;">평 가 (75/100)</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이쿱 협동조합 논문 지원사업>은 1편의 응모가 있었음. 논문 지원사업에 대한 수요가 적다고 판단되므로 2021년부터는 해당 사업을 폐지할 예정임 ■ 코로나 19로 인한 오프라인 행사의 어려움으로 포럼은 1회 진행되었음
<p style="text-align: center;">목표</p>	<p style="text-align: center;">3차 중기 연구·조사 사업</p>
<p>거버넌스 및 발전과제</p>	<p>나. 거버넌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자 이사 선임 • 이사 활동의 지속, 심화 (예: 연구활동, 생협평론 편집위원, 지역조합 활동과 사례연구 연계 등) <p>다. 각 자치규정의 정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APENet 가입을 반영하여 적절하게 수정함. <p>라. 발전과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단법인으로서의 자산 규모 확충 필요함. 20억 수준. • 연구원 충원 및 연구역량 강화: 공동연구, 책임연구 등을 통해 연구 리더십 육성, 강화

- 자기경영 도입
- 안식월 도입
 - 모든 정직원에게 적용
 - 7년 근무 후 3개월 안식, 전체 근무기간 중 최대 2회 부여
 - 전문역량 개발, 연구소 비전 고민, 진로 설계를 위한 시간으로 활용

평 가 (80/100)

- 2020년은 기부금 수입이 적어서 기존 적립되어있던 자금을 사용 하였음. 연구기금을 지속적으로 조성하여 안정적인 연구가 이루어 지도록 할 필요 있음. 또한 수탁연구, 출판, 교육사업 등 수익사업을 내실있게 운영하여 기부금 수입 감소에 대비할 필요 있음
- 자기경영은 상사의 간섭을 줄이는 것에서 나아가 스스로 동기부여 할 때 실현될 수 있음. 급여와 복지는 위생조건이지 동기부여의 요소는 아님. 학습조직과 자기경영의 문화 생성은 어렵지만 다각도의 실험을 통해 꾸준히 시도될 필요 있음

1. 인구감소 · 고령 · 사회전환 시대 협동조합 생태계 연구

제3기 중기활동계획에서 말한 사회전환의 시대를 실감할 수 있는 한 해였다. 2020년 수행하였던 핵심연구분야 연구 현황은 아래와 같다.

표 3. 핵심연구분야 연구 현황

제 목	담당자	조사 시기 ~ 발간 시기	비 고
한국 사회적경제 공제의 커뮤니티 기여	이향숙	'20.3~'20.8	기획연구
가치 전환 시대의 협동조합의 사회적 가치	지민진	'20.3~'20.9	기획연구
세이프넷 소유노동(노동자소유)과 오너파트너십 전개 과정과 의의	이은정	'20.3~'21.2	기획연구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을 둘러싼 갈등 분석: 행위자 네트워크 이론(ANT)을 적용	염찬희	'20.1~'20.12	기획연구
아이쿱생협 조합원 조사 조망	지민진	'20.9~'21.2	기획연구
Entrepreneurial Innovation in a cooperative way: in the case of iCOOP Korea's cluster	최은주 이향숙 지민진 이은정 신창섭	'20.7~'21.12	기획연구

표 4. 학술지 · 원고게재현황

제 목	저자	발간 시기	비 고	구분
한국 사회적경제 공제의 커뮤니티 기여	이향숙	'20.8	한국협동조합연구	학술지
동일성 원칙과 협동조합 조합원 지분에 대한 탐색적 연구	신창섭	'20.8	한국협동조합연구	학술지
사회적경제 기업의 사회적 성과 평가-부가가치 정보를 중심으로	최은주	'20.12	한국협동조합연구	학술지

2. 연구회 운영

제3기 중기활동계획은 협동조합 연구 협력과 네트워크 형성을 위한 연구회 운영을 계획하고 있다. 올해 이루어진 연구회는 공제연구회, 협동조합과 노동연구회, 협동조합조세제도연구회 등 3가지이다.

가. 협동조합과 노동연구회

· 구성원 : 권오상(노무법인 의연 노무사), 김형탁(동국대 겸임교수), 김활신(성공회대 협동조합 경영학과 박사과정), 서종식(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실장), 손재현(해피브릿지협동조합 부장), 이선민(사단법인 두루 변호사), 정숙희(도심권노동자종합지원센터 센터장), 조제희(세이프넷지원센터 변호사), 한석호(전태일재단), 신창섭(아이쿱협동조합연구소) (10명)

표 5. 협동조합과 노동연구회 논의 주제

일시 및 장소	주 제
1.16. 아이쿱신길센터	· 노동자협동조합 요건과 조합원 자격에 대하여 · 봉제인공제회 정관과 규정 · 노동자협동조합 조합원 지위에 대한 이론 정리
3.19. 아이쿱신길센터	· 노동자협동조합의 노동법적 쟁점 · 노동자협동조합의 노동관계와 노동법의 적용에 관한 메모
5.21. 아이쿱신길센터	· 노동자협동조합에 있어 노동법의 적용 사례
7.16. 아이쿱신길센터	· 자조금융 관련 규제 리서치 · 근로복지기본법
9.17. 아이쿱신길센터	· 봉제인공제회 진행 상황 · 공동근로복지기금 현황 조사
11.20. 아이쿱신길센터	· 일본 노동금고 사례 조사 · 노동공제연합회 상호금융 가능성 조사

· 원고계재: 노동자협동조합의 노동관계와 노동법의 적용에 관한 검토 (조제희 변호사)

나. 협동조합조세제도연구회

· 구성원 : 김운수(세무사), 송재일(명지대 교수) 유종오(인성회계법인 회계사), 이종제(협동조합공작소 회계사), 이한우(세무법인 화우 세무사), 장원찬(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제도개선팀), 정상철(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제도개선팀), 신창섭(아이쿱협동조합연구소) (9명)

표 6. 협동조합조세제도연구회 논의 주제

일시 및 장소	주 제
1.29. 아이쿱신길센터	· 조합법인의 당기순이익 과세제도 고찰 · 협동조합의 사회적·공익적 기능 사례 조사
4.29. 아이쿱신길센터	·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협동조합법제 개선방안」 요약 · 지정기부금단체인 사협의 세무의무 · 2017년 이후 협동조합 관련 제도개선 이행 현황
6.17. 아이쿱신길센터	· 우선출자 관련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령」 입법 예고 · 「협동조합 기본법」 개정 방향 · 등록면허세 과세 완화 방안 · 비분할적립금에 대한 세제 지원 · 세법 개정 사항
10.7 아이쿱신길센터	· 논문집 원고 초안 발제

- 제50회 아이쿱포럼 ‘협동조합 정체성을 강화하는 세제 개편 방향’자료집 발간
 - 협동조합 법인의 특성 - 조합원의 사업 이용을 중심으로 (송재일 교수)
 - 협동조합과 조합원 거래의 성격과 세제 개선방향 (유종오 회계사)
 - 과세형평성 제고를 위한 협동조합의 비분할적립금 세제 도입방안 (이한우 세무사)
 - 당기순이익과세제도의 내용과 개편 (이종제 회계사)
 - 협동조합 제도개선 성과와 과제 (정상철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차장)
 - 주요국의 협동조합 조세 제도 (신창섭 사무국장)

다. 공제연구회

· 구성원 : 강윤정(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팀장), 김광민(변호사), 김상곤(세이프넷협력기금), 김선영(재단법인 밴드), 김영미(세이프넷 지원센터), 김정원(전북대학교 연구교수), 김형탁(동국대학교 겸임교수), 배기욱(계리사), 여진(공익활동가사회적협동조합 동행), 유유미(전국주민협동연합회), 하경주, 한윤선(협동지기 상조회), 이향숙(아이쿱협동조합연구소) (13명)

표 7. 공제연구회 논의 주제

일시 및 장소	주 제
4.24. 아이쿱신길센터	· 공제단체 동향

	· 공제연구회 방향 논의
6.11. 아이쿱신길센터	· 사회적경제 영역 공제의 특징 및 고유성 (상품, 운영원리 등)
8.6. 아이쿱신길센터	배기욱 계리사 강의, 질의응답 · 일반적인 보험 상품 기획과 설계 과정, 보험료 산출 방식 · 최대한 안정적으로 운영하면서 조합원에게 최대 혜택을 주는 방식 · 사회적협동조합 동행 '상호부조' 안정적 운영을 위한 검토
10.15. 아이쿱신길센터	· 자활공제 · 사회적경제의 상품 고민, 일본소액단기보험 상품을 통해서 · 일본공제연구회와의 교류 내용 논의
12.17. 아이쿱신길센터	· 한일 노동 공제 · 생협법 상 공제 관련 쟁점 사항 · 2021년 일본공제연구회와의 교류 내용 공유 · 2021년 공제연구회 방향 논의

· 2020년 일본생협총합연구소 공제연구회 참관 및 발제 진행하였음

표 8. 일본 생협공제연구회 논의 주제

일시 및 장소	주 제	비고
8.24. 생협총합연구소	· P2P보험과 이후 상품개발 발전 가능성 · 협동조합·상호부조 보험조직과 COVID19	온라인 · 참관
10.19. 생협총합연구소	· '서로돕기'를 중심으로 고찰한 공제와 보험의 차이 · 한국의 사회적경제 공제의 현황과 법제도의 과제 (발제 : 최환석, 이향숙)	온라인 · 발제
11/6. 11/24.	· 2021년 한일공제연구교류회 준비	온라인 · 회의
12/14. 생협총합연구소	· 생협공제의 재무건전성의 확보 · 공제와 보험의 차이 - 논설 변천에 대해	온라인 · 참관

3. 조사 및 교육

제3기 중기활동계획에서 정한 협동조합 운동과 연구의 견인이라는 목표를 위해 기본조사와 교육활동을 수행하였다.

가. 수탁연구

수탁연구로는 고용노동부로부터 플랫폼 노동 종사자 보호를 위한 공제 연구를 진행하였고, 아이쿱의 공정무역 역사를 정리하는 연구를 수탁받아 수행하였다.

표 9. 수탁연구 현황

제 목	연구자	조사 시기 ~ 발간 시기	발주처
플랫폼 노동 종사자 보호를 위한 공제회 설립방안	장진희 · 손정순 · 이향숙	'20.5~'20.12	고용노동부
아이쿱의 공정무역 도서 사업	김선화 · 신호진	'20.2~'20.12	아이쿱생협연합회
아이쿱의 공정무역 백서 사업	김선화 · 신호진	'20.2~'20.12	(주)쿠팡무역

나. 경제·소비동향브리프

2020년은 경제·소비동향브리프를 대외적으로 발간하지 않고 내부 보고서 발간으로 대체하였다.

표 10. 경제·소비동향브리프

제 목	담당자	발간 시기	비 고
사회경제 동향	최은주	'20.12	내부보고서

다. 생활동향모니터

생활동향모니터는 2017년 시작하여 2019년까지 3년간 진행되었다. 3년 동안 모은 생활일기를 모아서 2020년 4월 「생활 일기 모음집: 2017~2019 - 조합원 살림살이, 그 일상의 기록」으로 발간하였다.

표 11. 생활동향 모니터

<p>※ 생활동향 모니터 : 익명 총 10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7년 5월부터 시작. 지역, 세대 구성, 연령 등 안배 통해 총 10명 공모 - 매월 생활가계 일기 작성 (한 달 가계살림 및 아이쿱생협과의 점점 리뷰(10줄 안팎, 소정의 사례비 지급)) - 사회경제 변화 속 조합원의 생활상, 아이쿱생협 이용과 기대 등을 볼 수 있음
--

라. 세미나

2020년 교육활동으로는 하제세미나 2회 진행하였다.

표 12. 세미나 개최 현황

제목 (날짜, 장소)	주제	발표자	참여 인원
하제세미나 (2/5, 아이쿱 신길센터)	한국경제, 최근 경기 동향과 전망	정준호 강원대 부동산학과 교수	41명
하제세미나 (9/16, 군포 아이밸리)	반응과 적응 - SAPENet 기업가 역량 개발	주제발표: 최은주·김아영 패널토론: 천우현·김홍범	21명 On/Off 병행

마. 직원경영아카데미

2017년 시작된 직원경영아카데미는 올해 제6기와 제7기를 군포아이밸리에서 진행하였다.

표 13. 직원경영아카데미

제목 (날짜, 장소)	프로그램	강사	수료 인원
제6기 (4/21-7/1, 군포아이밸리)	아이쿱 경영사, 새로운 20년, 클러스트 등 10강	신성식 소금길 대표	25명
제7기	아이쿱 경영사, 새로운 20년,	신성식	31명

(10/7-12/23, 군포아이밸리)	클러스트 등 10강	소금길 대표	
-------------------------	------------	--------	--

바. 세이프넷 기업가 역량 개발 프로그램 - Producer 과정 제1기

세이프넷 기업가 역량 개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세이프넷지원센터와 함께 Producer 과정을 실시하여 19명의 Producer를 배출하였다.

- 기간: 6/12 - 8/14
- 프로그램: 강의(5강) · 코칭(5개 그룹 코칭) · 솔루션 작성
- 강의 프로그램
 - 1강: 사명과 기업가 역량 (김종걸 교수)
 - 2강: 자기경영과 소유형태 (김형미 교수)
 - 3강: 공급망 관리(SCM) (박상선 교수)
 - 4강: 조직과 리더 (송인창 HBM연구소 소장)
 - 5강: 재무관리 (서진선 아이쿱 펠로우)
- 코치: 김선화 · 이미옥 · 이선희 · 정선영 · 최우진
- 자문위원: 강석호 · 김금옥 · 김대훈 · 김홍범 · 서현철 · 신신일 · 오귀복 · 윤종규 · 전수영 · 최은주
- 참가자: 19명 (전원 유료)

표 14. Producer 과정

프로그램	시기	내용
강의	6/12-7/15 (5강*3시간)	사회적경제 · 자기경영 · 조직과 리더 · 공급사슬관리 · 재무관리
코칭	6/24-7/15 (4회*3시간)	5개 그룹코칭 10명의 자문위원단
과제	7/22	진단과 분석 · 대안 · 실행계획으로 구성
역량심사	7/22-7/29	14명의 심사위원단
피드백	7/29-8/14	심사의견서를 바탕으로 과제 수정
리빙랩	Producer 과정 이후	현장에서 프로젝트 실행

4. 중장기 연구와 출판사업

선도적 기본이 되고 토양이 되는 중장기 연구로 아이쿱의 공정무역 이야기를 정리하여 출판하는 것과 퀘백의 사회적경제 역사를 출판하기 위한 기획을 하였다. 이 도서들은 올해 연구와 번역이 진행되었고 2021년 출판될 예정이다. 연구소가 발간하는 도서를 유통하는 ㈜알마와 협의하여 별도의 브랜드를 통하여 발간하기로 하였다.

해외협동조합연구동향은 기후위기시대의 푸드솔루션을 주제로 4개의 보고서를 발간하였다. 코로나 19 위기상황과 맞물려 의미 있는 주제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가. 한국협동조합운동 100년사 요약본 영문 발간

- 제목 : 한국협동조합운동 100년사. 1권 이상과 시련, 2권 저항과 대안 요약본
- ICA 대회가 2021년 12월로 연기됨에 따라 내년으로 연기함

나. 출판사업

2019년 출판기금을 지원한 「협동조합 클로즈업」이 2020년 1월 발간되었고, 2019년 연구후원한 「IMP 임팩트 정의와 측정」이 12월 발간되었다.

표 15. 출판 현황

제 목	편저자 (번역자)	출판사 (발간시기)
협동조합 클로즈업 - 만들 땀 몰랐던 협동조합의 어려움	김현하	(재)아이쿱 협동조합연구소 (1/20)
IMP 임팩트 정의와 측정	문철우	(재)아이쿱협동조합 연구소 (21/1/28)

다. 해외협동조합연구동향

2020년 해외협동조합연구동향은 기후위기시대의 푸드솔루션을 주제로 4개의 보고서를 발간하였다.

표 16. 해외협동조합연구동향

제 목	연구자	발간시기
농업과 푸드시스템은 기후위기에 어떤 영향을 주고받는가?: 기후위기시대의 푸드솔루션 1	이미옥	2020.09.25
채식 위주의 식단이 주목받는 이유: 기후위기시대의 푸드솔루션 2	이미옥	2020.10.28
유기농을 넘어 지구환경을 되살리는 농업방식: 기후위기시대의 푸드솔루션 3	이미옥	2020.12.10
음식물 쓰레기와 식품 패키징의 해법을 찾아: 기후위기시대의 푸드솔루션 4	이미옥	2021.01.8.

4-1. 생협평론

표 17. 「생협평론」38-41호

	38호	39호	40호	41호
특집	사회적경제 법, 제도의 쟁점과 과제	재난의 시대, 사회적경제의 길 찾기	생협평론 10년, 돌아보기와 내다보기	기후위기와 사회적경제
주요 이슈	-총선을 앞두고 중앙정부, 지방정부 정책 차원에서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는 법, 제도 관련 쟁점과 과제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경제 영역 현황 -재난 상황에서의 호혜와 연대의 가치 그리고 실천	-10주년을 맞아 그동안 생협평론이 걸어 온 길을 돌아보고 새로운 10년을 내다봄	-코로나19, 긴 장마 등 전 지구적 생태 위기로 인한 재난의 일상화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사회적경제
이슈	-그린뉴딜과 경제 전환 - 자활사업을 위한 도전, 사회적협동조합을 이룬다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떠오른 기본소득 -‘제3차협동조합기본계획’의 쟁점과 정책적 함의	-	-기후위기 시대의 재난과 사회적 약자
돌발 논문	-	-	-노동자협동조합의 노동관계와 노동법의 적용에 관한 검토	-
기획 연재	-생협평론이 만난 사람 -주요 개념 길라잡이 : 플랫폼노동	-생협평론이 만난 사람 -주요 개념 길라잡이 : 임팩트 -사회적 가치 비즈니스	-생협평론이 만난 사람	-생협평론이 만난 사람 -주요 개념 길라잡이 : 사회주택
서평	-마지막 비상구 -사는 것은 싸우는 것이다	-별난 기업으로 지역을 살린 아르들렌 사람들	-저렴한 것들의 세계사 -자유로서의 사회적경제	-비거닝 -우리는 왜 어른이 되지 못하는가
신규	이선민(사단법인두루), 박철훈(지역과	주태규(사람과세상), 김재경(커뮤니	이유진(녹색전환연구소), 조제희(세	김아리(제로웨이스트샵 지구), 김소

필진	소셜비즈), 방태형(한국마을기업중앙협회), 장지연(한국사회가치연대기금), 송아영(안사람랩)	티와경제), 정미정(에이팍코리아), 윤모린(서울시협동조합지원센터), 오경아(평택사회적경제마을공동체지원센터), 송소연(라이프인)	이프넷지원센터), 이차경(소비자의정원), 박용원(세종사회적경제공동체센터)	영(마을닷살림협동조합), 이진백(라이프인), 김동훈(라이프라인코리아), 남철관(나눔과미래)
비고	-생협평론이 만난 사람 재개		- 10주년 기념호	
발행부수	1,250부 (판매용 516권/ 기증용 734권)	1,300부 (판매용 636권/ 기증용 664권)	1,550부 (판매용 912권/ 기증용 638권)	1,550부 (판매용 900권 / 기증용 650권)
제작비용	6,427,608원(211p)	6,377,230원(203p)	7,888,747원(219p)	6,601,285원(191p)

표 18. 「생협평론」 인쇄 단가 추세

	38		39		40		41	
총건적(원)	6,427,608	211p	6,377,230	203p	7,888,747	192p	6,601,285	216p
부수(권)	1,250		1,300		1,550		1,550	
단가(원)	5,142		4,906		5,090		4,259	
기증용(권)	734	58.7%	636	48.9%	638	41.2%	625	42%
판매용(권)	526	41.3%	664	51.1%	912	58.8%	900	58%
기증용 제작비(원)	3,774,336	58.7%	3,257,650	48.9%	3,328,747	41.2%	2,768,285	42%
판매용 제작비(원)	2,653,272	41.3%	3,119,580	51.1%	4,560,000	58.8%	3,833,000	58%
알마 판매권수	41		48		13		진행중	

○ 2020년 생협평론 현황

1. 생협평론 편집위원 변동

- 38호(봄호)부터 정설경, 김현대 편집위원 사임, 40호부터 박범용 사임, 강운경 결합.

※ 편집위원 편집회의 참석 현황

38호(1월9일)	39호(4월12일)	40호(7월10일)	41호(10월2일)
김찬호, 김현숙, 김아영, 우미숙, 조금득, 조현경, 황명연	김찬호, 김현숙, 김아영, 박범용, 우미숙, 조금득, 조현경, 황명연	김찬호, 김현숙, 김아영, 박범용, 우미숙, 조금득, 주세운	김찬호, 김현숙, 김아영, 강운경, 우미숙, 조금득, 조현경, 주세운, 황명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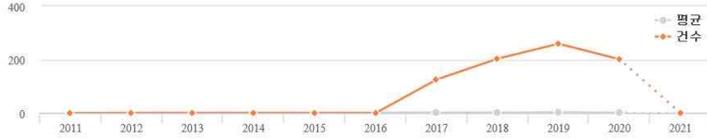
2. RISS 플랫폼을 통한 생협평론 공유

- 생협평론 기사를 협동조합, 사회적경제, 생협 등을 키워드로 연구하는 연구자들에게 알리고자 RISS 플랫폼을 통한 무료 공유를 진행함.
 - 2017.7부터 공유 시작했으며, 현재 2015~2020 생협평론 원고(특집, 이슈 등)를 공유하고 있음.
- 2020.12 현재 RISS 상세정보 조회 : 201건, 원문 다운로드 : 3,181건

View

🔍 상세정보조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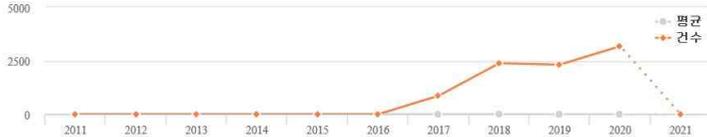
788



Usage

📄 원문다운로드

8,749



▲ 생협평론 10주년(40호)

코로나19로 별도 오프라인 행사 없이 기념 사업 진행

- 생협평론 10주년 슬로건 공모 :

기간 : 6월 8일 ~6월 21일 , 총 응모 18명

당선작 - ‘연대의 길 밝혀주는 지혜의 별자리’

슬로건 이미지 제작 - 잇다

- 생협평론 10주년 기념 독자 설문조사 :

설문 기간 : 2020년 6월 8일 ~ 19일, 총 응답 수 : 69명

- 생협평론 밑줄긋기 :

기간 : 7월 15일 ~ 8월 20일

17명 참여, 내용은 40호에 수록

- 생협평론 10주년 함께 나누기 : 생협평론 1년 구독권을 선물하는 이벤트

기간 : 7월 15일 ~ 8월 20일. 참여 99건, 참여자에게 10주년 기념 냉장고 자석 증정

- 10주년 기념 냉장고 자석 제작 -

300개 제작하여 함께 나누기 참여자와 장기 구독자, 십자말풀이 응모자 등에게 선물 발송.

- 생협평론 모아보기 : 창간호부터 39호까지 주제별로 분류하여 홈페이지 게시, SNS 통해 홍보 진행함.

- 정기구독 확대 캠페인 : 6월~8월 중 진행, 총 177건 + @ 오프라인으로 군포아이밸리, 괴산자연드림파크, 신길 교육장 등에서 진행



- 10주년 기념 40호 표지 포스터 제작 : 10주년 기념으로 포스터 제작, 걸표지로 활용.
- 생협평론 십자말 풀이 : 응모 기간 : 9월 20일 ~ 10월 20일
40호에 십자말 풀이 게재 후 정답자 중 3명 추첨하여 별도 선물 증정하고 참여자 전원에게 소정의 선물 발송. 참여자 20명.

※ 참고 : 역대 편집위원

• 편집위원장 :

- 창간호~2014년(17호) : **염찬희**
- 2015년(18호)~2018년(33호) : **박종현**
- 2019년(34호)~현재 : **김찬호**

• 편집위원 현황

- 2010(1호) : **김아영, 이성선, 정설경**
- 2011(2호)~2013(10호) : 김아영, **이선옥**, 이성선, 정설경
- 2013(11호)~2014(17호) : **김기태**, 김아영, **이대중**, 이선옥, 이성선, 정설경
- 2015(18호)~2016(23호) : **공정경**, 김기태, **김대훈, 김현대, 김활신, 이대중**
- 2016(24호) : 김기태, 김대훈, 김현대, 김활신, **박성순**, 이대중
- 2016(25호) : 김기태, 김대훈, 김현대, 김활신, 박성순, **최혁진**
- 2017(26호)~2017(27호) : 김현대, 박성순, **임정은, 조금득, 조현경**, 최혁진
- 2017(28호)~2018(30호) : 김현대, **박경숙, 박범용**, 임정은, 조금득, 조현경
- 2018(31호)~2018(32호) : 김현대, 박경숙, 박범용, 임정은, 조금득, 조현경, **주세운**
- 2018(33호) : 김현대, 박범용, 조금득, 조현경, 주세운
- 2019(34호)~ 2019(37호) : **김아영**, 김현대, **김현숙**, 박범용, **우미숙, 정설경**, 조금득, 조현경, 주세운, **황명연**,
- 2020(38호)~ 2020(40호) : 김아영, 김현숙, 박범용, 우미숙, 조금득, 조현경, 주세운, **황명연**
- 2020(41호)~ 현재 : **강윤경**, 김아영, 김현숙, 우미숙, 조금득, 조현경, 주세운, **황명연**

- 2010년~2020년 특집 주제 및 특집 필자 현황

표 19. 「생협평론」 특집 현황

구분	특집	특집 필자
2010	1호 윤리적 소비, 신자유주의 질서를 거스르다	이정옥(대구가톨릭대), 김형미, 정원각, 이의남(아이쿱고양생협 이사)
2011	2호 경쟁의 생산에서 협동의 생산으로	권영근(생명창고·지역순환형 사회형성추진운동협의회 상임대표), 정은미(한국농촌경제연구원), 허현중(지역재단), 신성식
	3호 협동조합 제대로 이해하기	정태인, 정찬울, 장종익, 마루야마 시게키(JC총합연구소)
	4호 복지사회, 협동과 참여	정승일, 장원봉, 김형미, 오항식
	5호 지속가능한 지역사회와 협동조합	김찬호, 권순실(생협전국연합회), 박제선, 조병민(대전민들레의료생협), 정규호, 김대훈, 기타가와 타이치(후쿠이현립대학)
2012	6호 민주주의와 협동조합	정태인, 정원각, 김현대, 타카시 스키모토(간사이대학)
	7호 세계의 협동조합	기노채(주택건설협동조합준비모임), 김신양, 김성오, 전형수(대구대), 김창진, 장종익
	8호 협동조합의 이론과 실제	신효진, 김성오, 김아영, 이미연, 이호중, 신성식
	9호 자본 조달, 한국 생협의 난제	김수행, 조혜경(금융경제연구소), 정원각, 장종익
	10호 협동조합 생태계	김기태, 신성식, 김홍범, 권미옥, 오항식
2013	11호 생협법 제도를 둘러싼 논쟁들: 조합원 외 이용을 허용할 것인가	세키 히데아키(아오야마학원대학), 김형미, 이재욱(춘천산골마을협동조합), 김성오
	12호 협동조합 법 제도를 둘러싼 논쟁들: 정부의 지원, 어디까지가 바람직한가	최유성(전 특임장관실), 이이재, 김현미, 강민수, 김대훈
	13호 협동조합 정체성 논쟁1	신성식, 이현숙(한겨레경제연구원), 장종익, 흥기빈, 김동준
2014	14호 바람직한 사회적경제 모델 찾기	장원봉, 하승우(풀뿌리자치연구소 이음), 김성기, 김영식
	15호 한국사회 친환경농산물의 현실	최동근(환경농업단체연합회), 김창길(한국농촌경제연구원), 신신일(아이쿱인증센터), 허미영(아이쿱농산), 권단(옥천순환경제공동체)
	16호 협동조합 교육, 그리고 학교	문영선(고려대), 정원각, 금현옥(군포e비즈니스고등학교), 박주희, 김아영

	17호	한국 협동조합의 성장통	김대훈, 윤주일(쿠피협동조합), 강민수, 김성오, 크리스 콘포스(영국 Open University)
2015	18호	협동조합기본법 2년, 그 성적표는?	이철선(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이대중(전 기재부 협동조합법제정팀), 문보경, 김현하
	19호	청년과 협동조합	이원재, 이수연, 이현숙, 명수민/이영룡
	20호	사회적경제와 행복한 지역 만들기	김기태, 유창복, 정준호(강원대), 정태인, 전은호
	21호	협동조합 지원, 그 실상과 바람직한 방향	조현경, 정상철(사회적기업진흥원), 유정식(연세대), 김종걸(한양대)
2016	22호	협동조합으로서의 농협	박성재, 안상돈(농협중앙회), 이호중(지역재단), 정연근(내일신문)
	23호	협동조합과 혁신	이일영(한신대), 김동준(성공회대), 김활신, 주수원
	24호	협동조합과 프랜차이즈	장종익, 김정원(전북대), 남윤형(중소기업연구원), 김현대, 윤천(해피브릿지)
	25호	협동조합과 함께하는 행복한 노후	정건화(한신대), 이향숙, 박봉희, 강위원(여민동락공동체), 장지연(한살림서울)
2017	26호	불안의 시대, 협동조합은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는가?	구본권(사람과디지털연구소), 최동석, 이흥택(충남연구원), 제현주
	27호	새 정부에게 건네는 사회적경제의 제안	이병학, 김혜원(한국교원대), 장종익, 조금득, 김만희(서울시50플러스재단), 오김현주(마포공동체경제네트워크)
	28호	사회적경제와 노동조합의 만남	김성오, 김창진, 황선자(한국노총중앙연구원), 박경숙/이종관(순천광장신문), 김민수(청년유니온)
	29호	사회적경제와 자원봉사 활동	김종걸, 광형모(한국자원봉사문화), 안인숙, 임정은(강서아이쿱), 이순옥(아이쿱소비자활동연합회)
2018	30호	위험사회에서 안전사회로	최호진(한국행정연구원), 편용우(전주대), 임남희, 박선하, 김현대, 조현경
	31호	순환과 회복의 경제	홍수열(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 윤숙희(가지가지살롱협동조합), 유현실(한살림고양파주), 김경하(더 나은미래), 강양구, 정건화
	32호	사회적경제는 사람을 어떻게 키워야 하는가	서종식, 김성훈, 김유숙(사회투자지원재단), 장승권(성공회대), 서동재(한살림연합), 김아영
	33호	사회적경제는 어떤 공동체를 꿈꾸는가	김병권, 임경수(전주원도심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박미정, 박희정(서울시 청년활동지원센터), 이광석(서울과기대)

2019	34호	사회적경제와 세대교체	김진아(대학생협연합회 이사장), 이상길(한국농어민신문 논설위원), 김현숙, 정설경, 위성남(전 성미산마을 대표)
	35호	사회적경제의 지형과 전략	김종걸, 김기태, 문보경(사회투자지원재단), 송원근(경남과학기술대학교), 김보라(민주연구원 사회적경제센터장), 황명연
	36호	사회적 가치,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도현명(임팩트스퀘어), 강경흠, 김유숙(사회투자지원재단), 김진환(C.I.T.I.E.S연구원)
	37호	민관 협력과 중간지원조직	김찬호, 김종걸, 윤도현(루터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겸임교수), 최용완(마을과집), 타시마 야스토시(일본노동자협동조합연합회 전무이사)
2020	38호	사회적경제 법, 제도의 쟁점과 과제	강민수, 박범용, 이선민(사단법인 두루), 박철훈(지역과소셜비즈), 방태형(한국마을기업중앙협회), 장지연, 전은호(목포시도시재생지원센터)
	39호	재난의 시대, 사회적경제의 길 찾기	주태규(사람과세상), 김재경(커뮤니티와경제), 신재민, 최영미, 정미성(에이팍코리아)
	40호	생협평론 10년, 돌아보기와 내다보기	염찬희, 조현경, 이유진(녹색전환연구소), 김병권, 김형미, 주세운, 김아영, 박범용
	41호	기후위기와 사회적경제	이일영, 이진백(라이프인), 김아리(제로웨이스트샵 지구), 이주희, 김소영(마을달살림협동조합)

▲ 연재 코너

- 38호부터 ‘생협평론이 만난 사람’ 코너 재개

▲ 2020년 제38호부터 우편 발송 시 비닐 봉투에서 종이 봉투로 변경

▲생협평론 길잡이 글 인용 시에 대한 저작권료 지급 : 36호, 39호, 40호, 41호 길잡이 글 에 인용된 시 전문에 대한 저작권료 지급. 36, 39, 40호는 사후 승인, 41호는 사전 승인

4-2. 아이쿱 아카이브

가. 아이쿱 아카이브 현황

□ 연구소 소장기록물 현황(2020년 12월 31일 기준)

표 20. 아이쿱 아카이브 소장기록물 현황 (단위 : 건)

구분		수량	비고
비전자기록물 (수장고)	종이기록물	3,310	19년 대비 131건 증가
	시청각기록물	1,169	19년 대비 3건 증가
	행정박물	43	19년 대비 9건 증가
전자기록물(외장하드)		8,243	19년 대비 180건 증가

* 전자파일은 문서(한글, 엑셀, PDF), 이미지(사진), 동영상 등 존재

□ 사료관리시스템 현황(2020년 12월 31일 기준)

아이쿱 아카이브(홈페이지)의 역할을 소장 기록물 관리에서 외부에 기록물을 공개하는 플랫폼으로 전환하면서 초기화 후 공개가능 및 온라인 제공 여부 등을 고려하여 업로드를 진행하고 있다.

표 21. (주제별)사료관리시스템 기록물 등록 현황 (단위 : 건)

운영과 행정	사업과 활동	연구와 교육	합 계
97	351	350	796

- 아이쿱 아카이브는 공개가능한 기록물을 선별하여 주기적으로 업로드 진행
- '사업과 활동'와 '연구와 교육' 두 주제로 다중분류된 기록물 1건

○ 기록물 등록 건수 : 797건

표 22. (시대별)사료관리시스템 기록물 등록 현황 (단위 : 건)

1980년이전	1980년대	1990년대	2000년대	2010년대	미상
3	2	59	410	294	29

표 23. (형태별)사료관리시스템 기록물 등록 현황 (단위 : 건)

도서 간행물류	문서류	전자파일류	시청각류	사진류	박물류
231	1	513	26	-	26

※ 전자문서 및 전자사진은 전자파일류에 포함

표 24. (출처별)사료관리시스템 기록물 등록 현황 (단위 : 건)

아이쿱 연합조직	아이쿱 지역생협	외부기관	미상
378	107	305	7

※ SAPENet으로의 전환에 따라 출처분류의 명칭 변경 예정

□ 2020년 아이쿱 아카이브 기록물 수집 및 활용 현황(2020년 12월 31일 기준)

1. 기록물 수집

표 25. 2020년 기록물 수집 현황 (단위 : 건)

No.	수집일자	내용	수량
1	2020년	SAPENet 관련 기록물	24
2	오너파트너십 연구자료 수집	‘오너파트너십’ 연구를 토대로 수집된 기록물	-
3	연구자 지원을 위한 기록물 수집	· 2020년 7월 조직현황 · 매장별 매출 현황(2017-2019) · 매장별 조합비조합원 매출(2010-2020.06)	4

	(2020년 8월)	· 온라인 매출 현황	
4	해외연수자료 (2020년 11월)	경남과학기술대학교 사회적경제전문인력양성사업 단, 성공회대학교 협동조합경영학과	8
		SAPENet지원센터	26

- SAPENet 관련 기록물(치유와힐링, 오너파트너 등)은 지속적으로 수집 진행
- 오너파트너십 연구를 토대로 수집된 기록물 정리 및 목록작성 예정
- 해외연수자료 수집 및 아카이브 업로드 진행 중
 - 현재 경남과학기술대학교, 성공회대학교와 SAPENet지원센터 해외연수자료 수집 및 업로드
 - 한신대학교, 유관기관 등 자료 수집 예정
- 2020년에 수집된 기록물은 2021년 기록물 목록에 등록 예정

2. 기록물 열람

표 26. 2020년 기록물 열람 현황

(단위 : 건)

No.	열람일자	열람목적	열람방법	수량
1	2020.01.22.	업무활용	직접방문	2
2	2020.06.15.	연구자료	직접방문	11
3	2020.06.16	연구자료	직접방문	4
총 합				17

3. 기록물 전시

표 27. 2020년 아이쿱 아카이브 웹전시 현황

No.	전시기간	주제
1	03.18 ~ 06.30	어느 수감자의 원고 : 윤리적 소비

4. 기록물 디지털화

□ 2020년 비우락(열람실) 운영 현황(2020년 12월 11일 기준)

표 28. 2020년 아이쿱 아카이브 디지털화 목록

No.	기록물 상태	기록물명
1	보존상태불량	키워드 검색 1920-1960(동아일보), 1960-1980(조선일보)
2	보존상태불량	노동 4개년 협동조합 평가 세미나
3	보존상태불량	노조 주택조합을 통한 노동복지 향상 방안
4	보존상태불량	생협종합법규집
5	보존상태불량	만인을 위하여 만년을 향하여
6	보존상태불량	새 역사를 위하여
7	보존상태불량	새 역사의 창조
8	보존상태불량	학교급식운동백서
9	보존상태불량	생활협동운동자료집
10	보존상태불량	생협전국연합회 20년의 기록
11	보존상태불량	2005년 소비자 일만인 대회 백서
12	보존상태불량	풀무의 선택, 냉혹한 현실의 발자취(풀무백서)
13	보존상태불량	친환경유기식품유통인증협회 사고백서
14	보존상태불량	생활협동조합의 공급활동
15	보존상태불량	정말국민학교
16	보존상태불량	안티고니쉬운동의 철학과 전략

○ 2020년 비우락(열람실) 도서 현황(전체 : 975권)

표 29. 2020년 열람실 보유 도서 현황

(단위 : 권)

000 (총류)	100 (철학0)	200 (종교)	300 (사회과학)	400 (순수과학)
23	23	25	647	27
500	600	700	800	900

(과학기술)	(예술)	(언어)	(문학)	(역사)
99	11	9	67	44

1. (재)아이쿱협동조합연구소 성격 상 사회과학분야의 도서가 다수
2. 알마출판사 신간 도서 기증을 통해 도서 수량 지속적으로 증가
3. 철학, 예술, 언어 등의 분야 도서 미비

○ 2020년 도서 입고 현황

표 30. 2020년 비우락(열람실) 도서 입고 현황 : 88권 (단위 : 권)

No.	입고일자	도서명	도서번호	수량
1	2020.01.06	본질은 조직문화다	3-638	1
2	.	노동공제, 오래된 미래	3-639	1
3	2020.01.09	왜 우리는 살찌는가?	5-89	1
4	2020.01.13	(#해시태그) #혐오_주의	3-640	1
5	.	(#해시태그) #성소수자_LGBT(Q)	3-641	1
6	2020.01.20	협동조합 클로즈업	3-642 3-643	2
7	2020.01.28	남북신(新)통상	3-644 3-645	2
8	2020.01.30	적대적 상황에서의 생존 메커니즘	8-49	1
9	2020.02.13	혁명노트	3-646	1
10	2020.02.19	한국 협동조합운동 100년사 1권	3-647	1
11	.	한국 협동조합운동 100년사 2권	3-648	1
12	2020.02.20	지옥에서 온 여왕	3-649	1

13	2020.02.27	지식창출의 사회생태학 실천공동체	3-650	1
14		자원봉사의 NEW 패러다임	3-651	1
15		직원이 주인인 회사	3-652	1
16	2020.03.12	해부학자	5-90	1
17	2020.03.26	동생 알렉스에게	8-50	1
18	2020.05.06	별들의 노래	8-51	1
19		악의와 공포의 용은 익히 아는 자여라	8-52	1
20		우모리 하늘신발	8-53	1
21		뿌리 없는 별들	8-54	1
22	2020.05.26	다시, 책은 도끼다	0-24	1
23		스키너의 심리상자 열기	1-23	1
24		만들자, 학교협동조합	3-653	1
25		학교협동조합, 현장체험학습과 마을교유공동체를 잇다	3-654	1
26		협동조합의 딜레마	3-655	1
27		협동조합 참 쉽다	3-656	1
28		퀘백 모델	3-657	1
29		섬을 탈출하는 방법	3-658	1
30		우리의 여행이 세상을 바꿀까	3-659	1
31		지구촌 아름다운 거래 탐구생활	3-660	1
32		협동조합, 성경의 눈으로 바다	3-661	1
33		칼 폴라니 - 전 세계적 자본주의인가 지역적 계획경제인가	3-662	1
34	앞으로 5년 결정적 미래	3-663	1	

35		경제는 살아있는 인문학이다	3-664	1
36		바벨의 한계를 넘어서	3-665	1
37		혁신가 경제학	3-666	1
38		필립 코틀러의 다른 자본주의	3-667	1
39		세계를 뒤흔든 상호부조론	3-668	1
40		동북아의 심장을 누가 칠 것인가	3-669	1
41		MADE IN ITALY	3-670	1
42		세계 시장을 지배하는 작은 기업들은 어떤 생각을 할까	3-671	1
43		나만의 시민운동 이야기	3-672	1
44		바람 없는 천지에 꽃이 피겠나	3-673	1
45		개정 협동조합원론	3-674	1
46		일본자본주의분석	3-675	1
47		토지경제론	3-676	1
48		한국농업경제론	3-677	1
49		운중 김병재저작집3	3-678	1
50		함께 모여 기후변화를 말하다	4-26	1
51		비판적 생명 철학	4-27	1
52		99%를 위한 주거	6-10	1
53		도시예술산책	6-11	1
54		고종석의 문자 - 한국어 글쓰기 강좌1	8-55	1
55		살인자의 기억법	8-56	1
56		시베리아 예찬	9-42	1
57		조선인의 유토피아	9-43	1
58	2020.06.02	역병의 바다	8-57	1
59		낮은 곳으로 임하소서	8-58	1

60		친구의 부름	8-59	1
61		외계 신장	8-60	1
62	2020.06.10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협동조합법 체계화 방안	3-679 3-680	2
63	2020.06.15	소시오크라시 : 자율경영 시대의 조직개발	3-681	1
64	2020.07.13	여기서 끝나야 시작되는 여행인지 몰라	5-61	1
65	2020.07.31	머더봇 다이어리 : 인공상태	8-62	1
66		はじめよう!自然農業	5-91	1
67		アレルギーの人の食事	5-92	1
68	2020.08.24	「田んぼの学校」入学編-いのちが集まる・いのちが育む	5-93	1
69		「田んぼの学校」まなび編. 137	5-94	1
70		「田んぼの学校」まなび編. 145	5-95	1
71		食品の安全と放射性汚染-子どもとくらしの明日のために	5-96	1
72	2020.09.11	사회적경제 촉진 방안으로서의 협동조합기본법 분석	3-682 3-683	2
73		그리고 잘 지내시나요, 올리버 섹스 박사님	5-97	1
74		Sweat 스웨트 : 땀, 힘겨운 노동	8-63	1
75	2020.09.18	자유로서의 사회적경제	3-864	1
76	2020.10.16	어둠 속으로 사라진 골든 스테이트 킬러	3-685	1
77	2020.10.26	완역 사기 본기1	9-44	1
78	2020.11.06	별빛이 떠난 거리 : 코로나 시대의 뉴욕 풍경	8-64	1

79		바깥은 불타는 늪 정신병원에 갇힘	8-68	1
80	2020.12.09	래디컬 헬프 : 돌봄과 복지제도의 근본적 전환	3-868	1
81		이것이 모든 것을 바꾼다 : 자본주의 대 기후	5-98	1
82		기후위기와 불평등에 맞선 그린뉴딜	5-99	1
83		마더붓 다이어리 : 로그 프로토콜	8-66	1
84		사랑을 말할 때 우리는	8-67	1
총 합				88

○ 2020년 비우락(열람실) 도서 대출 현황

표 31. 2020년 비우락(열람실) 도서 대출 현황 : 22권 (단위 : 권)

No.	대출일자	도서명	도서번호	수량
1	2020.01.03	사람 중심 비즈니스, 협동조합	3-70	1
2	2020.01.08	협동조합 키워드 작은 사전	3-325	1
3	2020.02.24	새로운 생협운동의 미래	3-24	1
4	2020.02.28	직원이 주인인 회사	3-652	1
5	2020.03.03	직원이 주인인 회사	3-652	1
6	2020.03.06	이윤기의 그리스로마신화	2-6	1
7	2020.03.16	영국 사회주의의 두 갈래길	3-16	1
8	2020.03.16	GDP는 틀렸다	3-240	1

9		깨어나라 협동조합	3-6	1
10		협동과 연대의 인문학	3-359	1
11		복지국가의 탄생	3-57	1
12	2020.03.25	애덤스미스 국부론	3-593	1
13	2020.05.20	한국생활협동조합운동의 기원과 전개	3-40 3-41	2
14	2020.06.16	직원이 주인인 회사	3-652	1
15		일본 보수정치의 농촌사회적 기원	3-448	1
16	2020.06.17	한국 YMCA 운동사 1	2-14	1
17		현대 협동조합 설립 연구	3-521	1
18		조선협동조합론	-	1
19	2020.08.03	협동조합 키워드 작은 사전	3-325	1
20	2020.08.14	사회적 경제의 힘	3-612	1
21	2020.08.26	사피엔스의 식탁	3-635	1
총 합				22

나. 아이쿱 아카이브 보고

□ 아이쿱 아카이브 2020년 보고

표 32. 2020년 아이쿱 아카이브 사업 일람표

No.	일자(기간)	내용	진행현황	비고
-----	--------	----	------	----

1	2020년 1월	- 아이쿱 아카이브 내용 업데이트 - 2020년 아이쿱 아카이브 사업 계획	완료 완료	-
2	2020년 2월	- 수집 기록물 목록 작업 마무리	완료	-
3	2020년 3월	- SAPENet 관련 기록물 수집 시작 - 아카이브 웹전시, 비우락 정비 - 3개 대학원 졸업논문 목록 및 파일 수집	진행 완료 완료	-
4	2020년 4월	- 한밭생협 공모전 기록물 수령 및 목록작업	완료	-
5	2020년 5월	- 복스캐너 구매 및 시범 테스트 진행	완료	-
6	2020년 6월	- 비우락 미등록 도서 등록 작업 - 강서구 마을공동체 지원 사업 기록관리 설명회 - 아카이브 유지보수 계약 갱신	완료 완료 완료	-
7	2019년 7월	- 기록물 디지털화 작업 시작 - 2018년 연구소 보존문서 파일 및 목록 통합	진행 완료	-
8	2019년 8월	- SAPENet 관련 수집 기록물 1차 정리 - 연구자 지원을 위한 기록물 수집	완료 완료	-
9	2019년 9월	- 해외연수자료 아카이빙 수집	진행	-
10	2019년 10월	- 해외연수자료 아카이브 업로드, 검색 테스트	완료	-
11	2019년 11월	- 해외연수자료 아카이브 업로드	진행	-
12	2019년 12월	- SAPENet 관련 수집 기록물 2차 정리	예정	-

5. 연구네트워크 구축, 사회적경제 지식생태계 오피니언층의 형성

제3기 중기활동계획은 주요한 목표 중의 하나로 연구네트워크 구축과 사회적경제 지식생태계 오피니언층을 형성하는 것을 목표로하고 있다. 이를 위한 활동으로 공동연구 및 거점 대학과의 연계, 사회적경제 인재 양성을 위한 장학금 지원, 아이쿱미디어를 통한 정보발신을 계획하였다.

가. 학술행사 후원

2020년 국내외 학술행사 등은 많이 진행되지 않았다. 한국협동조합학회의 학술대회는 2014년부터 꾸준히 후원하고 있다.

표 33. 학술행사 후원

행사 제목 (날짜, 장소)	주제	후원내용	주최
한국협동조합학회 (9/25, 농협대학교)	추계학술대회	1백만원 후원	한국협동조합학회

나. 아이쿱 펠로우 공동연구

성공회대학교 협동조합경영학과에서 아이쿱 펠로우는 2명이다. 아래의 주제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표 34. 아이쿱 펠로우 공동연구 현황

펠로우	연구주제	결과물 발간 시기
김아영	세이프넷 역량인정제도 연구	'20.12.
서진선	자연드림파크 가치 평가	'20.12

다. 연구 협력 및 후원

2019년 진행된 연구 협력과 후원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 35. 연구 협력 및 후원 현황

제 목	연구자	협력내용	발주처
사회적경제조직을 위한 지속가능개발 지수(Sustainable Development Perf ormance Indicators)	이일청 박사 연구팀	파일럿 테스트 참여	UNRISD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이사회의 다양 성이 성과에 미치는 영향	강현주	연구자료 제공	석사학위 논문

라. 생협활동가 장학기금

2019년 사회적경제 인재 양성의 차원에서 생협활동가를 위한 장학기금을 설치하여 2년째 운영 중이다.

- 장학금 규모 : 연 3천만원
- 수혜대상 : 생협 법인에서 2년 이상 자원활동에 기초한 조합원 활동을 한 전·현직 임원
- 지급시기 : 상·하반기로 나누어 모집·지원

표 36. 생협활동가 장학기금 현황

시기	생협활동가 장학기금 수혜자	수행 학업
2020년 상반기(7월)	9명	경북대(사회학), 성공회대(협동조합), 부산대(사회적기업), 이화여대(사회적경제) , 상지대(사회적경제) 등
2020년 하반기(12월)	8명	성공회대(협동조합), 부산대(사회적기업), 상지대(사회적경제), 경북대(사회학), 이화여대(사회적경제) 등

5-1. 홍보 및 협력활동

2016년 연재를 시작한 <김종걸의 창>은 2020년 5월 연재가 종료되었고, 2017년 4월 신설된 <청년, 협동조합에 로그인하다>는 청년과 여성, 협동조합을 주제로 3명의 집필진이 돌아가면서 연재를 진행 중이다. 이와 더불어 2018년부터는 (재)아이쿱협동조합연구소 이사진들의 칼럼을 격월로 연재하면서 좀 더 확장되고 다양화된 주제를 담고 있다.

2020년(20.12.31 기준) 홈페이지 방문자수는 24만 여명이며, 홈페이지 방문 후 콘텐츠 확인 평균 건수는 2019년 2.74에서 2.99로 증가하였다. 또한 연간 300회 이상 조회된 간행물은 30개이다.

가. 아이쿱협동조합연구소 홈페이지 운영

표 37. 2020년 홈페이지 방문자 현황

기 간	Visits	Page views	Pages/Visit
2014/11 ~ 2015/11	95,744	219,932	2.30
2015/12 ~ 2016/11	511,593	977,889	1.91
2016/12 ~ 2017/12	873,327	1,457,337	1.69
2017/12 ~ 2018/12	340,631	764,314	2.21
2018/12 ~ 2019/12	267,079	732,716	2.74
2019/12 ~ 2020/12	247,888	741,901	2.99

※ Visits : 홈페이지 접속 IP 수

※ Page views : 포털 검색 후, 해당 홈페이지 콘텐츠만 확인 후 로그아웃

※ pages/Visit : 1개의 IP당 홈페이지 방문 후 콘텐츠 확인 평균 건수

나. 칼럼(뉴스레터 ‘빛트인 매거진’ 및 연구소 홈페이지 게재)

표 38. 2020년 칼럼 현황

월	주 제
1	- (김종걸의 창) 자유로서의 사회적경제 : 존 스투어트 밀과 아마르티아 센에게 배운다.

	- 청년, 협동조합에 로그인 하다 21. 당신은 이 일을 해낼 수 있습니까? (이예나)
2	- 아이쿱협동조합연구소 사람들 그리고 연구행동 (고명희 이사장)
3	- 청년, 협동조합에 로그인 하다 22. 코로나를 이기는 관계의 힘 (송주희)
4	- (김종걸의 창) 사회적경제 이해하기 : 가난에 대응하는 '2개의 사례' - 2020년 봄, 베를린 통신 - 슬기로운 백수생활 (이미옥 이사)
5	- 청년, 협동조합에 로그인 하다 23. 협동조합의 주인은 조합원인가? (주세운)
6	- 당신 덕분에 우리는 안녕합니다 (임사랑 이사)
7	- 청년, 협동조합에 로그인 하다 24. 협동조합의 '자조(self-help)와 팀 기업가정신 (이예나)
8	- 차이와 차별 사이에서 (윤종규 이사)
9	- 청년, 협동조합에 로그인 하다 25. 연대를 위한 작은 용기 (송주희)
10	- 미래를 만드는 생활의 실천을 위하여 (김정희 이사)
11	- 청년, 협동조합에 로그인 하다 26. 협동조합을 위한 벤처캐피탈
12	- 김영옥 이사 칼럼 예정

다. 아이쿱협동조합연구소 웹사이트 간행물 조회 순위 (2020.1.1.~2020.12.31)

표 39. 2020년 웹사이트 간행물 조회 순위(상위 30위)

순 위	제목	조회수 (기간별)	조회수 (누적)	비 고
1	2018년 파머스쿱(Farmer's COOP) 조합원 실태 및 인식조사 요약본(인포그래픽)	1,283	2,458	PDF
2	협동조합 클로즈업 : 만들 땐 몰랐던 협동조 합의 어려움	1,087	-	단행본
3	(기획연구 2019-05) 리뷰, 한국 생협의 귀적	1,066	-	PDF
4	(흐름을 읽다 2-04) 생활연구동향, 2017.8	883	1,489	PDF
5	사회적경제의 힘 - 통계 방법론과 해외 사례 들	839	1,547	단행본

6	(기획연구과제 2018-03) 「한일 협동조합 공제에 대한 일고찰」	767	1,933	PDF
7	10주년 심포지엄 자료집	695	3,851	PDF
8	협동조합 키워드 작은 사전	683	2,335	단행본
9	이탈리아와 독일 협동조합 100년 성공의 비결	656	1,543	단행본
10	한국 협동조합운동 100년사 1권, 2권	655	966	단행본
11	(연구원 리포트 2015-02) 『협동조합의 자본 조달과 우선출자제도』	624	3,013	PDF
12	The Weight of the Social Economy - An International Perspective	570	984	단행본
13	(흐름을 읽다 2020-01) 생활 일기 모음집 : 2017~2019	554	-	PDF
14	(아이쿱해외협동조합연구동향 2020-01) 농업과 푸드시스템은 기후위기에 어떤 영향을 주고받는가?	535	-	PDF
15	(학술행사) 협동조합법의 최신 흐름과 시사점 : 포르투갈과 스페인의 협동조합법	527	1,424	PDF
16	(기획연구과제 2019-01) 공공부문과 협동조합의 공동체 활동 비교에 관한 연구 - 주민자치센터와 아이쿱생협 지역조합을 중심으로	525	1,034	PDF
17	(아이쿱해외협동조합연구동향 2017-4) 이탈리아 소비자협동조합 탐구: 2016 아이쿱해외협동조합연구동향 모음집	516	2,121	PDF
18	기업 소유권의 진화 (헨리 한스만 지음, 박주희 옮김, 안도경.장종익 감수)	487	2,053	단행본
19	2018년 아이쿱생협 조합원의 소비생활과 의식에 관한 조사 요약본(인포그래픽)	460	1,357	PDF

20	(아이쿱해외협동조합연구동향 2020-02) 채식 위주의 식단이 주목받는 이유	458	-	PDF
21	(외부계재) 협동조합 회계보고를 위한 부가가치보고서의 유용성	405	713	PDF
22	(아이쿱해외협동조합연구동향 2017-06) 몬드라곤 협동조합 조직 구조의 진화	395	2,017	PDF
23	(I.B 2018-02) 소비자 알권리와 GMO 표시제 이슈브리프 2 - 소비자 알 권리의 제한과 그 한계	391	1,243	PDF
24	(기획연구과제 2017-03) 아이쿱생협의 공급망 품질관리 개선을 위한 탐색적 연구	387	1,222	PDF
25	제40회 아이쿱포럼 자료집	370	2,669	PDF
26	(기획연구 2020-01) 가치 전환 시대의 협동조합의 사회적 가치	363	-	PDF
27	(번역서 2016-1) 협동조합의 난제 - 자본	361	2,057	PDF
28	공동포럼 <한국 협동조합 법제도 개선연구> 자료집	335	1,549	PDF
29	(아이쿱해외협동조합연구동향 2016-02) 「스페인 바르셀로나 시의 사회적연대경제의 현황」	315	2,297	PDF
30	(아이쿱해외협동조합연구동향 2017-08) 몬드라곤 협동조합의 경영 교육	314	1,990	PDF

6. 사회적경제 지적재산의 공유와 보급

제3기 중기활동계획에서 우리 사회에 사회적경제 지적재산을 보급하고, 다음 세대의 협동조합 연구자를 발굴하는 활동으로 아이쿱 협동조합 논문 지원사업과 아이쿱포럼을 진행하고 있다.

가. 아이쿱 협동조합 논문 지원사업

1) 기획 배경

- 아이쿱협동조합연구소는 협동조합 연구자를 발굴하고 지원함으로써 학계와 현장에서 협동조합에 대한 관심과 연구가 지속되기를 희망하면서 ‘아이쿱 협동조합 논문 공모전’을 진행해 왔다.
- 이러한 취지를 살려서 2018년부터 아이쿱 협동조합 논문 공모전은 ‘연구지원’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다.

2) 2020년 ‘제7회 아이쿱 협동조합 논문 공모전’ 경과

- 2020년 12월 31일 현재 : 1편 접수(연구지원으로 결정)

표 40. 제7회 아이쿱 협동조합 논문 지원 사업 심사 현황

번호	논문제목	접수일	심사	인터뷰(계약)	중간보고
1	해외 협동조합 선진사례 도입의 과정과 효과(조수미)	5/28	6/11 (심사자:최은주 · 신창섭 · 이향숙 · 지민진)	6/23 (면접자:신창섭 · 지민진)	진행하지 않음

나. 아이쿱포럼

2020년에는 코로나 19의 여파로 1회의 아이쿱포럼을 개최하였다. 제50회 아이쿱포럼은 협동조합조세제도연구회의 연구 성과를 기반으로 협동조합 조세 제도를 주제로 개최하였다. 사회적경제연대포럼과 공동주최로 개최하였고 많은 국회의원들도 공동주관으로 참여하였다. 원래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할 예정이었으나 방역단계가 1.5단계에서 2단계로 격상하면서 장소를 아이쿱신길센터로 바꾸어 개최하였다.

표 41. 아이쿱포럼 개최 현황

회차 (날짜, 장소)	제목	발표자와 토론자	참여 인원	주최
제50회 아이쿱포럼 (11/30, 아이 쿱신길센터)	협동조합 정체성을 강화하는 세계 개 편 방향	사회:신창섭 발표:송재일·유종오· 이한우·이종제 좌장: 최은주 토론: 명한석·정순문 ·이선민	21명	공동주최:사회적경제 연대포럼·(재)아이 쿱협동조합연구소 공동주관:윤호중 의원·고용진 의원·강은미 의원·민형배 의원·용혜인 의원

7. 운영

2006년 5월 25일 한국생협연합회 부설 연구소로 개소한 (재)아이쿱협동조합연구소는 2010년 5월 25일 재단법인으로 인가받았고, 2012년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 2018년 재지정되었다. 연구소는 이러한 공익적 성격에 부합하도록 협동조합의 확산과 발전을 위한 연구, 학술과 교육활동, 장학사업이라는 설립목적에 따른 활동을 지속적으로 확대해가고 있다.

가. 이사회 운영

표 42. 2020년 재단법인 이사회 운영 현황

회수 (날짜)	주요 보고 및 안건	출석 이사	장소
제1차 (1/31)	1. 보고 1) 2019년 11-12월 사업 보고 2. 안건 1) 2019년 사업보고와 결산안 및 2020년 사업계획 및 예산안 승인의 건 2) 2020년 1-2월 활동계획의 건 3) 2020년 이사회 운영 계획 검토의 건 4) 차기 이사회	고명희, 김정희, 김현숙, 유정아, 윤종규, 임사랑, 이미옥, 최은주, 김형미(참관)	아이쿱 신길센터
제2차 (2/6)	1. 보고 1) 2020년 1-2월 사업 보고 2. 안건 1) 2020년 3-4월 활동계획 승인의 건 2) 2020년 이사회 운영계획 승인의 건 3) 퇴직급여충당 계좌 지정의 건 4) 취업규칙 개정의 건 5) 소장 직무대행 선임의 건 6) 차기 이사회	고명희, 김정희, 유정아, 윤종규, 이미옥, 최은주, 김형미(참관)	아이쿱 신길센터
제3차 (4/23)	1. 보고 1) 2020년 3-4월 사업 보고 2. 안건 1) 2020년 5-6월 활동계획 승인의 건 2) 생협활동가장학기금운영규정 개정의 건 3) 생협평론 10주년 계혹 논의 및 가격 인상 방안 논의 4) 임원선출의 건 5) 차기 이사회	고명희, 유정아, 윤종규, 임사랑, 최은주	아이쿱 신길센터

제4차 (6/25)	1. 보고 1) 2020년 5-6월 사업 보고 2. 안건 1) 2020년 7-8월 활동계획 승인의 건 2) 생협평론 10주년 슬로건 및 정기구독자 확대 방안 3) 이사회 워크숍 계획 논의 4) 임원선거규정 제정의 건 5) 차기 이사회	고명희, 김영옥, 김정희, 유정아, 윤종규, 이미옥, 임사랑, 최은주	아이쿱 신길센터
제5차 (8/12)	1. 보고 1) 2020년 7-8월 사업 보고 2. 안건 1) 2020년 9-10월 활동계획 승인의 건 2) 2020년 추경예산 승인의 건 3) 생협평론 10주년 관련 논의 4) 차기 이사회	고명희, 김영옥, 김정희, 유정아, 윤종규, 이미옥, 임사랑, 최은주	괴산자연 드림파크
연소라 공동 간담회 (8/11)	- 주제: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대응하는 세이프넷의 전략과 과제 - 공동주최: (재)아이쿱협동조합연구소·참여하고행동하는소비자의정원·세이프넷지원센터·라이프인	고명희, 김영옥, 김정희, 유정아, 윤종규, 이미옥, 임사랑, 최은주	괴산자연 드림파크
제6차 (10/22)	1. 보고 1) 2020년 9-10월 사업 보고 2. 안건 1) 2020년 11-12월 활동계획 승인의 건 2) 생협평론 10주년 관련 - 십자날말퀴즈 당첨자 추첨 3) 인사위원회 구성의 건 4) 취업규칙 등 인사 관련 규정 개정의 건 5) 임원후보등록기간의 건 6) 차기 이사회	고명희, 김정희, 유정아, 윤종규, 이미옥, 임사랑, 최은주	아이쿱 신길센터
제7차 (12/15)	1. 보고 1) 2019년 사업보고와 평가(안) 2) 2020년 사업계획과 예산(안) 2. 안건 1) 임원선출의 건 2) 차기 이사회	고명희, 김영옥, 김정희, 유정아, 윤종규, 이미옥, 임사랑, 최은주	아이쿱 신길센터

나. 사무국 운영

2020년 3월 전임 소장이 자리를 옮기면서 소장직무대행체제로 운영하였다. 2019년부터 본격화한 직무체계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자기경영을 자리잡게 하기 위한 시도들을 하고 있다. 그러나 자기경영은 제도로서 되는 것이 아닌 자발적인 주인의식과 역량 개발이 뒤따라야 하는 것이므로 정착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코로나 19에 대응하기 위하여 면역력 강화를 위한 식품을 제공하였고 재택근무를 상시화하고 있다.

2020년 주요 내용

- 직무체계 도입에 따른 직급체계 폐지
- 자기경영 실행을 위한 노력 : 조언 프로세스 실행을 위한 권한위임과 결재 방식 변화, 근무시간과 장소 자율성 부여, 연구월 도입
- 고충상담창구 : 김활신 감사, 한국성폭력상담소
- 정품소프트웨어 갯춤: 윈도우, MS Office, 한글 등

8. 2020년 월별 활동 일지

표 43. 2020년 월별 활동 일지

월	(일)	활 동
1		(2-2/21) 동계인턴 김정은 (3) 직원 교육훈련 : 영어회화 학습 (8) 2020년 사회적경제 신년회(고명희) (8) (기획연구 2019-05) 「리뷰, 한국 생협의 귀적」 발간(이은정) (14) (준)부천공정무역협의회(고명희) (15) (준)경기공정무역협의회(고명희) (17) 직원 교육훈련 : 영어회화 학습 (17) 업무감사 (20) 회계감사 (20) 청록색조직 지도 이용 조직 개선 체험워크숍(김형미) (20) 광명나래생협 감사(최은주) (20) 「협동조합 클로즈업 : 만들 땐 몰랐던 협동조합의 어려움」 발간(김현하) (21) 서울아이쿱생협 감사(신창섭) (22) 울목생협 감사(최은주) (22) 부천교육사회적협동조합 이사회(고명희) (22) 동대문구마을자치센터 계획서 제출(이향숙) (23) 부천아이쿱생협 감사(고명희) (29) 상지대 학과장회의 참석(김형미) (30) 사단법인 두루 방문(신창섭) (31) 재단법인 제1차 이사회
2		(3) 정책TF 회의(김형미, 최은주, 신창섭) (4) 역량인정제도 회의(김형미, 최은주, 신창섭) (4) 동대문구마을자치센터 면담(이향숙) (5) 매장 파트너학교(김형미) (6) 재단법인 제2차 이사회 (7) (준)부천공정무역협의회(고명희) (14-21) 사단법인 두루 - 인턴 변호사 실습 예정 (18) 부천교육사회적협동조합 회의(고명희) (21) (준)경기공정무역협의회 총준위(고명희) (25) 소비자의 정원 총회 (26) (준)부천공정무역협의회(고명희) (29) 퇴사: 김형미, 신호진
3		(4) ICA CONGRESS 기획 회의(최은주, 신창섭) (5) (준)부천공정무역협의회(고명희) (6) 부천교육사회적협동조합 이사회(고명희) (10) ICA Congress 제안서 검토 회의(최은주, 신창섭)

월	(일)	활 동
		(10) 협동조합기본법 개정안 연구팀 회의(최은주, 신창섭) (11) iCOOP Fellow 미팅(최은주) (11) ICA 준비를 위한 iCOOP TFT 회의(최은주, 신창섭) (12) 아이쿱힐링연합회 총회 (13) 역량인정제도 검토 회의(최은주, 신창섭) (17) iCOOP Fellow 미팅(최은주) (18) ICA iCOOP 실무회의(최은주, 신창섭) (19) 역량인정제도 검토회의(최은주, 신창섭) (19) 아이쿱힐링연합회 총회 (20) (준)부천공정무역협의회(고명희) (20) 파머스쿱 총회 (25) ICA 아이쿱 실무팀 회의(최은주, 신창섭) (27) 세이프넷 지원센터 작은 연구 조사 회의(신창섭)
4		(2) (준)부천공정무역협의회(고명희) (6) 세이프넷 회장단 회의(고명희) (7) 광명시 예산심의위원회(최은주) (7) (흐름을 읽다 2020-01) 「생활 일기 모음집 : 2017~2019 - 조합원 살림살이, 그 일상의 기록」 발간 (8) 공정무역 도서발간 자문회의 (9) 역량인정제 회의(최은주, 신창섭) (10) 노동공제포럼 발제(이향숙) (11) 한국협동조합학회 논문심사(이향숙) (13) 세이프넷 회계교육 기획 회의(최은주) (14) 역량인정제 회의(최은주, 신창섭) (21) 부천교육사회적협동조합 총회(고명희) (23) 재단법인 이사회
5		(6) 부천공정무역협의회 전체회의(고명희) (13) 세이프넷지원센터 현장연구지원사업 심사(최은주) (14) 회계학교 3기 경영자과정 회계강의(최은주) (15) 부천교육사회적협동조합 이사회(고명희) (15) 생협평론 편집위원장 미팅(고명희, 최은주, 신창섭) (18) 부천민관거버넌스 후속 인터뷰(고명희) (19) 민달팽이주택협동조합 회계교육 관련 미팅(최은주) (19) 세이프넷지원센터 정책TF(최은주) (20) 한국법제연구원 세미나(최은주, 신창섭) (22) 부천공정무역협의회 창립총회(고명희) (25) 구례자연드림파크 역량인정제 설명회(최은주) (26) 괴산자연드림파크 역량인정제 설명회(신창섭)

월	(일)	활 동
6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군포아이밸리 역량인정제 설명회(최은주, 신창섭) (2) ICA Cong. 논의(최은주, 신창섭) (3) 괴산스포츠타일링센터 오픈식(고명희) (8) 부천공정무역협의회 운영회의(고명희) (8) 사무국 워크숍 (10) 지역조합 대상 감사 교육(최은주) (15) 사무국 워크숍 (17) 부천지역신문 기고(고명희) (17) 역량인정제 실무회의(최은주, 신창섭) (18) 한국노총 '공제회의 개념과 국내외 사례 및 관련 법제도' 강의(이향숙) (18) 노동공제 포럼 참여(이향숙) (19) 진경희 前회장 팔순 축하연(이정주, 고명희) (22) 장승권 교수 미팅(최은주) (23) 서진선 박사 미팅(최은주) (25) 재단법인 이사회 (29) 사무국 워크숍
7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생협평론 정기구독 확대캠페인(김정희, 최은주, 신창섭) (3) 세이프넷 제1회 소셜 스피커 미팅(최은주) (3) 사회적경제 언론인 포럼(최은주) (8) 해외 사회적경제 기관 연수보고서 아카이빙 회의(최은주, 최장선) (9) 한국협동조합연구 학술지 논문 심사(최은주, 이향숙) (14) 생협평론 정기구독 확대 캠페인(고명희, 최은주, 신창섭) (15) 성공회대 구로마을대학 창업팀 강의(최은주) (16) 괴산아이쿱생협 창립(고명희, 김정희, 최은주) (17) 생협평론 정기구독 확대 캠페인(지민진, 최장선) (27) 연소라 공동간담회 기획회의(최은주) (28) 한국법제연구원 박광동 박사 자문(신창섭) (29) 해외 사회적경제 기관 연수보고서 아카이빙 회의(최은주, 최장선)
8		<ul style="list-style-type: none"> (4) 성공회대학교 AMP 운영회의(최은주) (5) 지원센터 제도개선학술회(신창섭) (12) 재단법인 이사회 (20) Producer 과정 평가회의(최은주, 신창섭)
9		<ul style="list-style-type: none"> (2) 4섹터 워크숍(최은주, 이향숙, 지민진, 최장선, 이은정, 신창섭) (4) 서울시 소상공인 지원프로그램 심사(최은주) (11) (외부계재) 「한국 사회적경제 공제의 커뮤니티 기여」 발간(이향숙) (11) (외부계재) 「동일성 원칙과 협동조합 조합원 지분에 대한 탐색적 연구」 발간(신창섭) (14) (기획연구 2020-01) 「가치 전환 시대의 협동조합의 사회적 가치」 발간(지민진) (16) 광명시 예산심의회의(최은주)

월	(일)	활 동
		(18) 해외 사회적경제 기관 연수보고서 아카이빙 회의(최은주, 최장선) (23) 김활신 성공회대 박사과정 미팅(최은주) (23) 협동조합 공제사업 관련 전문가 간담회(이향숙) (24) 광명시 보조금심의위원회(최은주) (25) 4섹터 워크숍(최은주, 이향숙, 지민진, 최장선, 이은정, 김윤민, 신창섭) (25) 사회적경제통합학술대회(이향숙) (25) (아이쿱해외협동조합연구동향 2020-01) 「농업과 푸드시스템은 기후위기에 어떤 영향을 주고받는가?: 기후위기시대의 푸드 솔루션」 발간(이미옥) (29) Producer 과정 액션러닝 논의(최은주, 신창섭)
10		(5) 해외 사회적경제 기관 연수보고서 아카이빙 회의(최은주, 최장선) (6) 소비자기후행동 기획단(최은주, 신창섭) (7) 소비자기후행동 파일럿팀 (8) UNRISD 지속가능개발지수 파일럿테스트 관련 회의(최은주, 지민진, 신창섭) (12) 김찬호 편집위원장 미팅(최은주, 이은정, 신창섭) (13) 소비자기후행동 기획단(최은주, 신창섭) (13) 소비자기후행동 파일럿팀 (14) Producer 과정 액션러닝 논의(최은주, 신창섭) (15) ㈜알마 미팅(신창섭) (20) Producer 1기 미팅(최은주, 신창섭) (28) (아이쿱해외협동조합연구동향 2020-02) 「채식 위주의 식단이 주목받는 이유: 기후위기시대의 푸드 솔루션 2」 발간(이미옥) (30) 사무국 워크숍
11		(2) 토론회 '플랫폼노동 종사자를 위한 공제회 설립방안'(이향숙) (3-4) 광명시 보조금 심의(최은주) (4) 성공회대 AMP 운영회의(최은주) (4) 한국법제연구원 자문보고서 제출(최은주) (5) 생산자 조사 관계자 인터뷰(이향숙) (6) 소비자기후행동 운영위원회(최은주, 신창섭) (6) 일생총공제연구회 온라인 교류회(이향숙) (9) 생산자 조사 관계자 인터뷰(이향숙) (11) 2021 협동조합미래포럼(최은주) (12) 소비자기후행동 조사연구팀(최은주, 이향숙, 이은정, 신창섭) (16) 한국NAB세미나(최은주) (19) 소비자기후행동 운영위원회(최은주, 신창섭) (20) 소비자기후행동 조사연구팀(최은주, 이향숙, 이은정, 신창섭) (23) 성공회대 AMP 자문회의(최은주) (23) 소비자기후행동 캠페인코디네이터팀(지민진) (24) 일생총공제연구회 온라인 교류회(이향숙)

월	(일)	활 동
		(24) 2020 협동조합미래포럼(최은주) (26) ICA Congress 세션 좌장(최찬호) 미팅(최은주) (26) 한국협동조합학회 총회 및 동계세미나(이향숙) (30) 소비자기후행동 캠페인코디네이터팀(지민진) (30) (공동포럼) <협동조합 정체성을 강화하는 세계 개편 방향> 개최
12		(1) 소비자기후행동 조사연구팀(최은주, 이향숙, 이은정, 신창섭) (2) 해외협동조합연수 아카이빙 회의(최은주, 최장선) (3) 소비자기후행동 운영위원회(최은주, 신창섭) (7) 치유재단 1주년 사전준비(이향숙, 신창섭) (8) 치유재단 1주년 컨퍼런스(지민진, 김윤민, 최장선, 신창섭) (9) 세이프넷 리더워크숍(신창섭) (9) 한일생협직원온라인교류회(이향숙) (10) 소비자기후행동 조사연구팀(최은주, 이향숙, 이은정, 신창섭) (10) (아이쿱해외협동조합연구동향 2020-03) 「유기농을 넘어 지구환경을 되살리는 농업방식: 기후위기시대의 푸드 솔루션 3」 발간(이미옥) (11) 소비자기후행동 기획단(신창섭) (11) 사회적기업진흥원 협동조합교육 개선방안 자문회의(최은주) (14) 일생협공제연구회 참관(이향숙) (16) 소비자기후행동 공감 100(최은주, 신창섭) (18) 세이프넷지원센터 이사회(신창섭) (21) 소비자기후행동 조사연구팀(최은주, 이향숙, 이은정, 신창섭)

Ⅲ. 2020년 운영성과표 및
재무상태표

2020년 운영성과표

제8기 2019년 12월 31일 현재

제9기 2020년 12월 31일 현재

(재)이클협동조합연구소

단위(원)

장 절 관 항 목	세 목	당기			전기		
		합계	고유목적 사업	수익사업	합계	고유목적 사업	수익사업
수입총계		611,060,261	548,253,412	62,806,849	760,601,582	692,490,524	68,111,058
사업수입		592,655,069	530,498,616	62,156,453	722,271,342	661,752,398	60,518,944
고유목적사업수입		530,498,616	530,498,616	-	661,752,398	661,752,398	-
기부금수입		530,498,616	530,498,616	-	661,752,398	661,752,398	-
보조금수입		-	-	-	-	-	-
회비수입		-	-	-	-	-	-
수입사업수입		62,156,453	-	62,156,453	60,518,944	-	60,518,944
매출이익		62,156,453	-	62,156,453	60,518,944	-	60,518,944
매출		83,518,961	-	83,518,961	93,930,777	-	93,930,777
매출원가		21,362,508	-	21,362,508	33,411,833	-	33,411,833
고유목적사업환입액		-	-	-	-	-	-
사업외수입		18,405,192	17,754,796	650,396	38,330,240	30,738,126	7,592,114
기타수입		579,845	-	579,845	7,425,806	15	7,425,791
이자수입		17,825,347	17,754,796	70,551	18,964,681	18,798,358	166,323
자산처분수입		-	-	-	-	-	-
전기요류수정수입		-	-	-	11,939,753	11,939,753	-
지출총계		632,232,624	571,990,751	60,241,873	713,657,046	640,276,336	73,380,710
사업비용		632,232,624	571,990,751	60,241,873	709,669,343	639,626,333	70,043,010
사업수행비용		437,940,729	398,430,650	39,510,079	461,733,775	425,503,737	36,230,038
조직활동비		1,612,422	1,612,422	-	58,497,788	58,497,788	-
활동비		-	-	-	58,387,200	58,387,200	-
분담금		1,612,422	1,612,422	-	110,588	110,588	-
연구지원		1,940,000	1,940,000	-	5,957,300	5,957,300	-
자체간행물발간비		1,540,000	1,540,000	-	5,707,300	5,707,300	-
외부용역비		400,000	400,000	-	250,000	250,000	-
협동조합생태계연구		56,303,320	56,303,320	-	20,838,330	20,838,330	-
오너파트너연구		30,212,500	30,212,500	-	14,000,000	14,000,000	-
협동조합 모델 연구		-	25,000,000	-	-	-	-
조합원 관계 연구		-	217,020	-	-	-	-
공제와협동조합연구		820,000	820,000	-	-	3,838,330	-
파머스쿨조합원조사		53,800	53,800	-	3,000,000	3,000,000	-
연구회 운영		9,678,520	9,678,520	-	2,146,620	2,146,620	-
협동조합과노동연구회		3,071,920	3,071,920	-	1,231,840	1,231,840	-
협동조합조세제도연구회		4,212,870	4,212,870	-	-	-	-
공제연구회		2,393,730	2,393,730	-	914,780	914,780	-
조사 및 교육		40,539,579	1,029,500	39,510,079	39,115,376	2,885,338	36,230,038
수탁 연구		27,203,640	-	27,203,640	13,825,588	-	13,825,588
정책/직원 연구		-	-	-	-	-	-
세미나		13,335,939	1,029,500	12,306,439	25,289,788	2,885,338	22,404,450
중장기연구		69,153,258	69,153,258	-	81,693,656	81,693,656	-
기록물보존사업(아카이브)		3,948,860	3,948,860	-	4,516,860	4,516,860	-
생활평론출판비		56,804,398	56,804,398	-	58,454,866	58,454,866	-
출판기금지원		4,000,000	4,000,000	-	11,181,930	11,181,930	-
해외협동조합연구동향		4,000,000	4,000,000	-	-	-	-
생활일기발간(웹)-경제소비		400,000	400,000	-	7,540,000	7,540,000	-
공동연구와 네트워크		28,600,000	28,600,000	-	36,400,000	36,400,000	-
장학 및 후원		28,600,000	28,600,000	-	36,400,000	36,400,000	-

지적재산의 보급	4,538,010	4,538,010		13,624,158	13,624,158	
포럼	1,538,010	1,538,010		7,526,758	7,526,758	
협동조합신문공모전	3,000,000	3,000,000		6,097,400	6,097,400	
목적사업급여	190,953,050	190,953,050		181,879,111	181,879,111	
목적사업임차료	20,463,300	20,463,300		19,144,889	19,144,889	
목적사업보험료	111,519	111,519				
목적사업지급수수료	11,583,000	11,583,000				
목적사업수도광열비	2,464,751	2,464,751		2,436,547	2,436,547	
분배비용	172,855,030	172,855,030		222,043,190	222,043,190	
인력비용	190,953,050	190,953,050		181,879,111	181,879,111	
시설비용	20,463,300	20,463,300		19,144,889	19,144,889	
기타비용	53,669,349	14,159,270	39,510,079	38,666,585	2,436,547	36,230,038
일반관리비용	192,132,065	171,475,951	20,656,114	244,706,368	211,698,396	33,007,972
일반관리급여	101,569,896	85,009,896	16,560,000	119,574,178	91,746,178	27,828,000
퇴직급여충당금전입액	23,646,092	23,646,092		45,432,153	45,432,153	
복리후생비	27,046,860	27,046,860		27,852,405	27,852,405	
직원교육훈련비	1,948,406	1,948,406		824,252	824,252	
일반관리임차료	7,520,700	5,596,800	1,923,900	8,817,111	6,177,111	2,640,000
일반관리보험료	40,986	30,501	10,485	142,447	142,447	
고정자산감가상각비	11,708,838	11,708,838		11,369,268	11,369,268	
여비교통비	1,107,260	1,053,360	53,900	3,793,090	1,841,720	1,951,370
업무추진비	2,751,330	2,751,330		4,453,262	4,453,262	
통신비	916,570	789,470	127,100	1,140,370	912,040	228,330
제세공과금	194,740	194,740		277,220	277,220	
일반관리지급수수료	6,993,254	5,244,254	1,749,000	14,710,790	14,685,790	25,000
일반관리수도광열비	905,849	674,120	231,729	916,173	580,901	335,272
도서간행물구입비	966,910	966,910		696,539	696,539	
잡비		550,000				
소모품비	1,839,704	1,839,704		822,530	822,530	
회의비	2,416,670	2,416,670		3,615,580	3,615,580	
수선비	8,000	8,000		269,000	269,000	
가지급비용	-			-		
인력비용	154,211,254	137,651,254	16,560,000	193,682,988	165,854,988	27,828,000
시설비용	19,270,524	17,336,139	1,934,385	20,328,826	17,688,826	2,640,000
기타비용	18,650,287	16,488,558	2,161,729	30,425,554	27,885,582	2,539,972
모금비용	2,159,830	2,084,150	75,680	3,229,200	2,424,200	805,000
홍보비	2,159,830	2,084,150	75,680	3,229,200	2,424,200	805,000
기타비용	2,159,830	2,084,150	75,680	3,229,200	2,424,200	805,000
고유목적사업전입액	-	-		-	-	
사업외비용	-	-		3,987,703	650,003	3,337,700
전기요류수정손실	-	-		3,987,703	650,003	3,337,700
자산처분손실	-	-		-	-	
법인세차감전 당기운영이익(손실)	-	21,172,363	-	23,737,339	2,564,976	46,944,536
법인세비용	-	-		-	-	
당기운영이익(손실)	-	21,172,363	-	23,737,339	2,564,976	46,944,536

2020년 재무상태표

제8기 2019년 12월 31일 현재

제9기 2020년 12월 31일 현재

(재)아이클렙협동조합연구소

단위(원)

계정과목	[당기 ~ 2020-12-31]			[전기 ~ 2019-12-31]		
	고유목적사업	수익사업	통합	고유목적사업	수익사업	통합
1. 유동자산			1,427,920,964			1,523,964,170
[당좌자산]			1,427,920,964			1,523,964,170
1) 제예금	239,544,667	26,777,571	266,322,238	112,797,317	63,737,670	176,534,987
2) 정기예적금	1,059,000,000		1,059,000,000	1,209,000,000		1,209,000,000
3) 외상공급금		3,001,500	3,001,500		4,036,500	4,036,500
4) 지점전출금	60,543,568		60,543,568	103,558,954		103,558,954
5) 미수수익	35,028,893		35,028,893	30,738,111		30,738,111
6) 선급금		1,859,252	1,859,252			
7) 선급비용	81,403		81,403	70,208		70,208
8) 가지급금	-		-	-		-
9) 선급부가세						
10) 선급법인세	2,073,270	10,840	2,084,110	-	25,410	25,410
11) 내부상계용코드	-		-	-		-
[재고자산]			-			-
1) 물품재고	-		-	-		-
2. 고정자산			35,472,817			43,785,955
[투자자산]			20,100,000			20,100,000
1) 계통출자금	-		-	-		-
2) 임차보증금	20,100,000		20,100,000	20,100,000		20,100,000
[유형자산]			15,372,817			23,685,955
1) 차량운반구						
2) 설비자산	60,242,020		60,242,020	56,846,320		56,846,320
3) 차량 감가충당금	-		-	-		-
4) 설비자산 감가충당금	- 44,869,203		- 44,869,203	- 33,160,365		- 33,160,365
자산합계			1,463,393,781			1,567,750,125
1. 유동부채			104,921,577			177,816,590
[유동부채]			104,921,577			177,816,590
1) 외상구매금						
2) 본점전입금		60,543,568	60,543,568		103,558,954	103,558,954
3) 미지급법인카드대금	1,800,160		1,800,160	2,671,850		2,671,850
4) 미지급비용	20,036,627		20,036,627	53,471,857	1,450,000	54,921,857
5) 선수금		5,480,000	5,480,000		2,880,000	2,880,000
6) 가수금	-		-	-		-
7) 예수금	13,420,320		13,420,320	13,293,020		13,293,020
8) 예수부가세		3,640,902	3,640,902		490,909	490,909
2. 고정부채			146,556,162			156,845,130
[고정부채]			146,556,162			156,845,130
1) 퇴직급여충당누계액	146,556,162		146,556,162	156,845,130		156,845,130
2) 고유목적사업준비금	-		-	-		-

3. 자본금			300,108,863			300,108,863
[출자금]			300,108,863			300,108,863
1) 기본금	300,108,863		300,108,863	300,108,863		300,108,863
4. 이익잉여금			911,807,179			932,979,542
[이익잉여금]			911,807,179			932,979,542
1) 이월잉여(결손)금	973,559,825	- 40,580,283	932,979,542	973,559,825	- 40,580,283	932,979,542
2) 미처분잉여(결손)금	- 23,737,339	2,564,976	- 21,172,363			-
부채와자본합계:			1,463,393,781			1,567,750,125

2020 예산 대비 실적표

(재)아이엠협동조합연구소

장 절 관 항 목	세목	2020년 예산				2020년 결산				실적 율	
		합계	고유목적사업	수익사업	첨유율	합계	고유목적사업	수익사업	첨유율	차 액	%
수입총계		561,460,000	466,000,000	95,460,000	100.0%	611,060,261	548,253,412	62,806,849	100.0%		108.8%
사업수입		543,460,000	450,000,000	93,460,000	96.8%	592,655,069	530,498,616	62,156,453	97.0%		109.1%
고유목적사업수입		450,000,000	450,000,000	-	80.1%	530,498,616	530,498,616	-	86.8%		117.9%
기부금수입		450,000,000	450,000,000	-	-	530,498,616	530,498,616	-	-		117.9%
보조금수입		-	-	-	-	-	-	-	-		-
회비수입		-	-	-	-	-	-	-	-		-
수입사업수입		93,460,000	-	93,460,000	16.6%	62,156,453	-	62,156,453	10.2%		66.5%
매출이익		93,460,000	-	93,460,000	-	62,156,453	-	62,156,453	-		66.5%
매출		115,860,000	-	115,860,000	20.6%	83,518,961	-	83,518,961	13.7%		72.1%
매출원가		22,400,000	-	22,400,000	4.0%	21,362,508	-	21,362,508	3.5%		95.4%
고유목적사업합의액		-	-	-	-	-	-	-	-		-
사업외수입		18,000,000	16,000,000	2,000,000	3.2%	18,405,192	17,754,796	650,396	3.0%		102.3%
기타수입		2,000,000	-	2,000,000	-	579,845	-	579,845	-		29.0%
이자수입		16,000,000	16,000,000	-	-	17,825,347	17,754,796	70,551	-		-
자산처분수입		-	-	-	-	-	-	-	-		-
전기오류정정수입		-	-	-	-	-	-	-	-		-
지출총계		762,239,268	675,249,268	86,990,000	100.0%	632,232,624	571,990,751	60,241,873	100.0%		82.9%
사업비용		762,239,268	675,249,268	86,990,000	88.6%	632,232,624	571,990,751	60,241,873	90.5%		82.9%
사업수행비용		541,076,500	487,076,500	54,000,000	63.9%	437,940,729	398,430,650	39,510,079	63.0%		80.9%
조직활동비		4,600,000	4,600,000	-	0.6%	1,612,422	1,612,422	-	0.3%		35.1%
활동비		3,000,000	3,000,000	-	0.4%	-	-	-	0.0%		0.0%
분담금		1,600,000	1,600,000	-	0.2%	1,612,422	1,612,422	-	0.3%		100.8%
연구지원		7,500,000	7,500,000	-	1.0%	1,940,000	1,940,000	-	0.3%		25.9%
자체간행물발간비		5,500,000	5,500,000	-	0.7%	1,540,000	1,540,000	-	0.2%		28.0%
외부용역비		2,000,000	2,000,000	-	0.3%	400,000	400,000	-	0.1%		20.0%
협동조합생태계연구		76,000,000	76,000,000	-	10.0%	56,303,320	56,303,320	-	8.9%		74.1%
오너파트너연구		30,000,000	30,000,000	-	3.9%	30,212,500	30,212,500	-	4.8%		100.7%
협동조합 모델 연구		25,000,000	25,000,000	-	3.3%	25,000,000	25,000,000	-	4.0%		100.0%
조합원 관계 연구		3,000,000	3,000,000	-	0.4%	217,020	217,020	-	0.0%		7.2%
공제와협동조합연구		3,000,000	3,000,000	-	0.4%	820,000	820,000	-	0.1%		27.3%
세이프넷 공급사슬 연구		15,000,000	15,000,000	-	-	-	-	-	-		-
피머스협조합원조사		-	-	-	0.0%	53,800	53,800	-	0.0%		0.0%
연구회 운영		13,500,000	13,500,000	-	1.8%	9,678,520	9,678,520	-	1.5%		71.7%
협동조합과노동연구회		3,000,000	3,000,000	-	0.4%	3,071,920	3,071,920	-	0.5%		102.4%
협동조합조세제도연구회		7,500,000	7,500,000	-	1.0%	4,212,870	4,212,870	-	0.7%		56.2%
공제연구회		3,000,000	3,000,000	-	-	2,393,730	2,393,730	-	-		-
조사 및 교육		69,500,000	15,500,000	54,000,000	9.1%	40,539,579	1,029,500	39,510,079	6.4%		58.3%
수탁 연구		38,000,000	-	38,000,000	5.0%	27,203,640	-	27,203,640	4.3%		71.6%
정책/직원 연구		7,000,000	7,000,000	-	0.9%	-	-	-	0.0%		0.0%
세미나		24,500,000	8,500,000	16,000,000	3.2%	13,335,939	1,029,500	12,306,439	2.1%		54.4%
중장기연구		88,000,000	88,000,000	-	11.5%	69,153,258	69,153,258	-	10.9%		78.6%
기록물 보존사업		8,000,000	8,000,000	-	1.0%	3,948,860	3,948,860	-	0.6%		49.4%
생활평론출판비		63,000,000	63,000,000	-	8.3%	56,804,398	56,804,398	-	9.0%		90.2%
출판기금지원		10,000,000	10,000,000	-	1.3%	4,000,000	4,000,000	-	0.6%		40.0%
해외협동조합연구동향		5,000,000	5,000,000	-	0.7%	4,000,000	4,000,000	-	0.6%		80.0%
생활일기발간(협)-경제소비동향		2,000,000	2,000,000	-	-	400,000	400,000	-	-		-
공동연구와 네트워크		40,000,000	40,000,000	-	5.2%	28,600,000	28,600,000	-	4.5%		71.5%
창작 및 후원		40,000,000	40,000,000	-	-	28,600,000	28,600,000	-	-		71.5%
지적재산의 보급		20,000,000	20,000,000	-	2.6%	4,538,010	4,538,010	-	0.7%		22.7%
포럼		12,000,000	12,000,000	-	1.6%	1,538,010	1,538,010	-	0.2%		12.8%
아카이빙교육		2,000,000	2,000,000	-	-	-	-	-	-		-
협동조합논공포전		6,000,000	6,000,000	-	0.8%	3,000,000	3,000,000	-	0.5%		50.0%
목적사업급여		190,000,000	190,000,000	-	24.9%	190,953,050	190,953,050	-	30.2%		100.5%
목적사업임차료		19,500,000	19,500,000	-	2.6%	20,463,300	20,463,300	-	3.2%		104.9%
목적사업보험료		224,000	224,000	-	-	111,519	111,519	-	-		49.8%
목적사업지급수수료		9,652,500	9,652,500	-	-	11,583,000	11,583,000	-	-		120.0%
목적사업수도광열비		2,600,000	2,600,000	-	0.3%	2,464,751	2,464,751	-	0.4%		94.8%
분배비용		263,100,000	263,100,000	-	34.5%	172,455,030	172,455,030	-	27.3%		65.5%
인력비용		190,000,000	190,000,000	-	24.9%	190,953,050	190,953,050	-	30.2%		100.5%
시설비용		19,500,000	19,500,000	-	2.6%	20,463,300	20,463,300	-	3.2%		104.9%
기타비용		58,600,000	4,600,000	54,000,000	7.7%	42,374,830	2,864,751	39,510,079	6.7%		72.3%

일반관리비용	216,162,768	183,172,768	32,990,000	28.4%	192,132,065	171,475,951	20,656,114	30.4%	88.9%
일반관리급여	110,000,000	81,500,000	28,500,000	14.4%	101,569,896	85,009,896	16,560,000	16.1%	92.3%
퇴직급여충당금	27,000,000	27,000,000	-	3.5%	23,646,092	23,646,092	-	3.7%	87.6%
복리후생비	28,000,000	28,000,000	-	3.7%	27,046,860	27,046,860	-	4.3%	96.6%
직원교육훈련비	6,000,000	6,000,000	-	0.8%	1,948,406	1,948,406	-	0.3%	32.5%
일반관리임차료	8,740,000	6,100,000	2,640,000	1.1%	7,520,700	5,596,800	1,923,900	1.2%	86.0%
일반관리보험료	96,000	96,000	-	0.0%	40,986	30,501	10,485	0.0%	42.7%
고정자산감가상각비	11,369,268	11,369,268	-	1.5%	11,708,838	11,708,838	-	1.9%	103.0%
여비교통비	1,900,000	800,000	1,100,000	0.2%	1,107,260	1,053,360	53,900	0.2%	58.3%
업무추진비	2,000,000	2,000,000	-	0.3%	2,751,330	2,751,330	-	0.4%	137.6%
통신비	860,000	510,000	350,000	0.1%	916,570	789,470	127,100	0.1%	106.6%
채세공과금	500,000	500,000	-	0.1%	194,740	194,740	-	0.0%	38.9%
일반관리지급수수료	7,247,500	7,247,500	-	1.0%	6,993,254	5,244,254	1,749,000	1.1%	96.5%
일반관리수도광열비	3,750,000	3,350,000	400,000	0.5%	905,849	674,120	231,729	0.1%	24.2%
도서간행물구입비	2,000,000	2,000,000	-	0.3%	966,910	966,910	-	0.2%	48.3%
잡비	-	-	-	0.0%	550,000	550,000	-	0.1%	-
소모품비	3,500,000	3,500,000	-	0.5%	1,839,704	1,839,704	-	0.3%	52.6%
회의비	3,000,000	3,000,000	-	0.4%	2,416,670	2,416,670	-	0.4%	80.6%
수선비	200,000	200,000	-	0.0%	8,000	8,000	-	0.0%	4.0%
가지급비용	-	-	-	0.0%	-	-	-	0.0%	-
인력비용	171,000,000	142,500,000	28,500,000	22.4%	154,211,254	137,651,254	16,560,000	24.4%	90.2%
시설비용	20,205,268	17,565,268	2,640,000	2.7%	19,270,524	17,336,139	1,934,385	3.0%	95.4%
기타비용	24,957,500	23,107,500	1,850,000	3.3%	18,100,287	15,938,558	2,161,729	2.9%	72.5%
모금비용	5,000,000	5,000,000	-	0.7%	2,159,830	2,084,150	75,680	0.3%	43.2%
홍보비	5,000,000	5,000,000	-	0.7%	2,159,830	2,084,150	75,680	0.3%	43.2%
기타비용	5,000,000	5,000,000	-	0.7%	2,159,830	2,084,150	75,680	0.3%	43.2%
고유목적사업전입액	-	-	-	-	-	-	-	-	-
사업외비용	-	-	-	-	-	-	-	-	-
전기오류수정손실	-	-	-	-	-	-	-	-	-
자산처분손실	-	-	-	-	-	-	-	-	-
법인세차감전 당기운영이익(손실)	- 200,779,268	- 209,249,268	8,470,000	-	- 21,172,363	- 23,737,339	2,564,976	-	10.5%
법인세비용	-	-	-	-	-	-	-	-	-
당기운영이익(손실)	- 200,779,268	- 209,249,268	8,470,000	-	- 21,172,363	- 23,737,339	2,564,976	-	10.5%

2020실적(수입)(611,060,261원)



2020실적(지출)(632,232,624원)



IV. 제3차 중기(2019~21) 활동계획

1. 사명과 비전, 중기 활동목표

가. 아이쿱협동조합연구소의 사명과 비전

1. □ 사명

- 급변하는 세계와 한국 사회 변화에 아이쿱생협이 능동적으로 대응하도록 아이쿱생협을 대표하는 싱크탱크로서 공헌한다.
- 활동가와 실무자, 연구자가 실천적으로 협동하여 한국생협운동의 혁신적인 실천을 이론화함으로써 한국생협운동의 양적, 질적 발전에 기여한다.
- 협동조합운동의 사회경제적 영향력을 시민과 공공부문에 계발, 홍보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한국 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한다.

2. □ 비전

- 아이쿱생협의 발전을 촉진하는 ‘협동조합 생태계’ 조성과 ‘지역사회를 바꾸어 가는 조합원 운동’, ‘협동조합인들의 삶의 문화 창조’의 연구 거점이 된다.
- 협동조합 시민을 창조하며 협동조합운동의 새로운 리더를 함양하는 교육, 계발활동의 선도적인 교육 거점이 된다.
- 실천과 조사, 연구가 융합된 창조적이며 과학적인 협동조합 연구기관으로서 국내외 연구기관, 다양한 분야의 연구자들과 활력 있는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협동조합운동의 혁신 역량으로 인정받는다.

3. □ 인문적인 비전

- 연구소 구성원은 조합원과 협동조합운동에 봉사하며 실천하는 지성이 된다.
- 소비자협동조합운동에 관한 가장 신뢰받는 연구소가 된다.
- 협동의 맹아를 키우며 협동문화를 복돋는 연구소가 된다.
- 실천하는 연구자, 연구하는 활동가가 상승효과를 내는 연구소가 된다.

4. □ 슬로건

행
연구^행 동(動) “아이쿱생협의 싱크탱크와
한국협동조합운동의 플랫폼”

나. 제3차 중기활동계획(2019-2021) 목표

- 조합원 35만명, 사업금액 1조원 시대에 대비한 아이쿱 싱크탱크 되기
- 내부 연구역량 강화를 통한 선도적인 협동조합 연구성과물 생산
- 다양한 연구 및 교육 네트워크 구축과 공동연구 강화
- 민주적인 거버넌스와 자율적인 운영체제 구축
- 지정기부금 단체로서의 사회 공공성 확보

2. 연구소를 둘러싼 환경

□ 아이쿱생협 현황

○ 2017년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조합원 수는 26만명(조합비 부과자 수 22.8만명), 생산자 2,172명, 임직원 3,713명임. 지역조합 95개, 매장 수 217개임. 매출액은 5,538억원으로 전년 대비 0.3% 성장하였으나 2015년에 비해 2016년에 5.1% 성장했던 것에 비하면 성장률이 현저하게 떨어짐. 2016년에는 이와 같은 성장에도 불구하고 조합원 증가율이 정체되어 있고 탈퇴율은 매우 높은 상황이라 이를 극복하기 위한 새로운 방법을 모색해야 할 시기였음

○ 이에 이듬해인 2017년 ‘아이쿱사명선언문’을 채택하고 이를 바탕으로 2018년에는 “아이쿱사명에 따른 사업과 조직의 혁신기반 조성”을 사업기조로 하여 조합원, 사업, 생산, 직원/복지 분야의 목표와 핵심분야 기조를 설정함. 조합원 분야에서는 조합원관계강화(MRM)와 아이쿱마일리지를 도입함으로써 조합 가입 기간에 따라 소통방식을 다변화하여 조합원의 신뢰를 돈독히 하고자 함. 아이쿱은 설립 초기부터 조합비제도를 통해 조합원의 실질적 통제와 참여를 이끌어 내고자 했고 이것이 조합원의 구매력을 집중시킴으로써 아이쿱의 급속한 성장에 중요한 기여를 했음. 조합원관계강화(MRM)와 아이쿱마일리지는 바로 이러한 조합비 제도의 장점을 유지하면서 새로운 조합원 혜택을 제공하고자 한 것임. 가입한 지 3년 미만인 신입 조합원에게 아이쿱 자연드림의 매력을 충분히 체험할 수 있도록 조합원관계강화(MRM)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가입기간이 3년 이상인 조합원에게는 가입년수와 출자금액 구간에 따라 매년 일정액의 마일리지를 부여하여 조합비/물품대금/서비스 이용대금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이용 조합원, 출자금을 통한 자본 조성에 기여한 조합원들의 혜택을 증진하는 시스템을 도입함. 조합원관계강화(MRM)와 아이쿱마일리지는 조합원의 생애주기, 기여 기간에 따라 요구와 만족도 성향이 다르다는 점을 고려하여 조합원 만족도를 높이고 멤버십을 꾸준히 유지하여 조합원층을 두텁게 하기 위한 노력임

○ 한편 2014년 구례자연드림파크에 이어 2018년 괴산자연드림파크 오픈으로 안전한 식품의 생산기반이 강화됨. 자연드림파크는 생산자들의 협동조직으로서 고용관계에 있는 노동자들과의 관계를 새롭게 설정하고 강화해나가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음. 새로운 상부상조와 협력의 생태계인 SAPENet의 정착을 통해 소비자-조합원 조직, 생산자 조직, 직원(노동조합) 조직, 그리고 다른 사회적경제조직 사이의 네트워크를 활성화하고 상생과 연대의 경제를 만들어나가야 함

□ 경제 및 사회 변화

- 빅데이터, 인공지능, 블록체인 등의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인해 사람들의 일자리의 양과 질이 변화하고 있음. 이에 따라 저임금과 빈부격차가 심화되고 있으나 이를 해결하기 위한 현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정책은 단기간에 성과를 내기 어려운 중장기적인 시야를 가진 정책이라 가시적인 성과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음

- 세계경제성장률은 2019년에도 2018년과 같은 3.7%로 선진국에선 2.1%, 신흥국에서는 4.7% 성장률로 전망함(IMF, 2018.10). 그러나 한국경제성장률은 대체로 2.7%로 전망되며 민간경제연구소는 더 낮은 성장률 2.5%를 전망함. 국제 신용평가사 무디스는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을 2.5%로 전망하였으며 IMF도 내년 경제성장률을 2.6%로 예측하는 등 당분간 한국 경제는 저성장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보임

- 이에 정부는 2019년 예산안 총지출을 전년대비 9.7% 증가한 470.5조원을 편성하여 이 중 162.2조원을 보건·복지·노동분야에 배정(전년대비 12.1% 증가. 이 중 일자리 예산 23.5조원)하여 가계 소득여건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됨. 한편 민간소비는 2018년에 비해 오히려 1% 하락할 것으로 전망함. 또한 미국과의 금리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금리 인상이 몇 차례 있을 것이며 자산가격 하락 가능성이 있음. 정부는 경제성장률보다 경제 체질 개선을 위해 일자리·소득 지원정책, 사회보장 서비스를 꾸준히 확충, 강화해가야 할 것임

- 중장기적으로 ‘인구쇼크 현상’이 경제 구조 전체에 파급될 것임. 2017년 기준, 한국 총인구는 5,177만명이고 인구증가율은 1970년대 이래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0.39%까지 둔화되었음. 통계청 추계에 따르면 저출산경향으로 인해 한국의 인구는 2031년에 인구성장이 멈추는 제로 성장에 도달하여 5,292만명으로 정점을 찍은 이후 인구증가율이 마이너스가 될 것이라 함. 이는 생산인구에도 영향을 미쳐 15~64세 생산인구는 2018년 4.6만 명 감소, 2019년 6.8만 명, 2020년엔 24만 명 감소할 것으로 추정됨. 가구형태도 크게 변화하고 있음. 2018년 초에 보건복지부가 발간한 ‘통계로 보는 사회보장 2017’에 따르면 1인 가구가 가장 큰 비중(27.9%)을 차지하고 그 다음은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순이었음. 고령화와 저출산, 1인 가구 증가 경향은 앞으로 더 심화될 것으로 통계청은 추정하고 있음. 생산인구의 감소는 노동력 수급 불일치 외에 국민연금 등 국가재정 및 사회보장기금 운용과 설계에 영향을 주며 가구형태의 변화는 소비 방식과 단위에 영향을 줌

□ 정치적 변화

- 세 차례에 걸친 남북 정상회담과 한 차례의 북미정상회담이 진행되었고 앞으로도 이러한

남, 북, 미 삼자 또는 한반도를 둘러싼 6자 간의 만남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임. 북한의 경제성장 욕구로 인해 점차 북한이 개방되고 철도, 도로 등의 기간시설 정비를 위해 제조업과 건설 투자가 증가할 가능성이 있음. 북한의 개혁, 개방 과정에서 협동조합을 포함한 사회적경제기업이 참여하여 탐욕적 자본주의경제가 아닌 협동의 경제체제를 구현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는 적극적인 방안 모색이 필요임

□ 사회적경제에 대한 관심 확산

○ 문재인정부는 우리 사회의 포용적 성장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사회적경제를 적극적으로 활성화하는 정책방향을 설정, 대통령 비서실에 사회적경제비서관을 신설하여 여러 부서 간 이견을 조율하면서 정책을 실행하고 있음. 특히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에서 금융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사회가치연대기금을 설치하여 사회적경제에 대한 임팩트투자의 길을 본격화하려고 함. 사회적경제 교육 확대 및 대학에서의 인재양성도 정책의 중요한 축임. 이와 같은 정책을 통해 고용창출과 소득 양극화 해소, 사회안전망 강화, 공동체 복원 등을 도모함으로써 기존 자본주의경제와는 다른 새로운 개념의 '경제생태계'를 조성하려는 것임. 이런 정부의 적극적 지원정책이 올바른 방향을 잡아갈 수 있도록 시민사회영역의 방향 제시 역할 필요

3. 제3차 중기 활동 계획 개요

가. 연구·조사 사업

표 44. 제3차 중기 연구·조사 사업

목표	제3차 중기 연구·조사 사업
<p>목표 1</p> <p>아이쿱협동조합연구소의 핵심역량 발휘</p> <p>아이쿱생협 운동모델의 이론화</p> <p>협동조합 운동과 연구 견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핵심연구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구감소·고령·사회전환 시대 협동조합 생태계 연구 1) 협동조합 비즈니스모델 연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외 협동조합의 비즈니스 모델, 아이쿱의 경험을 해석·이론화 - 생애주기에 따른 더 높은 차원의 소비자 조합원의 욕구 실현 필요 - 성공한 협동조합 사례를 참고하여 아이쿱의 비즈니스모델 제시 2) 협동조합 거버넌스 연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협동조합 생태계를 형성하기 위한 협동조합 거버넌스에 대한 연구 - 협동조합에서의 조합원과 파트너십, 협동조합과 노동조합,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경영 체계와 관행 발전(예, 협동조합 인사제도) 3) 협동조합 법제도 개선 연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협동조합에 고유한 거버넌스를 구현하기 위한 법제도 개선 과제 도출 ◎ 연구회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도개선연구회: 제도개선이 필요한 분야를 주제별로 세분하여 연구회를 재구성하고 각 연구회에 새로운 전문가 영입. • 생활동향연구회: 기존의 연구회 역할과 내용을 고려하여 적절한 개선방안 탐색 ◎ 조사 및 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탁조사(지역조합, 사업조직, 외부기관의 위탁사업) • 기본조사(2021년): 조합원/생산자/직원 실태와 의식조사(사회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부위탁도 검토 가능 • 하계세미나
<p>목표 2</p> <p>선도적 기본과 토양이 되며 중장기적인 연구</p> <p>대중적 학술정론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협동조합운동 100년사> (2017~2019) • 출판지원기금 운용: 협동조합고전, 기본문서 • <해외협동조합연구동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이한 사회체제 사이에 이루어진 협동조합 운동의 협력, 연대 사례 연구 - 사회변화에 따른 협동조합 거버넌스, 비즈니스모델 변화 연구 • 중장기 연속기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목표1'의 주제들 중심 연속 연구성과물 생산 - SDGs 달성에서 협동조합의 역할: 통계 및 성과평가와 연계 • <생협평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편집위원장과 편집위원(조합원) 선임: 임기 만료. - 신임 편집위원장 체제 출범 • '아이쿱아카이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이쿱생협의 아카이브로서 아이쿱생협 관련 기록물 중심으로 수집 - 기록물 수장고 및 전시공간 기획 및 준비
<p style="text-align: center;">목표 3</p> <p style="text-align: center;">연구네트워크 구축 사회적경제 지식생태계 오피니언층의 형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동행사 및 공동연구/타 연구기관, 타 협동조합&사회적경제조직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제: 세이프넷, 협동조합금융조직, 사회적금융 등 • 지역 연구기관, 대학 육성 및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동연구, 공동세미나/포럼, 연구원 교류, 인턴제도 활용 • 협동조합 교육연구 거점대학과의 연계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적경제 인재양성 - 연1회 공동행사(학술대회, 국제학술대회 등) 주관 • 아이쿱미디어를 통한 정보발신
<p style="text-align: center;">목표 4</p> <p style="text-align: center;">차세대 기회제공·발굴 사회적경제 지적재산의 공유와 보급에 기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이쿱 협동조합 논문공모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재 방식 지속, 추후 주제를 정해서 연구 위탁하는 방식으로 전환 고려 • 아이쿱포럼(국제포럼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협동조합 제도개선 관련 포럼 (국회사회적경제포럼 등과의 공동주최, 2019년 봄엔 스페인과 포르투갈 협동조합법)

나. 거버넌스

- 연구자 이사 선임
- 이사 활동의 지속, 심화
(예: 연구활동, 생협평론 편집위원, 지역조합 활동과 사례연구 연계 등)

다. 각 자치규정의 정비

- SAPENet 가입을 반영하여 적절하게 수정함.

라. 발전과제

- 재단법인으로서의 자산 규모 확충 필요함

- 연구원 충원 및 연구역량 강화: 공동연구, 책임연구 등을 통해 연구 리더십 육성, 강화
- 자기경영 도입
- 연구월 도입
 - 모든 정직원에게 적용
 - 7년 근무 후 3개월 연구월, 전체 근무 기간 중 최대 2회 부여
 - 전문역량 개발, 연구소 비전 고민, 진로 설계를 위한 시간으로 활용

V. 2021년 사업계획 및 예산안

1. 2021년 사업계획

제3차 중기활동계획을 중심에 두고 2020년에 실행한 과제를 디딤돌 삼아 2021년에는 한 단계 심화되거나 다음 단계 연구 및 활동으로 나아가기 위해 다음과 같은 사업을 펼치고자 한다.

가. 2021년 사업계획

표 45. 2021년 사업계획

목표 1	아이쿱협동조합연구소의 핵심역량 발휘 세이프넷 및 아이쿱생협 운동과 비즈니스 모델의 이론화 협동조합 운동과 연구 건인
<p>제3기 중기활동계획</p> <p>□ 핵심연구분야 :인구감소·고령·사회전환 시대 협동조합 생태계 연구</p> <p>① 협동조합 비즈니스모델 연구</p> <p>② 협동조합 거버넌스 연구</p> <p>③ 협동조합 법제도 개선 연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후 위기에 대응하는 소비자기후행동 관련 조사연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1년 소비자기후행동에 필요한 자료 생산: 채식, 플라스틱, 에너지, 임팩트 측정 등 • 협동조합 비즈니스모델 연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ICA ccr 발표 - 발표 이후 연구보고서로 발간 혹은 학술지 투고 • 사회적경제 및 기후변화 관련 담론 연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객원연구위원 • 세이프넷 경영전략 연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탁연구(아이쿱펠로우 외)
제3기 중기활동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협동조합과혁신연구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동연구회와 조세제도연구회 통합해서 진행

<p>□ 연구회 운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제: 플랫폼 노동에 대한 사회적경제의 대응, 노동자 기업인수, 기본법과 개별법 통합 전략, 사회적 금융 • 사회적성과연구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협동조합이 만들어낸 사회적 성과와 지속가능 발전에 대한 기여 사례 조사 진행 - 2021년 하반기 구성 • 공제연구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적경제 공제 법·제도 및 개선 과제를 중심으로 - 언론 기고 등 공론화 작업 - 한일공제연구교류회 개최 예정
<p>제3기 중기활동계획</p> <p>□ 조사 및 교육</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탁연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본법과 개별법 통합 혹은 조세 제도 • 아이쿱생협 조합원 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섯 번째 조사. 생활의 필요를 함께 풀어내는 협동조직으로서 조합원의 생각과 소비실태를 체계적으로 파악할 필요 있음 • 파머스쿱 조합원 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 번째 조사. 파머스쿱 조합원의 실태와 의식을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세미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요 내용의 세미나는 구례, 괴산에서 반복 진행 - 2월 하계세미나 : 코로나 이후의 한국 경제 or Producer 과정 후 프로그램 발표 - 연간 총3회 정도 진행 • 세이프넷 기업가역량 개발 프로그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하반기: Producer 과정 (대전)
<p>목표 2</p>	<p style="text-align: center;">선도적 기본과 토양이 되는 중장기적인 연구 대중적 학술정론지</p>
<p>제3기 중기활동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외협동조합연구동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는 협동조합

<input type="checkbox"/> 해외협동조합연구동향 <input type="checkbox"/> 출판지원기금 <input type="checkbox"/> 생협평론 <input type="checkbox"/> 아이쿱 아카이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외 협동조합의 브랜드 전략 등 - 협동조합 경제적·사회적 성과 평가 및 보고 사례 - 협동조합 HRM 관련 연구 동향 • 출판지원기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협동조합과 사회적경제 관련 서적 출판 지원 - 레이들로보고서 2쇄 - 공정무역 도서 - 직원경영아카데미 도서 - 퀘백 사회적경제 30년 - 한국협동조합운동100년사 요약본 영문판: 비매품 • 생협평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1~2022 시즌 편집위원회 : 김찬호 편집위원장, 8명의 편집위원으로 구성 - 42호~45호 발간 • 아이쿱아카이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소 업무와 관련된 아카이브 보존자료 발췌 및 보존, 목록화 - 기존 발행된 책이나 자료 리뷰(웹), 관심을 환기시킴 - 온라인 전시 풍부하게 - 해외 협동조합 아카이브 사례 조사
<p>목표 3</p>	<p>연구네트워크 구축, 사회적경제 지식생태계 오픈이언츠의 형성</p>
<p>제3기 중기활동계획</p> <input type="checkbox"/> 공동행사 및 공동연구 <input type="checkbox"/> 지역 연구기관, 대학 육성 및 지원 <input type="checkbox"/> 협동조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동연구 및 거점 대학과의 연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4-5개 대학 공동으로 각 대학이 잘 할 수 있는 형태의 학술행사 기획, 진행 - 연구소에서 후원 • UNRISD 파일럿테스트 참여 • 아이쿱 펠로우(fellow)와의 공동연구, 또는 연구지원

<p>교육연구 거점 대학과의 연계활동 <input type="checkbox"/> 아이쿱 미디어를 통한 정보 발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적경제 인재 양성을 위한 장학금 지원 • 교육연구기금: Producer 과정 지원 • 아이쿱미디어를 통한 정보발신 : 빛트인매거진 월례 발송
<p>목표 4</p>	<p>차세대 기회제공·발굴 사회적경제 지적재산의 공유와 보급에 기여</p>
<p>제3기 중기활동계획 <input type="checkbox"/> 아이쿱 협동조합 논문공모전 <input type="checkbox"/> 아이쿱포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이쿱포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1회 아이쿱포럼: 아이쿱생협 조합원 조사 - 52회 아이쿱포럼: 파머스쿱 조합원 조사 (혹은 지역별 세미나?) • 특별 행사: ICA 125주년 대회에 전원 역할 참여(세션 운영, 홍보 및 안내 실무 등)
<p>거버넌스 및 발전과제</p>	
<p>거버넌스 및 발전과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거버넌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활동과 세이프넷에 기여 - 이사의 대내외 활동 강화 (세이프넷, 사회적경제, 협동조합 대외행사 및 활동 시 연구소의 홍보 및 대표하는 활동 적극적으로 실행) - 연구소 사무국과 소통 확대 •각 자치규정의 정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필요 시 •사무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역량 강화: 토론회(2달 1회, 도서, 영화 등 다양한 소재로 진행) 2월1일 시작. 《클린미트》 - 사무국장 직책 폐지: 사무국장의 직무 내용은 수석 사무원의 직무 내용으로 흡수 - 자기경영 실행 - 회계업무위탁

나. 연구·조사 세부사업계획

표 46. 2021년 연구·조사 세부 사업계획

1) 2021년 아이쿱생협 조합원의 소비생활과 의식에 관한 조사	
연구 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활의 필요를 함께 풀어내는 협동조직으로서 아이쿱생협은 조합원의 생각과 소비실태를 체계적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음 · 이에 조합원들의 소비생활과 의식, 활동 등에 대한 조사를 함으로써 조합원들의 사업과 활동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높이고 아이쿱생협의 나아갈 방향과 정책 결정에 참고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연구내용 및 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이쿱생협 조합원의 소비생활과 의식, 활동 등에 대한 조사 · 아이쿱생협 조합원 설문 및 분석 · 사회 변화 속에서의 조합원의 소비실태 및 의식의 변화 파악, 조합원 관여 제고를 위한 시사점 모색
연구 기간	'21.1~'21.9
2) 2021년 파머스쿱(Farmer's COOP) 조합원 실태 및 의식조사	
문제제기 및 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파머스쿱(Farmer's COOP) 조합원 실태 및 의식조사는 2015년, 2018년에 이어 파머스쿱 조합원을 대상으로 한 세 번째 조사임. 파머스쿱 조합원은 아이쿱생협과 계약재배를 하면서 파머스쿱에 참여하게 된 친환경농업 생산자들임. 이 조사는 파머스쿱 조합원의 실태와 의식을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연구내용 및 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사 대상 : 파머스쿱 생산자 조합원 약 360명 전원을 대상 · 조사 내용 : 파머스쿱 조합원의 생산현황, 아이쿱과 거래 관련한 실태 및 의식, 파머스쿱의 활동과 사업에 대한 의식, 친환경농업 실태 및 의식 등 · 조사 방법 : 설문지를 개인에게 우편으로 발송하고 작성된 설문지는 회송 봉투를 통해 회수
연구 기간	1월 ~ 12월(설문 배포 및 수거 기간: 5월 ~ 6월 예정)
3) 협동조합 비즈니스 모델 <i>Entrepreneurial Innovation in a cooperative way: in the case of iCOOP Korea's cluster</i>	
연구 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이프넷이 진화해오는 과정에서 만들어진 클러스터를 아이쿱생협의

	대표적인 혁신사례로 보고 클러스터의 형성과정을 분석함으로써 그 진화과정의 특성을 설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연구 내용 및 방법	· 조사 대상: 세이프넷 클러스터 사례 · 조사 방법: 사례연구
연구 기간	2020.7 - 2021.12

4) 소비자기후행동 조사 연구

연구 목적	· 소비자기후행동의 필요성과 정당성, 관련 사례의 발굴 등을 위해 국내외 자료를 참고하여 이슈브리프 작성, 조합원(기후행동 실천가)들이 참고하거나 교육에 활용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함
연구 내용 및 방법	· 조사연구 내용: 채식, 플라스틱, 에너지, 임팩트, 기후행동 119 · 조사연구 및 자료공유 방법: 조사연구팀(지원센터와 연구소 직원으로 구성, 현재 8명)에서 주제별로 역할 분담하여 자료 탐색, 이슈브리프 작성. 소비자 기후행동 게시판에 게시 · 세이프넷의 타법인과 협업: 조사연구팀 운영, 캠페이너 양성과정에 자료 제공 및 강의 등
연구기간	2021.1 ~ 2021.12

다. 아이쿱 아카이브 세부사업계획

1. SAPENet 관련 기록물 수집

- 2021년 소비자기후행동 캠페인 기록화
 - 소비자 기후행동 실행팀 단위에서 생산되는 기록물 수집
 - 생산주체 및 주제별 분류
 - 소비자기후행동 캠페인 연대표를 작성하고 수집 기록물 연결하여 정리
- 2020년의 연장선에서 SAPENet 관련 기록물 수집
 - 치유와 힐링, 오너·파트너십 등 관련 자료 일체
- 특정 주제를 선정하여 기록물 수집
 - iCOOP생협 공정무역, 재난대응, 코로나19와 iCOOP생협 등

2. 비전자기록물의 디지털화

- (1순위) 기록물의 보존상태 취약
- (2순위) 내부적 활용이 많은 기록물

※ 연구소에서 소장하고 있는 기록물 중 디지털화하여 외부에 공개할 수 있는 기록물은 제한적임

3. 해외 협동조합 아카이브 사례 조사

- 해외 협동조합의 아카이브 사례 조사를 통한 iCOOP 아카이브 발전 및 개선방향 모색
- 해외 협동조합 아카이브를 통해 공개된 자료 및 기록물 수집
 - 해외 아카이브 자료 외에 협동조합 관련 국외자료 수집 (통계 등)

4. 사회적경제 유관기관 해외연수자료 아카이브

- 사회적경제 유관기관들의 해외연수자료를 통한 경험의 공유와 축적
 - 현재 SAPENet, 경남과학기술대학교 해외연수자료 수집 및 업로드 (통합목록 작업 예정)

5. 조합원 대상 기록물 상시 수집

- 2021년(1년 간) 조합원 대상으로 기록물 수집
 - 주제(예시) : ‘조합원 일상이 iCOOP생협의 일상’
 - iCOOP생협이 아닌 조합원으로서 개인의 기록물
 - 조합원으로서의 일상이 기록된 자료 및 기록물 일체 (문서, 사진, 동영상, 행정박물 등)
- 예) : 아토피 자녀 치료 일기(지), 자연드림파크 가족여행 사진, 자연드림 이용 가계부 등

※ 공모전이 아닌 상시수집으로 상금 및 부상은 지급하지 않음 (소정의 선물은 고려)

라. 이사회 운영 계획

1) 정기 이사회

- 2월, 4월, 6월, 8월 10월, 12월(격월 개최)

2) 학습회

- 목적 : 최근 연구소에서 발간한 책을 함께 읽고 생각을 나누면서 소통한다.
임원의 역량 강화와 성장을 도모한다.

3) 워크숍

- 목적 : 의논할 주제를 정하고 깊이 있는 논의를 통해서 생각을 나누고 결론을 도출한다. 소통하며 친목을 도모한다.
- 일정 : 상반기, 하반기(총2회)

4) 이사 활동

- 생협평론 편집위원 참여
- 빛트인 매거진 등 칼럼 참여
- 포럼, 각종 행사 시 사회 및 진행 참여
- 기타

마. 2021년 법인 일정

- 지정기부금단체 지정: 2018.01.01.-2023.12.31. (2024년 재지정 신청)
- 지정기부금단체 사후관리: 2022년(~02월)
- 2021년 이사회 개최(예정) : 02,04,06,08,10,12월
- 2020년 하반기 원천세 신고 : ~01/10
- 2020년 동계 인턴 : 01~02월
- 2020년 2기 확정 부가세 신고 : ~01/25
- 2020년 하반기 근로/사업소득간이명세신고 : ~01/31
- 2020년 귀속 연말정산 : 직원 제출 02월, 회사 신고 03월
- 2020년 이자배당기타소득지급명세신고 : ~03/02
- 2020년 근로사업퇴직소득지급명세신고 : ~03/10
- 2020년 건강보험 보수총액 신고 : ~03/10

- 2020년 고용산재보험 보수총액 신고 : ~03/16
- 2020년 법인세 신고 : ~03/31
- 2020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제출 : ~03/31
- 2020년 공익법인보고서(출연재산보고서 등) 제출 : ~03/31
- 2021년 1기 예정 부가세 신고 : ~04/25
- 2020년 공익법인 결산서류 의무공시 : ~04/30
- 2020년 기부금 영수증 발급명세 제출 : ~06/30
- 재산보험 연장 : 07월
- 2021년 상반기 원천세 신고 : ~07/10
- 2021년 상반기 근로/사업소득간이명세신고 : ~07/10
- 2021년 1기 확정 부가세 신고 : ~07/25
- 2021년 법인세 중간 예납 : ~08/31
- 2021년 2기 예정 부가세 신고 : ~10/25

2021년 예산

(재)아이쿱협동조합연구소

단위(원)

장 절 관 항 목	세목	2021년 예산				2020년 결산				세부내역
		합계	고유목적사업	수익사업	점유율	합계	고유목적사업	수익사업	점유율	
수입총계		795,185,408	764,957,408	30,228,000	100.0%	611,060,261	548,253,412	62,806,849	100.0%	
사업수입		779,185,408	750,957,408	28,228,000	98.0%	592,655,069	530,498,616	62,156,453	97.0%	
고유목적사업수입		750,957,408	750,957,408	-	94.4%	530,498,616	530,498,616	-	86.8%	
기부금수입		750,957,408	750,957,408	-	-	530,498,616	530,498,616	-	-	조합원기부금 6억5천만원+기타 기부금 100,957,408원(법인 연말 기부금 등 예상)
보조금수입		-	-	-	-	-	-	-	-	
회비수입		-	-	-	-	-	-	-	-	
수입사업수입		28,228,000	-	28,228,000	3.5%	62,156,453	-	62,156,453	10.2%	
매출이익		28,228,000	-	28,228,000	-	62,156,453	-	62,156,453	-	
매출		58,128,000	-	58,128,000	7.3%	83,518,961	-	83,518,961	13.7%	평론정기구독(800*2500*4),서점판매(80*400*4),수탁연구1(5건)
매출원가		29,900,000	-	29,900,000	3.8%	21,362,508	-	21,362,508	3.5%	평론제작비(4000000*4), 단행본 제작원가(책백 13,900,000원)
고유목적사업환입액		-	-	-	-	-	-	-	-	
사업외수입		16,000,000	14,000,000	2,000,000	2.0%	18,405,192	17,754,796	650,396	3.0%	
기타수입		2,000,000	-	2,000,000	-	579,845	-	579,845	-	재고도서판매, 외부강사로 수입 등
이자수입		14,000,000	14,000,000	-	-	17,825,347	17,754,796	70,551	-	정기예금 2021년 이자수익
자산처분수입		-	-	-	-	-	-	-	-	
전기요류수정수입		-	-	-	-	-	-	-	-	
지출총계		795,185,408	719,429,608	75,755,800	100.0%	632,232,624	571,990,751	60,241,873	100.0%	
사업비용		795,185,408	719,429,608	75,755,800	90.5%	632,232,624	571,990,751	60,241,873	90.5%	
사업수행비용		571,166,300	533,166,300	38,000,000	67.0%	437,940,729	398,430,650	39,510,079	63.0%	
조직활동비		2,600,000	2,600,000	-	0.3%	1,612,422	1,612,422	-	0.3%	
활동비		2,000,000	2,000,000	-	0.3%	-	-	-	0.0%	이사 활동비
분담금		600,000	600,000	-	0.1%	1,612,422	1,612,422	-	0.3%	NAB 회비(50만원), 일생협총합연구소 회비(1만원)
연구지원		6,000,000	6,000,000	-	0.8%	1,940,000	1,940,000	-	0.3%	
자체간행물발간비		4,000,000	4,000,000	-	0.5%	1,540,000	1,540,000	-	0.2%	사업보고자료집, 연구소 간행물의 디자인과 인쇄비
외부용역비		2,000,000	2,000,000	-	0.3%	400,000	400,000	-	0.1%	감수, 번역, 자문 등
기타		-	-	-	-	-	-	-	-	
협동조합생태계연구		113,700,000	113,700,000	-	14.3%	56,303,320	56,303,320	-	8.9%	
기후위기 연구		30,000,000	30,000,000	-	3.8%	30,212,500	30,212,500	-	4.8%	객원연구원 위탁
담론 연구		25,000,000	25,000,000	-	3.1%	25,000,000	25,000,000	-	4.0%	객원연구위원 위탁
조합원의식조사		35,700,000	35,700,000	-	4.5%	217,020	217,020	-	0.0%	조사, 자문, 교정교열 등 연구 관련 비용
세이프넷 경영전략 연구		10,000,000	10,000,000	-	1.3%	820,000	820,000	-	0.1%	연구 관련 비용
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 연구		-	-	-	-	-	-	-	-	연구 관련 비용
퍼머스쿨조합원조사		13,000,000	13,000,000	-	1.6%	53,800	53,800	-	0.0%	조사, 자문, 교정교열 등 연구 관련 비용
연구회 운영		8,000,000	8,000,000	-	1.0%	9,678,520	9,678,520	-	1.5%	
제도혁신연구회		3,000,000	3,000,000	-	0.4%	3,071,920	3,071,920	-	0.5%	세미나 6회, 기본법, 개별법 통합, 플랫폼 노동, 기업인수, 사회적 금융
사회적성과연구회		1,500,000	1,500,000	-	0.2%	4,212,870	4,212,870	-	0.7%	세미나 구성(내부 3명 + 외부 0명), 하반기 구성 예상
공제연구회		3,500,000	3,500,000	-	-	2,393,730	2,393,730	-	-	세미나 4회, 연구보고서, 이슈브리프 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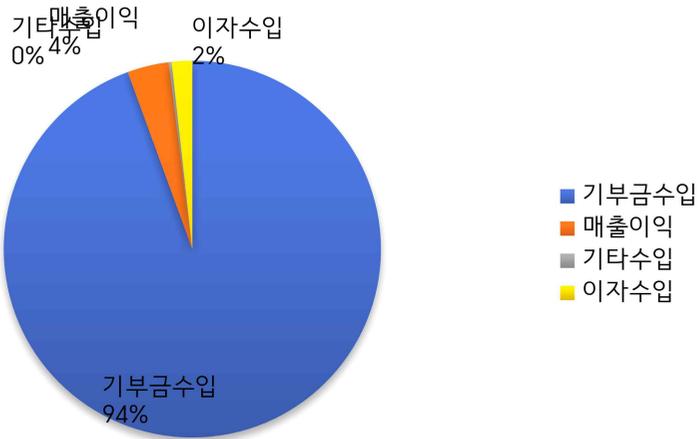
조사 및 교육	51,100,000	13,100,000	38,000,000	6.4%	40,539,579	1,029,500	39,510,079	6.4%	
수탁 연구	38,000,000		38,000,000	4.8%	27,203,640		27,203,640	4.3%	협동조합 기본법과 개별법 통합 or 협동조합 조세 제도
교육기금	4,600,000	4,600,000	-	0.6%	-		-	0.0%	역량개발프로그램 운영
세미나	8,500,000	8,500,000		1.1%	13,335,939	1,029,500	12,306,439	2.1%	하계 세미나 등 6회
중장기연구	109,000,000	109,000,000		13.7%	69,153,258	69,153,258	-	10.9%	
기록물보존사업	5,000,000	5,000,000		0.6%	3,948,860	3,948,860	-	0.6%	서버임대료, 전산프로그램 유지관리비, 기록물 공모전 등
생협평론출판비	63,000,000	63,000,000		7.9%	56,804,398	56,804,398	-	9.0%	생협평론 42-45호 발간
출판기금지원	30,000,000	30,000,000		3.8%	4,000,000	4,000,000	-	0.6%	알마와 협력하여 3권 출판
해외협동조합연구동향	9,000,000	9,000,000		1.1%	4,000,000	4,000,000	-	0.6%	기후변화시대에 대응하는 아이클 미래 먹거리 프로젝트
경제소비동향	2,000,000	2,000,000			400,000	400,000	-		경제소비동향연구
공동연구와 네트워크	40,000,000	40,000,000		5.0%	28,600,000	28,600,000	-	4.5%	
장학 및 후원	40,000,000	40,000,000			28,600,000	28,600,000	-		협동조합 관련 단체, 시민단체 지원, 인력양성 후원, 거점 대학 공동 콜로키움 후원
지적재산의 보급	16,000,000	16,000,000		2.0%	4,538,010	4,538,010	-	0.7%	
포럼	12,000,000	12,000,000		1.5%	1,538,010	1,538,010	-	0.2%	포럼 2회, ICA 컨퍼런스
아카이빙교육	1,000,000	1,000,000			-	-	-		2회. 교통비, 간식비, 대관료 등
협동조합논문공모전	3,000,000	3,000,000		0.4%	3,000,000	3,000,000	-	0.5%	연구지원 1편 계획
목적사업급여	190,000,000	190,000,000		23.9%	190,953,050	190,953,050	-	30.2%	이사장, 상임이사, 연구원, 아카비스트
목적사업임차료	20,463,300	20,463,300		2.6%	20,463,300	20,463,300	-	3.2%	
목적사업보험료	120,000	120,000			111,519	111,519	-		
목적사업지급수수료	11,583,000	11,583,000			11,583,000	11,583,000	-		
목적사업수도광열비	2,600,000	2,600,000		0.3%	2,464,751	2,464,751	-	0.4%	
분배비용	306,400,000	306,400,000		38.5%	172,455,030	172,455,030	-	27.3%	
인력비용	190,000,000	190,000,000		23.9%	190,953,050	190,953,050	-	30.2%	
시설비용	20,463,300	20,463,300		2.6%	20,463,300	20,463,300	-	3.2%	
기타비용	42,600,000	4,600,000	38,000,000	5.4%	42,374,830	2,864,751	39,510,079	6.7%	
일반관리비용	222,019,108	184,263,308	37,755,800	27.9%	192,132,065	171,475,951	20,656,114	30.4%	
일반관리급여	110,000,000	81,500,000	28,500,000	13.8%	101,569,896	85,009,896	16,560,000	16.1%	사무인력, 상여금 등
퇴직급여충당금	23,000,000	23,000,000		2.9%	23,646,092	23,646,092	-	3.7%	인력 7명
복리후생비	28,000,000	28,000,000		3.5%	27,046,860	27,046,860	-	4.3%	4대 보험 등
직원교육훈련비	6,000,000	6,000,000		0.8%	1,948,406	1,948,406	-	0.3%	직원워크숍, 직원교육 지원
일반관리임차료	7,520,700	5,596,800	1,923,900	0.9%	7,520,700	5,596,800	1,923,900	1.2%	사무실 임차료, 복합기 렌탈비
일반관리보험료	40,000	30,000	10,000	0.0%	40,986	30,501	10,485	0.0%	화재보험
고정자산감가상각비	12,048,408	12,048,408		1.5%	11,708,838	11,708,838	-	1.9%	사무실 리모델링 감가상각(2017.2-), 청동SW감가(2020.7-), 월1,004,034원*12월
여비교통비	1,900,000	800,000	1,100,000	0.2%	1,107,260	1,053,360	53,900	0.2%	직원 출장, 외근시 교통비 등
업무추진비	2,000,000	2,000,000		0.3%	2,751,330	2,751,330	-	0.4%	명절 선물, 부조금, 감사패, 회한 등
통신비	860,000	510,000	350,000	0.1%	916,570	789,470	127,100	0.1%	SK브로드밴드 인터넷 전화, 우편요금 등
제세공과금	500,000	500,000		0.1%	194,740	194,740	-	0.0%	지방세, 등록면허세, 주민세 등
일반관리지급수수료	21,950,000	16,378,100	5,571,900	2.8%	6,993,254	5,244,254	1,749,000	1.1%	세금, C8관리비용비, 콕뱅크수수료, CMG수수료, 아카데미용역 회계위탁수수료(관리랑, 165만원*9월)
일반관리수도광열비	1,000,000	700,000	300,000	0.1%	905,849	674,120	231,729	0.1%	전기세, 수도세 등 생활요금
도서간행물구입비	2,000,000	2,000,000		0.3%	966,910	966,910	-	0.2%	도서구입, 정기구독료, 명함제작비 등
잡비	-	-	-		550,000	550,000	-	0.1%	
소모품비	2,000,000	2,000,000		0.3%	1,839,704	1,839,704	-	0.3%	사무실과 열람실 비품, 노트북 구입 및 수리 등
회의비	3,000,000	3,000,000		0.4%	2,416,670	2,416,670	-	0.4%	이사회, 내외부 회의 다과 및 식비 등
수선비	200,000	200,000		0.0%	8,000	8,000	-	0.0%	PC, 노트북, 사무기기 수리 등
가지급비용	-	-	-	0.0%	-	-	-	0.0%	

인력비용	167,000,000	138,500,000	28,500,000	21.0%	154,211,254	137,651,254	16,560,000	24.4%
시설비용	19,609,108	17,675,208	1,933,900	2.5%	19,270,524	17,336,139	1,934,385	3.0%
기타비용	35,410,000	28,088,100	7,321,900	4.5%	18,100,287	15,938,558	2,161,729	2.9%
모금비용	2,000,000	2,000,000	-	0.3%	2,159,830	2,084,150	75,680	0.3%
홍보비	2,000,000	2,000,000	-	-	2,159,830	2,084,150	75,680	결렴원고료,뿌리오문자비용,외부홍보비용
기타비용	2,000,000	2,000,000	-	-	2,159,830	2,084,150	75,680	
고유목적사업전입액	-	-	-	-	-	-	-	-
사업외비용	-	-	-	-	-	-	-	-
전기오류수정손실	-	-	-	-	-	-	-	-
자산처분손실	-	-	-	-	-	-	-	-
법인세차감전 당기운영이익(손실)	-	45,527,800	- 45,527,800	-	21,172,363	- 23,737,339	2,564,976	
법인세비용	-	-	-	-	-	-	-	-
당기운영이익(손실)	-	45,527,800	- 45,527,800	-	21,172,363	- 23,737,339	2,564,97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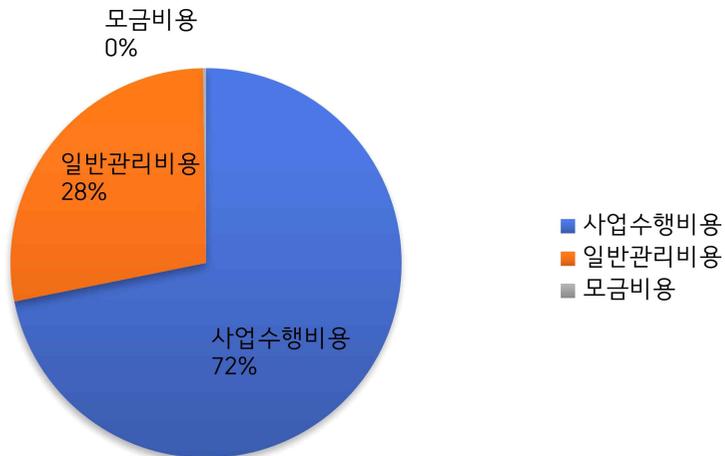
2021 현금 흐름 예상

1. 기초 현금	1,325,321,707
<hr/>	
2.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	
당기손익	-
감가상각충당금	12,048,408
퇴직급여충당금	23,000,000
영업 현금 흐름	35,048,408
<hr/>	
3.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	
투자/출자	-
시설/비품	-
건축물(홈페이지등)	-
<hr/>	
4.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	
증여	-
차입	-
상환	-
<hr/>	
5. 기말 현금	1,360,370,115

2021예산(수입)(795,185,408원)



2021예산(지출)(795,185,408원)



VI. (재)아이쿱협동조합연구소 함께 하는 사람들

1. 임원

1) 이사

이름	소속 및 직책	이름	소속 및 직책
한금희	(재)아이쿱협동조합연구소 이사장	최은주	소장 경영학 박사 · 국제공인회계사
김영옥	오륙도아이쿱 이사장	윤종규	(주)쿠팡로지스틱스 CEO
이미옥	독립연구자	임사랑	무진아이쿱 이사장
유정아	사회적협동조합 사람과 공간 전무이사		

2) 감사

회계감사	장선직	한솔회계세무사무소 대표
업무감사	김활신	성공회대학교 일반대학원 협동조합경영학과 박사과정

2. 고문

이정주(전 아이쿱협동조합연구소 이사장)

정병호(전 아이쿱협동조합연구소 소장)

3. 생협평론 편집위원회

- 편집위원장 : 김찬호 (성공회대학교 외래교수, 문화인류학)
- 편집위원 : 강윤경(세이프넷지원센터 경영지원팀 팀장), 김아영(전주아이쿱생협 조합원), 김현숙(사천아이쿱생협 조합원), 이은정(아이쿱협동조합연구소 객원연구원), 조현경(한겨레사회경제연구원 시민경제센터장), 주세운(동작신협 과장)
- 코디네이터 : 김윤민(아이쿱협동조합연구소 선임 사원)

4. 객원연구원

염찬희(객원연구위원, 성공회대 겸임교수), 이은정(객원연구원, 성공회대 협동조합경영학과 박사과정)

5. 사무국

최은주(소장), 신창섭(수석 사원), 김윤민(선임 사원), 이향숙(선임연구원), 지민진(선임연구원), 최장선(아키비스트), 이예림(인턴)

VII. (재)아이쿱협동조합연구소 정관

제정: 2009년3월10일

개정: 2012년3월20일

개정: 2012년7월25일

개정: 2014년3월13일

개정: 2017년1월25일

제 1 장 총칙

제 1 조 (명칭) 이 법인은 “재단법인 아이쿱협동조합연구소”(이하 “법인”)라 칭한다.

제 2 조 (사무소의 소재지) 이 법인의 주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둔다.

제 3 조 (목적) 이 법인은 민법 제32조에 의거한 비영리 법인으로서 협동조합과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하 ‘생협’)의 확산과 발전을 위한 연구와 장학사업 그리고 학술과 교육활동 등에 대한 지원을 통해 우리 사회에 협동하는 삶이 뿌리내리는 데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4 조 (목적사업)

① 이 법인의 주요 사업은 각 호와 같다.

1. 협동조합과 생협의 발전을 위한 연구, 장학 사업
2. 학술과 교육 활동 지원
3. 협동조합과 생협에 관한 정보, 자료, 데이터 등의 수집과 정비, 제공, 열람 사업
법률 상담 및 지원
4. 법률 상담 및 지원
5. 기타 법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부대사업

제 5 조 (법인공여이익의 수혜자)

① 이 법인이 제4조에 규정한 목적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그 수혜자에게 제공하는 이익은 무상으로 한다. 다만, 그 실비를 수혜자에게 부담시키는 수익사업에 대해서는 이사회 심의의결을 받는다.

② 이 법인의 목적사업으로 제공하는 이익은 특히 그 목적을 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혜자의 출생지, 출신학교, 직업, 성별, 연령 기타 사회적 신분에 따라 부당하게 차별되어서는 아니 된다.

제 2 장 조직 및 구성

제 6 조 (임원의 종류와 정수)

- ① 법인의 임원으로 이사와 감사를 둔다.
- ② 법인의 임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이사 : 6인 이상 15인 이하로 한다.
 2. 감사 : 2인으로 한다.

제 7 조 (임원의 임기)

- ① 이사와 감사의 임기는 2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 ② 임원이 사망, 사퇴, 해임 등으로 인한 결원 시, 보선으로 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 ③ 임원은 임기 만료 후라도 후임자가 취임할 때까지는 임원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제 8 조 (임원의 선임)

- ① 임원은 이사회에서 선출해 취임한다.
- ② 임원은 임기 중 꺾어진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보선하여야 한다.
- ③ 새로운 임원의 선출은 임기만료 1개월 전까지 하여야 한다.
- ④ 재단법인이 임원을 선출한 때에는 임원선임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법원에 등기를 마친 후 주무관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연임의 경우에는 제1호 및 제3호의 서류만을 첨부한다.
 1. 임원의 선출을 결의한 이사회 회의록 사본 1부
 2. 이력서 1부
 3. 취임승낙서 1부
- ⑤ 이사회 권한을 위임하거나, 결정한 사항을 일상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약간 명의 상근

임원을 선임할 수 있다.

제 9 조 (임원의 결격사유)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법인의 임원이 될 수 없다.
 - 1. 미성년자
 - 2.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3.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② 임원이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자격을 당연히 상실한다.

제 10 조 (이사장의 선출과 임기)

- ① 이사장은 이사회에서 이사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자의 과반수 찬성으로 선출한다.
- ② 이사장의 임기는 이사로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 11 조 (이사장 및 이사의 직무)

- ① 이사장은 이 법인을 대표하고 총괄하며, 이사회 의 의장이 된다.
- ②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이 법인의 주요 사항을 심의 의결하며 이사장과 협력하여 제4조의 목적사업을 수행하도록 노력한다.
- ③ 소장은 이사회 의 동의를 얻어 이사장이 임면하며, 소장으로 임명된 이는 당연직 이사로서 이사회 의 구성원이 된다.

제 12 조 (이사장의 직무대행)

- ① 이사장이 사망, 해임, 사퇴 등의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이사 중 최연장자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 ② 이사장이 결위되었을 때에는 이사 중 최연장자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장 직무대행자는 15일 이내에 이사장 선출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 13 조 (감사의 직무) 감사는 1인 이상이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 1. 법인의 재산 상황을 감시하는 일
- 2. 이사회 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시하는 일
- 3. 제1항 및 제2항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발견될 때는 이사회 에 그 시정을 요구

하거나 주무관청에 보고하는 일

4. 제3항의 보고를 위하여 이사회에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는 일
6. 이사회에 회의록에 기명날인하는 일

제 14조 (임원의 해임)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해임할 수 있다.

1. 법인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2. 임원간의 분쟁·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
3. 법인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4. 법인의 명예나 위신을 손상하거나 품위를 훼손하는 행위
5. 민법 및 소관 부처의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 따른 감독상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때

제 3 장 이사회

제 15 조(이사회에의 구성) 이 법인의 최고의결기관으로 이사회를 두며 이사장, 이사로 구성한다.

제 16 조 (이사회에의 기능)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하여 결정한다.

1. 이 법인의 예산, 결산, 차입금 및 자산의 취득 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
2. 정관의 개정에 관한 사항
3. 법인의 해산에 관한 사항
4. 임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5. 사업에 관한 사항
6. 이 정관의 규정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7. 기타 이 법인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이사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 17 조 (의결정족수)

- ①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한다.
- ② 이사회에의 의결은 출석 이사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③ 정관의 개정이나 본 재단법인의 해산 그리고 기본재산의 처분 등과 같은 특별 결의는 재적

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18 조 (의결제척사유) 이사장 또는 이사가 다음 각 호의 1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 ① 임원의 취임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 ②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법인의 이해가 상반될 때

제 19 조 (회기) 이사회는 2개월에 1회 이상 개최하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수시로 개최한다.

제 20 조 (이사회 소집)

- ① 이사회는 이사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②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회의 7일 전에 회의 목적을 명시하여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 전원이 집회하고 또 그 전원이 이사회를 소집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 21 조 (이사회 소집의 특례)

- ①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 1. 재적이사 과반수로부터 회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 2. 제13조 4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할 때
- ② 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써 이 정관 제19조, 제20조에 따른 이사회와 제1항의 각호에 의한 이사회 소집을 하지 않을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 ③ 제2항에 의한 이사회 운영은 출석 이사 중에서 최연장자의 사회 아래 그 회의의 의장을 선출하여야 한다.

제 22 조(이사회 회의록)

- ① 이사회 의사에 관하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 ② 회의록에는 의사의 경과, 요령 및 결과를 기재하고, 의장과 참석이사가 기명날인해야 한다.
- ③ 이사장은 회의록을 법인의 주된 사무소에 갖추어 놓아야 한다.

제 4 장 재산 및 회계

제 23 조 (재산의 구분)

- ① 이 법인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 ②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재산은 기본재산으로 하고 기본재산 이외의 일체의 재산은 보통재산으로 한다.
 - 1. 설립 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
 - 2. 기부에 의하거나 기타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 다만, 기부목적에 비추어 기본재산으로 하기 곤란하여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은 것은 예외로 한다.
 - 3. 보통재산 중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한 재산
 - 4. 결산잉여금 중에 이사회가 결의를 하여 기본재산으로 적립한 금액
- ③ 이 법인의 기본재산은 별지목록 1과 같다.

제 24 조 (재산의 관리)

- ① 제23조 제3항의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하거나 담보로 제공하거나 의무부담 또는 권리의 포기를 하고자 할 때에는 제17조 제3항과 같이 이사회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② 법인이 매수, 기부, 채납, 기타 방법으로 재산을 취득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법인의 재산으로 편입 조치하여야 한다.
- ③ 기본재산 및 보통재산의 유지, 보존 및 기타 관리(제1항 및 제2항의 경우를 제외한다)에 관하여는 이사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④ 기본재산의 목록이나 평가액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별지목록을 변경하여 정관 변경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 25 조 (재산의 평가) 이 법인의 모든 재산의 평가는 취득 당시의 시가에 의한다. 다만, 재평가를 실시한 재산은 재평가액으로 한다.

제 26 조 (재산의 공개) 이 법인의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은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

제 27 조 (경비의 조달방법 등) 이 법인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기본재산의 과실, 사업수익 및 기타 수입으로 조달한다.

제 28 조 (회계의 구분)

- ① 이 법인의 회계는 목적사업회계와 수익사업회계로 구분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 과세대상이 되는 수익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은 수익사업회계로 계리하고 기타의 수익과 비용은 목적사업회계로 계리한다.

③ 제2항의 경우에 목적사업회계와 수익사업회계로 구분하기 곤란한 비용은 공통비용 배분에 관한 법인세에 관한 법령의 규정을 준용하여 배분한다.

제 29 조 (회계원칙) 이 법인의 회계는 사업의 경영 성과와 수지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하여 모든 회계거래를 발생의 사실에 의하여 기업회계의 원칙에 따라 처리한다.

제 30 조 (회계연도) 이 법인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 31 조 (임원 보수 제한 등) 상근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되 상근하지 않는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교통비, 식사, 숙박 등과 같은 실비의 보상은 예외로 하며 별도의 실비 보상 규정에 의거 지급한다.

제 32 조 (임원 등에 대한 재산대여 금지)

① 이 법인의 재산은 이 법인과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관계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정당한 대가 없이 이를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1. 이 법인의 설립자

2. 이 법인의 임원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와 민법 제777조에서 규정한 친족관계에 있는 자

4.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임원으로 있는 다른 법인

②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의 경우에도 법인의 목적에 비추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정당한 대가없이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제 33 조 (사업계획과 예산편성 등) 이사장은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당해 연도의 사업계획과 수지예산서를 편성하여 이사회에 결의를 거쳐 집행한다.

제 34 조 (감사) 이사장은 매 회계연도 결산 및 사업실적 보고서를 감사 1인 이상으로부터 감사를 받아 이사회에 승인을 받은 후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 5 장 사무국 및 부설기관

제 35 조 (구성)

- ① 이 법인의 고유 업무 및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연구소 사무국 및 부설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
- ② 소장은 연구소 사무국 및 부설기관을 운영하기에 적합한 권한을 이사회에서 부여받고 운영 책임을 진다.
- ③ 사무국의 직제 및 운영, 직원의 임용 및 보수 등에 관한 사항은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제 6 장 보칙

제 36 조 (정관의 변경) 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재적이사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 37 조 (해산) 이 법인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재적이사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주무관청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 38 조 (잔여재산의 귀속) 잔여재산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 귀속한다.

제 39 조 (시행세칙) 이 정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세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 1 조 (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등기를 필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 2 조 (준 용) 이 정관에 기재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의 규정에 따른다.

제 3 조 (경과조치) 발기인총회에서 선임된 임원은 이 정관에 따라 선임된 것으로 본다.

제 4 조 (임원) 창립 당시 임원과 임기는 별첨과 같다.

[별지.1]

기본재산 목록

2020.12.31. 현재

○ 기본재산 총괄표

(단위 : 원)

	재산구분	수량	평가액	비 고
1	정기예금	-	200,000,000	수익용 기본재산 (만기일:2021.4.4.)
2	정기예금	-	50,000,000	수익용 기본재산 (만기일:2021.4.4.)
3	정기예금	-	50,000,000	수익용 기본재산 (만기일:2023.11.9.)
4	정기예금	-	200,000,000	수익용 기본재산 (만기일:2023.5.24)
총계			500,000,000	

(재)아이쿱협동조합연구소

VIII. (재)아이쿱협동조합연구소 제 운영규정

(재)아이쿱협동조합연구소 운영규정

제정: 2012년 3월 20일
개정: 2012년 9월 21일
개정: 2014년 3월 13일
개정: 2016년 1월 19일
개정: 2017년 7월 14일
개정: 2018년 3월 7일
개정: 2018년 7월 13일

제 1 조 (목적) 이 규정은 재단법인 아이쿱협동조합연구소 정관에 의거하여 이 연구소의 운영 전반에 관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연구소 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적용) 이 법인의 정관과 제 규정 및 취업규칙, 기타 법령이 따로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른다.

제 3 조 (이사장의 직무)

- ① 이사장은 이 연구소 정관 제11조①에 의거하여 이사회를 주관하고 대외적으로 이 연구소를 대표하는 활동을 수행한다.
- ②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이사장의 직무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가 정한다.

제 4 조 (소장의 직무)

- ① 소장은 이 연구소 정관 제11조③에 의거하여 연구소 운영을 관장한다.
- ② 소장은 이 연구소의 발전을 위하여 각종 위원회 및 연구위원 등을 별도로 구성, 운영할 수 있으며 해당 위원을 위촉하고 그 활동을 주관한다.
- ③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소장의 직무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가 정한다.
- ④ 소장의 처우 등에 관한 사항은 본 연구소의 취업규칙에 준하고 별도의 계약에 따라 정한다.

다.

제 5 조 (상근 임원 등)

- ① 이 연구소는 본 법인의 목적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임원중에 상근 임원 등을 둘 수 있으며 이사회의 동의를 받아 이사장이 임명한다.
- ② 상근 임원 등의 처우 등에 관한 사항은 취업규칙에 준하고 별도의 계약에 따라 정한다.
- ③ 이 규정과 임원고용계약에서 정하지 않은 상근 임원 등의 직무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가 정한다.

제 6 조 (연구위원 등) 이 연구소는 본 법인의 목적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연구위원 등을 둘 수 있으며 연구위원 등은 소장이 위촉하고 해촉한다.

제 7 조 (고문)

- ① 이 연구소는 본 법인의 목적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약간 명의 고문을 둘 수 있으며 고문은 이사회 토론을 거쳐서 이사장이 위촉하고 해촉한다.
- ② 고문은 비상임으로 활동하며 이사회 의결에 따라 소정의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
- ③ 고문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이사장의 재위촉으로 연임할 수 있다.

제 8 조 (위원회) 이 연구소는 본 법인의 목적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편집위원회 등을 둘 수 있으며 구성은 소장이 위촉하고 해촉한다.

제 9 조 (사무국) 이 연구소의 사무국은 소장, 직원으로 구성한다.

- ① 소장은 연구소의 운영 업무를 지휘, 감독하며 경영을 책임진다.
- ② 소장은 직원 중에서 사무국 실무를 총괄하는 사무국장을 임명할 수 있다.
- ③ 직원의 채용과 인사 규정에 관한 사항은 본 연구소의 취업 규칙 및 제 규정에 따른다.

제 10 조 (연구원) 이 연구소의 소장은 연구소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연구원을 둘 수 있으며 연구원의 구분과 역할은 다음과 같다.

- ① 상근연구원은 이 연구소의 조사, 연구, 교육, 출판 사업을 수행한다.
- ② 연구원의 직무 범위 및 직무 성격에 따라 선임연구원, 책임연구원을 둘 수 있다. 선임연구원과 책임연구원의 대우에 관해서는 별도로 정한다.
- ③ 연구 과제에 특화하여 비상근 형태로 협동연구원을 둘 수 있다.

제 11 조 (임용권)

- ① 직원은 취업규칙에 따라 채용하며 소장이 임용한다.
- ② 상근임원 등은 소장이 추천하며 이사장이 임면한다.

제 12 조 (회계 및 재정 관리)

- ① 이 연구소의 회계 및 재정 관리 업무는 정관에 따르며 공익법인 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운영한다.
- ② ①과 별도로 회계 및 재정 관리를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본 법인 이사회에서 정한다.

제 13 조 (보칙)

- ① 이 규정의 제정 및 개정은 정관에 명시된 이사회 의결에 따른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12년 8월 1일부터 소급적용하여 시행하기로 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개정일로부터 시행하기로 한다.

(재)아이쿱협동조합연구소 이사회 운영규정

제정: 2014년 5월 13일

개정: 2016년 5월 12일

개정: 2018년 3월 7일

개정: 2018년 11월 16일

제 1 조 (목적) 이 규정은 「정관」 제3장에 따라 이사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적용범위) 이사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법령과 정관에서 별도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 3 조 (임무) 이사회는 「정관」 및 이 규정에 기초하여 법인의 사업 방향, 방침과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제 4 조 (의안상정절차) 이사회에 부의하는 의안의 상정은 원칙적으로 이사장의 결재를 받아 소장이 행한다.

제 5 조 (회의 통지)

① 소장, 또는 소장의 위임을 받은 자는 「정관」 제20조에 의거하여 적어도 회의 7일 전에 이사회 성원에게 회의 개최 일정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통지에는 일시, 장소 및 의안 제목 등을 기재하며, 통지방법은 인터넷, e-mail, 우편 등으로 할 수 있다.

③ 이사회 회의자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사회 개최 3일 전까지 이사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 6 조 (의안 설명 및 의견 청취)

① 이사회에 제출된 안건은 소장 또는 소장의 위임을 받은 자가 설명한다.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직원을 출석시켜 의안에 관한 대리 설명이나 의견 등을 진술할 수 있다.

② 이사회는 의안 심리에 필요한 경우 전문가를 참석케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 7 조 (보고의무) 의장 또는 소장은 이사회에 다음 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 ① 사업 집행 현황
- ② 이사회에서 결정한 사항의 집행 현황
- ③ 그 외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 8 조 (의결사항의 통보) 소장 또는 소장의 위임을 받은 자는 이사회 회의록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개최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사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 9 조 (재심)

- ① 이사장은 이사회 의결사항 중 집행 상의 중대한 문제점이 있거나 발견된 경우 그 집행을 유보토록 하고, 그 이유를 명기하여 이사회에 재심을 요구할 수 있다.
- ② 이사장은 제1항의 경우 지체 없이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제 10 조 (긴급 이사회 개최) 「정관」 제21조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이사장이 긴급 사항이라고 판단했을 때에는 온라인 이사회를 개최할 수 있다.

제 11 조 (업무수행 실비지급) 비상임이사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회의 등에 참석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여비 및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료수집에 소요되는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1. 「정관」 제20조에 따라 개최되는 이사회
2. 이사로서의 업무수행을 위한 회의 참여 또는 활동
3. 기타 소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 12 조 (이사의 연임기한)

- ① 「정관」 제7조에 의거하여 이사의 임기는 2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 ② 이사의 연임기한은 3회까지로 정한다. 다만, 이사회에서 특별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의결할 경우에는 기한을 명시하고 본 조항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 ③ 소장이 이사일 경우 소장은 ②항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

제13조 (이사장의 연임기한)

- ① 「정관」10조에 의거하여 선임된 이사장의 연임기한은 3회까지로 정한다.
- ② 이사장은 제12조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

제 14 조 (감사의 출석)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발표할 수 있다.

제 15 조 (기타 사항)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 중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정하고, 기타 사항에 대하여는 일반관례를 따른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14년 5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개정일로부터 시행한다.

임원 선거 규정

제정: 2020년 6월 25일

제1조 (목적) 이 규약은 정관 제8조에 의하여 본 법인의 임원 선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임원의 선임) 임원은 이사회에서 선출해 취임한다.

제3조 (선거의 시기) ① 임원의 결위가 발생한 경우 결위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보선하여야 한다.

② 신임 임원의 선출은 전임 임원의 임기만료 1개월 전까지 하여야 한다.

제4조 (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법인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미성년자
2.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3.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② 임원이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자격을 당연히 상실한다.

제5조 (임원후보자의 추천) ① 이사와 소장은 선임하여야 할 임원의 정수에 해당하는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다.

② 이사회는 필요시 임원후보자의 자격을 정하여 공모를 통해 후보자를 추천받을 수 있다.

제6조 (이중추천의 금지) 이사와 소장은 후보자 각 1인을 초과하여 추천할 수 없으며, 이중추천된 후보자에 대한 추천은 무효로 한다.

제7조 (등록) ① 후보자로 추천된 자는 이사회에서 지정한 기한까지 후보 등록을 해야 한다.

② 후보자가 등록할 때에 임원후보신청서를 제출한다. 단, 후보자가 아이쿱생협 조합원일 경우

소속 조합의 추천서를 첨부한다.

③ 연임의 경우에는 연임의견서를 제출한다.

제8조 (등록 접수 및 심사) 이사장은 후보자 등록신청이 있을 때에는 자격과 구비서류의 완비 여부를 심사하여 자격이 없는 자에 대해서는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 (등록의 무효) 후보자 등록 후에 후보자의 피선거권이 없는 것이 발견되거나, 제7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등록된 때에는 그 등록은 무효로 한다.

제10조 (선거의 방법) ① 선거는 이사회에서 정한 방법으로 시행한다.

② 표결시에는 거수, 기립 또는 투표 등의 방법에 의하되, 후보가 복수로 추천되어 경선을 하게 된 경우 무기명 비밀투표로 표결한다.

제11조 (당선인의 선포와 확정) ① 당선인이 결정된 때에는 의장은 당해 이사회에서 당선을 선포한다.

② 당선된 임원은 임원취임승낙서를 정해진 기일 내에 법인에 제출한다.

제12조 (임기개시일) ① 임기만료로 인한 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임원의 임기개시일은 전임자의 임기만료일로 한다.

② 제1항 이외의 경우의 임기개시일은 당선 선포일로 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추천서			
입후보자 성명		입후보자 연락처	
추천 사유			
<p>위 사람을 (재)아이쿱협동조합연구소의 이사 후보로 추천합니다.</p> <p>이사 : (서명)</p> <p>년 월 일</p> <p>(재)아이쿱협동조합연구소 이사회 귀중</p>			

추천서			
입후보자 성명		입후보자 연락처	
추천 사유			
<p>위 사람을 (재)아이쿱협동조합연구소의 이사 후보로 추천합니다.</p> <p>조합명 : 대표자 : (직인)</p> <p>년 월 일</p> <p>(재)아이쿱협동조합연구소 이사회 귀중</p>			

연임 의견서			
이사 성명		연락처	
연임에 대한 포부를 간략히 서술			
<p>위와 같이 의견서를 제출합니다.</p> <p>이사 : (서명)</p> <p>년 월 일</p> <p>(재)아이쿱협동조합연구소 이사장 귀중</p>			

퇴직금이 없는 임원.연구원 등의 위로금 규정

제정 : 2017년 11월 7일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장기간 근속하더라도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는 이사장, 연구원 등의 복지를 위하여 위로금을 지급하는데 있어 기준을 정하고자 한다.

제2조(지급기준)

근속기간과 상근 여부, 공헌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한다.

- ① 2년 이상 장기 근속한 임원, 연구원 등에게 지급한다.
- ② 대내외 활동을 통해 연구소의 위상에 끼친 공헌, 연구성과의 양과 질, 기타 요소로 끼친 공헌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한다.

제3조(지급액)

- ① 지급액은 퇴직 시점의 월활동비, 월급여의 300%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 ② 지급액은 소장이 결정한다.

제4조(지급기한)

해당 직을 그만둔 시점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지급한다.

(재)아이쿱협동조합연구소 직원대출규정

제정: 2014년 9월 16일

개정: 2017년 9월 5일

제 1 조 (목적) 이 규정은 (재)아이쿱협동조합연구소의 직원들에게 기금 및 퇴직금 한도 내에서 대출의 방식으로 자금을 지원함으로써 직원의 자금유동성을 활성화하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 2 조 (대출대상) (재)아이쿱협동조합연구소의 직원을 대상으로 한다.

제 3 조 (대출한도)

- ① 기금담보 - 대출시점 차입기금납입금액의 90% 이내
- ② 퇴직금담보 - 대출시점 퇴직적립금액의 90% 이내
- ③ 대출금의 최소금액은 100만원으로하고 10만원 단위로 신청한다.

제 4 조 (대출금리)

- ① 차입기금담보 - 본인이 납입한 차입기금 이율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 ② 퇴직금담보 - 변동이율 적용(기준 : 차입기금의 금리) 변경시 경영진 승인 후 직원에게 공시한다.

제 5 조 (대출신청)

- ① 대출심사는 연구소의 경영진이 결정한다.
- ② 대출신청자는 대출신청서'와 '상환계획서'를 첨부하여 기안후 경영진의 결재를 득 한다.
- ③ '대출금 신청서' 를 자필서명 후 회계담당자에게 제출한다.

제 6 조 (대출상환)

- ① 대출신청자는 상환계획서에 맞게 대출금액을 이자와 함께 상환한다. 상환시기는 아래와 같이 정한다.

1. 500만원 미만 : 1년거치후 1년내 상환(최대2년)
2. 500만원 이상 ~ 1,000만원 미만 : 1년거치후 2년내 상환(최대3년)
3. 1,000만원 이상 : 1년거치후 3년내 상환(최대4년)

(단, 조기상환에 대한 수수료는 없음)

② 퇴사 시 대출금 및 대출이자에 한하여 적법한 방법을 통하여 강제 집행할 수 있다.

③ 이자는 매년 말 정산하고 급여에서 공제한다.

1. 대출일이 연말기준 1년미만인 경우
 - 대출일 ~ 20xx.12.31까지 정산기간
2. 대출일이 연말기준 1년이상인 경우
 - 20xx.1.1~20xx.12.31까지 정산기간

제 7 조 (시행일)

2012년 9월 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소급적용) 본 규정의 제정 이전에 발생한 직원대출에 대해서도 소급하여 적용한다.

생협활동가 장학기금 운영 규정

제정 : 2019년 3월 22일

개정 : 2019년 9월 5일

개정 : 2020년 4월 23일

제 1 조 (목적) 이 규정은 재단법인 아이쿱협동조합연구소의 정관 제4조 ①의 1에서 규정한 장학사업으로서, 배움을 통한 연구와 실천의 결합으로 조합원과 사회에 봉사하는 생협활동가를 양성하기 위한 「생협활동가 장학기금」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적용범위) 관련 법령과 정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 3 조 (정의)

- ① 생협활동가는 아이쿱생협을 비롯하여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근거한 생협법인에서 자원봉사에 기초한 조합원 활동을 2년 이상 수행하고 생협의 임원직으로 재직 중이거나 재직했던 자를 말한다.
- ② 장학기금은 학업지원을 위해 학자금의 일정액을 급부할 목적으로 사용하는 기금을 말한다.
- ③ 생협활동가 장학기금(이하 기금)은 협동조합 인재양성의 목적으로 (재)아이쿱협동조합연구소에서 생협활동가의 학업지원을 위해 급부하는 기금을 말한다.
- ④ 이 기금의 급부대상자를 '생협활동가 장학기금 수혜자'(약칭 활동가 장학생)이라 부르고 급부되는 장학금을 '생협 장학금'이라 한다.

제 4 조 (기금 규모) ① 이 기금의 규모는 매년 3천만 원을 한도로 한다.

- ② 이 기금의 증액, 또는 감액, 폐지에 관해서는 (재)아이쿱협동조합연구소의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 ③ ②에 따라 기금을 감액, 폐지할 경우 현행 장학기금 수혜자에게 약정한 생협 장학금을 감액하거나 급부를 중지해서는 아니 된다.

제 5 조 (급부 정원 및 장학금액)

- ① 생협활동가 장학기금 수혜자는 **매회 최대 10명**이다.
- ② 생협장학금 급부액은 1인당 연 300만 원이고 신청횟수는 연 2회이며 급부기간은 **최대 2년 또는 4학기**까지이다.

제 6 조 (장학기금운영위원회)

- ① 기금 운영에 관한 제반 사항을 논의, 집행하기 위하여 아이쿱협동조합연구소 내에 장학기금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한다.
- ② 장학기금운영위원회는 아이쿱협동조합연구소 이사회, 아이쿱생협사업연합회 이사회, 한국사회적경제씨앗재단 이사회에서 각 1인씩 추천을 받아 구성하며 당연직으로 아이쿱협동조합연구소 소장 및 사무국 1인(간사역)을 포함하여 5명으로 구성한다.
- ③ 장학기금운영위원회의 의사결정은 다수결이며 위원장은 위원들의 호선으로 선임한다.
- ④ 장학기금 수혜자 선정 및 자격박탈에 관한 결정은 장학기금운영위원회에서 행한다.

제 7 조 (장학금 수혜 대상) 생협 장학금의 급부대상이 되기 위해선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 ①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이로서 소속 생협의 경력증명서와 지도 교수, 또는 지도 책임자의 추천서를 받은 자
 - 1. 제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자
 - 2. 협동조합 및 사회적경제에 관련된 국내·국외 대학이나 대학원 진학 등의 학업 수행하고 있는 자
 - 3. 비영리시민사회·지역재생·생활정치에 관련된 국내·국외 대학원을 진학하여 협동조합 및 사회적경제 관련 주제의 연구를 수행하고 있는 자
 - 4. 2, 3에서 열거한 주제와 관련된 해외 유학 (1개월의 단기유학 포함)
- ② 그 외 장학기금운영위원회에서 특별급부대상으로 선정된 자

제 8 조 (심사방법) 장학기금운영위원회는 심사를 통해 생협 장학금의 수혜대상자를 선정한다. 심사는 신청자의 활동경력과 평판, 실천의 지속성 및 공헌도, 연구 및 배움 주제의 중요도와 역량 등을 기준으로 심사하며, 구체적인 심사기준과 절차에 대해서는 별도의 지침으로 정한다.

제 9 조 (보고 의무 등)

- ① 장학기금운영위원회는 이 규정에 의하여 선발된 장학생에게 장학금 지급 목적의 범위 내에서 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
- ② 학기 도중 학업을 중단하거나 자퇴했을 경우에는 늦어도 1주일 이내에 기금운영위원회에 학업 중단 사유와 함께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 ③ 1,2항의 의무를 행하지 않는 경우, 장학기금운영위원회는 장학금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

제 10 조(장학금 수혜자격 박탈)

- ① 장학기금운영위원회가 장학생이 이 기금의 명예를 실추시키거나, 사회의 통념상 비윤리적 이거나 반사회적인 행위로 물의를 일으켰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장학금 급부를 중단하고 장학금 수혜자격을 영구 박탈할 수 있다.
- ② 장학생이 신청서류를 허위로 작성하였거나 장학금을 본 목적이 아닌 다른 용도로 유용했을 때에는 장학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청구과정에서 발생하는 경비는 해당 장학생이 부담해야 한다.
- ③ 장학기금운영위원회는 ①, ②의 사실을 확인했을 때 해당 장학생에게 소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2회 이상 소명기회에 응하지 않을 시에는 장학금 급부 중단, 장학생 자격 영구 박탈, 장학금 반환청구 절차를 실행한다.

제 11 조(감사 및 실적 공개 의무) 이 기금의 운영에 관한 감사 및 실적 공개는 재단법인 아이쿱협동조합연구소의 감사를 통해 실행한다.

제 12 조 (기타 사항)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 중 필요한 사항은 재단법인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정하고, 기타 사항에 대하여는 일반관례를 따른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19년 3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이 규정의 개정일로부터 시행한다.

생협활동가 장학기금 심사기준과 절차에 대한 지침

제정 : 2020년 4월 23일

제1조(심사목적) 배움을 통한 연구와 실천의 결합으로 조합원과 사회에 봉사하는 생협활동가를 양성하기 위한 「생협활동가 장학기금」의 목적에 맞는 수혜 대상을 선정하기 위한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심사대상) 생협활동가장학기금 수혜 대상으로서 공고된 기한 내에 필요서류를 제출한 자를 대상으로 한다.

제3조(심사방법) ① 장학기금운영위원회가 심사를 진행하며 위원장은 위원들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들은 신청자들의 활동경력과 평판, 실천의 지속성 및 공헌도, 연구 및 배움 주제의 중요도와 역량 등을 기준으로 심사하며, 평가표(별첨 1)에 따라 평가한다.
③ 장학기금운영위원회는 필요시 신청자들에게 서류의 보완이나 추가 서류를 요청하거나 면접을 실시할 수 있다.
④ 심사기일은 신청 접수 마감 후 30일을 넘지 않도록하며, 필요시 30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⑤ 장학금의 지급은 심사 이후 장학기금운영위원회에서 정한 수혜 대상자들의 의무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최종 결정된다.

제4조(기타사항) 수혜 대상 심사와 관련하여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장학기금운영위원회 논의를 통해 정하고, 기타사항에 대하여는 일반관례를 따른다.

[별첨 1]

생협활동가 장학금 수혜 대상자 심사평가표

1. 신청자 이름:
2. 평가자명:
3. 평가일시:
4. 심사결과

* 서류의 보완, 추가 필요 서류, 면접이 필요한 경우 별지에 기재바랍니다.

평가기준 A: 매우 우수, B: 우수, C: 보통, D: 미흡, E: 매우 미흡					
평가항목	A(1.0)	B(0.9)	C(0.8)	D(0.7)	E(0.6)
활동경력과 평판(20) (과거의 자원봉사에 기초한 조합원 활동)					
실천의 지속성 및 공헌도(30) (현재와 미래의 자원봉사에 기초한 조합원 활동의 지속여부 및 연구와 실천의 결합으로 조합원과 사회에 공헌하는 정도와 가능성)					
연구 및 배움 주제의 중요도와 역량(30) (연구 및 배움 주제와 기금 목적과의 연관성 및 배움과 연구에 임하는 성실성 및 연구약량)					
성실과 형평성(20) (수혜 기간, 중복 지원 여부, 필요 서류 및 추가 서류 제출 성실성, 결격 사유의 해당 정도 등)					
평가점수(100)					

5. 심사의견, 서류 보완사항 또는 면접 필요성 여부(별지 사용)

6. 신청 서류

- 첫학기 필수서류 : 장학기금신청서, 학업(연구)계획서, 생협활동경력증명서, 교육기관의 추천서, 등록금 납입증명서
- 2~4학기 필수서류 : 장학기금신청서, 학업(연구)계획서, 생협활동경력증명서(유효기간 1년), 교육기관의 추천서(유효기간 1년), 등록금납입증명서, 재학증명서, 발표 및 연구 목록
- 선택서류 : 소속 생협 이사장의 추천서

(재)아이쿱협동조합연구소 연구 결과물 평가 및 자문에 관한 규정

제정 : 2019년 5월 17일

제1조 (평가목적) 아이쿱협동조합연구소는 소속 연구원들이 생산하는 연구보고서와 연구사업, 기타 모든 결과물의 품질을 높이고 이를 통해 연구소의 사명 수행력을 향상하기 위하여 평가 및 자문을 수행한다.

제2조 (평가대상) 이 규정에 따른 평가의 대상은 연구 및 조사보고서, 사업 결과보고서 등(이하 '연구'로 표현함) 당기에 소속 연구자가 수행한 모든 최종결과물이다.

제3조 (연구계획서 제출 및 승인) 연구자는 소장에게 연구계획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연구자는 매년 1월 말일까지 연구계획서를 제출한다. 연구자는 연구계획서에 연구질문과 내용을 기술하고 연구소의 사명과 중기계획과의 정합성 및 기대효과를 명확하게 제시한다.

(2) 연구계획서 승인: 소장은 연구계획서 수령 후 2주 이내에 연구계획서를 승인한다. 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자문위원회에 자문을 요청할 수 있다.

제4조 (결과보고서 제출) 연구자는 연구 종료 시점에 연구 등 수행기술서(별첨1)를 작성하여 결과물과 함께 평가위원회에 제출한다.

제5조 (평가위원회의 구성과 역할) 연구 결과물 평가를 위해 매년 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평가위원회는 연구자가 제출한 결과물을 평가한 후 2월 10일까지 평가표를 제출한다.

(1) 평가위원회는 외부 평가위원 1명 이상과 내부 평가위원(소장) 1명으로 구성하며, 외부 평가위원은 소장이 결정한다.

(2) 외부 평가위원은 연구자가 제출한 최종결과물을 평가표(별첨2)에 따라 평가한다. 내부 평가위원은 기획 의도, 관련 실무체계, 연구소에서 해당 연구가 가지는 가치 등을 고려하여 평가표에 따라 평가한다.

(3) 평가자는 총점 계산 시 연구 등 수행기술서에 제시된 투입시간을 가중치로 고려하여 연구자별로 총점(100점 만점)을 계산한다.

(4) 의견청취 및 자문: 평가위원회는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연구자의 의견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평가위원은 연구자들의 역량 강화를 위해 평가표에 조언을 기재할 수 있다.

제6조 (품질관리) 소장은 연구 결과물의 품질을 관리하기 위해 연구계획과 실행단계에서 보고와 자문을 권장한다.

(1) 보고와 자문을 위해 자문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자문위원회는 소장과 연구위원장, 동료 연구원으로 구성되며 연구주제에 정통한 외부 전문가를 1인 이상 포함한다.

(2) 연구자는 연구계획서가 승인된 후 1개월 이내에 소장에게 착수보고서를 제출하고 소장은 자문위원회를 소집하여 착수보고회를 진행한다. 착수보고서에는 연구계획서에서 제시한 연구질문과 내용, 연구소의 사명 및 중기계획과의 정합성, 기대효과 외에 연구방법과 연구 진행 절차를 포함하여 기술한다.

(3) 중간보고서 제출: 착수보고 이후 3개월마다 연구자는 소장에게 연구 중간보고서를 제출하고 소장은 제출일로부터 2주일 이내에 보고회를 개최한다. 다만 연구계획서에 별도의 일정이 있는 경우 그 일정을 따르며, 3개월 이내에 연구가 종료되는 경우 중간보고는 하지 않는다.

(4) 수시 자문: 연구자가 필요한 경우 자문기구에 자문을 요청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 의결 시점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2019년에는 3월부터 연구기간이 시작되는 것으로 본다.

[별첨 1] 연구수행기술서

연구(조사, 사업 등) 수행기술서			
제출자명			
제출일시		2019년 00월 00일	
연구(조사, 사업 등) 수행 내용			
기본사항	제목		
	결과물 형태	<input type="checkbox"/> 연구보고서 <input type="checkbox"/> 연구사업 결과보고서 <input type="checkbox"/> 기타()	
	과제 유형	<input type="checkbox"/> 기본연구과제 <input type="checkbox"/> 수탁과제 <input type="checkbox"/> 조사 <input type="checkbox"/> 기타()	
연구 참여자	구분	이름	소속
	연구책임자	000	
	공동연구자	000	
	연구보조원	000	
연구 진행 일정 및 방식, 소요 시간			
중간보고 일시/참여자/주요 자문 내용			
기타 자문회의 일시/참여자/주요 자문 내용			
과제 수행 특성 기술			
연구 진행 중 어려운 점 (개선이 필요한 사항 서술)			
기타			

[별첨 2-1] 연구 성과물 세부평가표

1. 연구 과제명:
2. 평가자명:
3. 평가일시:
4. 심사결과

* 표절/중복게재 등의 연구윤리는 별지의 지적사항에 기재 바랍니다.

평가기준 A: 매우 우수, B: 우수, C: 보통, D: 미흡, E: 매우 미흡					
평가항목	A(1.0)	B(0.9)	C(0.8)	D(0.7)	E(0.6)
연구질문의 명확성(20) (연구하고자 하는 질문이 명확하게 설정되어있는가?)					
연구의 창의성(10) (기존의 연구와 차별성이 있는가? 연속성이 필요한 연구의 경우에 연속성이 확보되었는가? 연구결과 분석과 대안제시, 시사점 도출 등에서 창의성을 발휘했는가?)					
연구방법의 적절성(10) (연구문제 해결을 위해 사용한 방법이 적절한가? 적합한 자료를 이용하고 있는가? 과제 규모(연구비 등)를 고려할 때 연구범위나 내용 등이 적절하게 설정되어 있는가? 연구목적 달성에 효과적인 방법인가?)					
논리성 및 가독성(20) (결과 해석이 논리적인가? 연구 결과가 전문성을 확보하면서도 이해하기 쉽게 작성되었는가? 문장의 정확성					

등으로 가독성이 확보되었는가?)					
연구목적의 달성도(15) (계획된 대로 연구가 성취되었는가?)					
학술적/정책적 기여도(25) (제시된 대안이 실효성이 있는가? 학문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가? 이 연구 결과가 아이쿱연구소와 세이프넷의 연구 수준 제고에 얼마나 기여할 것인가?)					
평가점수(100)					

5. 심사의견, 지적사항 또는 발전을 위한 제언(별지 사용)

[별첨 2-2] 연구사업 성과물 세부평가표

1. 연구 사업명:
2. 평가자명:
3. 평가일시:
4. 심사결과

평가기준 A: 매우 우수, B: 우수, C: 보통, D: 미흡, E: 매우 미흡					
평가항목	A(1.0)	B(0.9)	C(0.8)	D(0.7)	E(0.6)
연구사업 목적의 명확성(15) (연구사업의 필요성, 목적이 명확하게 설정되어있는가?)					
사업 수행의 충실도(20) (주어진 자원을 활용하는 범위에서 효율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연구 사업이 설계되고 범위가 설정되었는가?(참여자 구성, 외부 용역시 필요 판단의 적절성, 용역 주체 선정의 적절성 등 포함)					
연구사업 방법의 적절성(15) (문제 해결을 위해 연구사업에서 사용한 방법이 적절한가?)					
연구사업 목적의 달성도(20) (사업 계획 당시 제시한 기대를 얼마나 거둘 수 있는가?)					
연구사업의 기여도(30) (사업 결과 아이큐연구소의 업무수행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되겠는가?)					
평가점수(100)					

5. 기타 의견 및 지적 사항, 발전을 위한 제언이 있으시면 별지를 사용하여 기재해주시시오.

컴퓨터 구입지원, 지급 또는 대여 및 정품 소프트웨어 사용에 관한 규정

제정 : 2019년 12월 12일

제 1 장 총칙

제1조 [목적]

본 규정은 (재)아이쿱협동조합연구소(이하 '회사')의 직원에 대한 노트북, 데스크톱, 태블릿 PC 등을 총칭하는 컴퓨터(이하 '컴퓨터')의 구입지원, 지급 또는 대여 및 정품 소프트웨어 사용을 명확히 함으로써,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직원의 컴퓨터 구입지원, 지급 또는 대여 및 정품소프트웨어 사용에 관한 규정 등에 관하여 본 규정을 다른 규정 및 취업규칙에 우선적으로 적용한다.

제3조 [용어의 정의]

- ① '지원금 컴퓨터'라 함은, 직원이 회사로부터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받아 구입한 컴퓨터를 의미하며, 그 소유권은 직원에게 있다.
- ② '지급 컴퓨터'라 함은, 회사 자산인 컴퓨터 중에서 업무상 필요에 의하여 직원에게 지급한 컴퓨터를 의미하며, 그 소유권은 회사에 있다.
- ③ '대여 컴퓨터'라 함은, 회사 자산인 컴퓨터 중에서 업무상 필요에 의하여 직원에게 기간을 정하여 일시 대여한 컴퓨터를 의미하며, 그 소유권은 회사에 있다.
- ③ '관리주체'라 함은, 본 규정에 의한 컴퓨터의 관리 등에 관한 제반 업무를 처리하는 팀을 말한다.
- ④ '지원 신청인'이라 함은, 지원금 컴퓨터 구입에 따른 지원금을 신청한 자를 말하고, '컴퓨터 수령인'이라 함은, 회사로부터 지급 컴퓨터를 지급 받은 자를 말하며, '대여 신청인'이라 함은, 대여 컴퓨터의 대여를 신청한 자를 말한다.

- ⑤ ‘소속 관리자’라 함은, 제4항의 지원 신청인 또는 대여 신청인의 소속 팀장 또는 그에 준하는 관리자를 말한다.
- ⑥ ‘결재권자’는, 제5항의 소속 관리자 및 회사 경영 책임자(이하 ‘경영진’)를 말한다.
- ⑤ ‘처분’이라 함은, 컴퓨터를 양도, 폐기, 멸실 등의 사유로 컴퓨터의 소유권이 변동되거나 가치가 현저히 상실된 것을 말한다.
- ⑥ ‘손상’이라 함은, 컴퓨터가 파손 또는 변질되어 본래의 용도로 사용 불가능케 되거나 효용이 비정상적으로 감소된 것을 말한다.
- ⑦ ‘망실’이라 함은, 횡령, 도난, 분실 등 정상적인 절차에 의하지 않고 처분, 상실되는 것을 말한다.

제4조 [관리주체 및 업무]

- ① 본 규정에 의한 컴퓨터 관리주체는 사무국으로 한다.
- ② 관리주체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 지원금 컴퓨터의 구입신청서 및 동의서 보존, 지원금반환 요청 등 본 규정에서 정한 제반 사항
 2. 지급 또는 대여 컴퓨터의 취득, 처분, 유지, 보존, 정품 소프트웨어의 설치·변경 또는 삭제, 대여, 반납 등 본 규정에서 정한 제반 사항
 3. 정품 소프트웨어 사용지침 관련 관리책임자의 선정, 관리계획수립, 정품 소프트웨어 사용준수 여부관리, 기타 점검 등 본 규정에서 정한 제반 사항
 4. 기타 컴퓨터의 운용과 관련된 업무

제 2 장 지원금 컴퓨터

제5조 [지원금 신청 대상 및 절차]

- ① 모든 직원은 지원금 컴퓨터 구입에 따른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습기간 중에 있는 직원과 기간을 정하여 채용한 계약직원은 신청 대상에서 제외되며, 필요에 따라 해당 직원의 소속 관리자가 대신 신청하거나 결재권자의 결재를 얻어 신청할 수 있다.
- ③ 지원 신청인은 제1항의 지원금을 신청 시 문서를 통해, 결재권자의 결재를 얻어야 한다.
- ④ 결재권자는 지원 신청인이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컴퓨터가 필요한 지 여부를 판단하여 결

재하여야 한다.

제6조 [지원금 범위]

- ① 컴퓨터 지원금 지급은 구입단가가 100만원 이하인 경우는 전액을 지원하되, 100만원을 초과할 경우의 지원금은 100만원 초과분의 80%에 100만원을 더한 금액을 지원하며, 총 지원금액은 12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 참고 : 구입단가 100만원 초과 시 컴퓨터 지원금 계산방법 = 100만원 + [(구입단가-100만원) * 80%]
(단, 지원금액 총액은 120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 ② 회사의 필요나 업무의 특성상 추가사양이 필요하여, 제1항의 한도액으로 구입이 곤란한 경우, 지원 신청인은 특별결재를 통하여 구입비용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다.
- ③ 지원금은 컴퓨터 구입(컴퓨터 구입 시 Windows, Mac 등 정품 운영체제가 기본 설치되어 있는 경우, 구입 금액으로 인정한다)에 한하여만 적용하고, 이외 일체 운영비용인 Windows, Mac 등 운영체제, Microsoft office, 한컴오피스, PDF 변환, 폰트 및 백신 프로그램 등의 일체 정품 소프트웨어, 기타 비품(모니터, 무선키보드, 마우스, 이에 준하는 주변기기 등) 구입 등에 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단, 회사의 필요나 업무의 특성상 필요한 경우, 결재권자의 결재를 통하여 별도 지원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정품 소프트웨어, 기타 비품의 소유권은 회사에 있다.

제7조 [지원 신청인, 소속 관리자의 의무 및 벌칙]

- ① 지원 신청인은 결재권자의 최종 결재 후, 1주일 이내에 별표1 서식을 작성하여, 관리주체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② 관리주체는 지원 신청인이 제1항의 의무를 게을리하였을 경우, 손실책임비 5만원을 부과할 수 있다.
- ③ 지원 신청인의 소속 관리자는 지원 신청인이 퇴사, 해고 또는 기타의 사유로 회사와 고용관계가 종료될 경우 관리주체에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 ④ 지원 신청인 소속 관리자는 인사이동(SAPE.net 내 내부채용으로 인한 회사간 전적을 포함한다) 등으로 인하여 지원 신청인이 자신의 관리 영역에서 이탈할 경우, 지원 신청인이 제5조 내지 제6조에 따른 지원금을 받은 사실을 이동된 소속 관리자에게 인수인계하여야 한다.

- ⑤ 지원 신청인 소속 관리자가 제3항 또는 제4항의 의무를 게을리하여 제8조에 기재된 지원금의 반환을 곤란하게 한 경우, 지원 신청인과 연대하여 책임을 부담한다. 단, 지원 신청인 소속 관리자가 이전 소속 관리자로부터 인수인계 등을 받지 못하여 그 사실을 알지 못하는 등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8조 [지원금 반환]

- ① 지원 신청인(본 규정 제5조에 의거 결재를 득하여 컴퓨터 지원금을 지급받은 자)는 최종 결재권자의 결재일 익일로부터 기산하여 2년 이내에 퇴사, 해고 또는 기타의 사유로 회사와 고용관계가 종료될 경우 지원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 ② 지원금 반환의 범위는 제1항의 사유 발생일까지 일할 계산으로 정하며, 2년은 730일로 본다.
- ③ 지원 신청인은 제1항의 규정일이 2년을 초과한 경우, 지원금을 반환하지 않는다.
- ④ 지원금 컴퓨터는 지원 신청인의 개인소유이며, 회사에 반납하거나 구입 당시 자기부담금 등을 청구할 수 없다.
- ⑤ 지원 신청인이 재직 중, 지원금 컴퓨터가 처분, 손상, 망실 등의 사유로 업무에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본조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9조 [지원금 신청 기간의 유예]

- ① 지원 신청인(본 규정 제5조에 의거 결재를 득하여 컴퓨터 지원금을 지급받은 자)는 직전 지원신청의 최종결재권자의 결재 다음날로부터 4년 이내에는 다시 지원금 컴퓨터 구입에 관한 지원금 신청을 할 수 없다. 단, 회사의 필요 또는 업무의 특성상 컴퓨터 사양 교체 등의 상당한 이유가 있어 경영진의 결재를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② 위 경영진의 승인을 득하여 4년 이내 지원금을 받는 경우, 동 규정 제6조의 내용과 달리 지원범위를 아래 호와 같이 제한한다.
 1. 지원금액 : 구입단가의 80%를 지원하되 지원금액 총액은 100만원을 넘을 수 없음
 2. 사용연한 : 4년 + (4년 - 이전 지원금 컴퓨터 사용기간)으로 연장
- ③ 지원 신청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지원금 컴퓨터가 처분, 손상, 망실된 경우에는 사유 발생일로부터 4년간 지원신청을 할 수 없다.

제 3 장 지급 또는 대여 컴퓨터

제10조 [컴퓨터 지급]

회사는 회사 자산의 컴퓨터를 업무상 필요에 의하여 직원에게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 [컴퓨터 수령인 및 소속 관리자의 의무 및 책임, 벌칙]

- ① 컴퓨터 수령인은 지급 컴퓨터를 업무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컴퓨터 수령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지급 컴퓨터를 사용, 관리하여야 한다.
- ③ 컴퓨터 수령인이 제2항의 의무를 게을리하여, 컴퓨터가 손상된 경우, 수리비 등 소요비용 전액을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 ④ 컴퓨터 수령인이 제1항의 의무를 게을리하여, 컴퓨터가 망실된 경우, 사유발생일을 기준으로 한 컴퓨터 잔존가치를 배상하여야 한다. 그 잔존가치를 정함에 있어서는 제19조의 규정에 따른다.
- ⑤ 천재지변, 전쟁 등의 원인으로 컴퓨터가 손상 또는 망실된 경우, 컴퓨터 수령인의 귀책사유가 없는 것으로 본다. 단, 컴퓨터 수령인이 고의 또는 중과실로 위난 지역으로의 이동 등의 위난을 자초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⑥ 관리주체는 컴퓨터 수령인이 제1항 내지 제2항의 의무를 게을리한 경우, 배상 여부와 상관없이 손실책임비 5만원을 부과할 수 있다.
- ⑦ 컴퓨터 수령인 및 소속 관리자는 해당 수령인이 퇴사, 해고 또는 기타 회사 업무에 종사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관리주체에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하며, 컴퓨터 수령인은 지급 컴퓨터를 지체없이 관리주체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 ⑧ 제7항 외에도 관리주체는 필요한 경우 컴퓨터 수령인에게 지급한 컴퓨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해당 수령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제12조 [컴퓨터 대여 신청 및 절차]

- ① 모든 직원은 컴퓨터 대여를 신청할 수 있다.
- ② 대여 신청인은 대여일을 명기한 문서를 통해, 결재권자의 결재를 얻어야 한다.
- ③ 대여 신청인은 컴퓨터를 계속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전항의 절차를 경유하여, 대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④ 대여 신청인은 업무 외의 용도로 컴퓨터를 대여할 수 없다.

제13조 [대여 신청인 및 소속 관리자의 의무 및 책임, 벌칙]

- ① 대여 신청인은 대여 컴퓨터를 업무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대여 신청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대여 컴퓨터를 사용, 관리하여야 한다.
- ③ 대여 신청인이 제2항의 의무를 게을리하여, 컴퓨터가 손상된 경우, 수리비 등 소요비용 전액을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 ④ 대여 신청인이 제2항의 의무를 게을리하여, 컴퓨터가 망실된 경우, 사유발생일을 기준으로 한 컴퓨터 잔존가치를 배상하여야 한다. 그 잔존가치를 정함에 있어서는 제19조의 규정에 따른다.
- ⑤ 천재지변, 전쟁 등의 원인으로 컴퓨터가 손상 또는 망실된 경우, 대여 신청인의 귀책사유가 없는 것으로 본다. 단, 대여 신청인이 고의 또는 중과실로 위난 지역으로의 이동 등의 위난을 자초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⑥ 관리주체는 대여 신청인이 제12조 제3항, 제13조 제1항 내지 제2항의 의무를 게을리한 경우, 배상 여부와 상관없이 손실책임비 5만원을 부과할 수 있다.
- ⑦ 대여 신청인 및 소속 관리자는 대여 신청인이 퇴사, 해고 또는 기타 회사 업무에 종사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관리주체에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하며, 대여 신청인은 대여 컴퓨터를 지체없이 관리주체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 ⑧ 제7항 외에도 관리주체는 필요한 경우 대여 신청인에게 대여한 컴퓨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해당 신청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제14조 [미대여 컴퓨터의 관리]

- ① 관리주체는 미대여 중인 컴퓨터의 일체의 관리 책임을 진다.
- ② 관리주체는 경영진의 결재를 얻어, 미대여 컴퓨터를 처분할 수 있다.
- ③ 관리주체의 미대여 중인 컴퓨터의 손상 또는 망실에 관한 책임은 제13조의 제2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 ④ 경영진은 관리주체가 제13조 제2항의 의무를 게을리하였을 경우, 제13조 제6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손실책임비를 부과할 수 있다.

제 4 장 정품 소프트웨어 사용

제15조 [정품 소프트웨어 사용]

- ① 모든 직원은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컴퓨터(제2장의 지원금 컴퓨터, 제3장 지급 또는 대여 컴퓨터를 포함한다)에 본인이 구입했거나 회사에서 지급한(회사가 지원금을 지급하여 직원

이 구입한 경우 포함) 기업용 정품 소프트웨어를 설치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 ② 모든 직원은 정품 소프트웨어 사용 서약과 관련하여 별표 2 서식을 관리주체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 [정품 소프트웨어 구입 지원 및 관리]

- ① 정품 소프트웨어 구입 지원은 지원금 컴퓨터의 경우, 제6조 제3항에 따른다.
- ② 지급 또는 대여 컴퓨터는 관리주체가 정품 소프트웨어를 구입하여 설치·변경 또는 삭제하는 것으로 한다.

제17조 [정품 소프트웨어 사용의무 및 책임, 벌칙]

- ① 모든 직원은 정품 소프트웨어를 설치 및 사용하여야 하며, 해당 소프트웨어 저작권의 사용범위 및 조건을 반드시 확인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 ② 모든 직원은 회사가 지급한 정품 소프트웨어(회사가 지원금을 지급하여 직원이 구입한 경우도 포함)를 제3자에게 대여 또는 양도하거나 이와 유사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 모든 직원은 회사의 각 인트라넷 좌측 배너상 정품 소프트웨어 관리지침을 숙지하고 업무용으로 사용 가능한 소프트웨어를 수시로 확인하여야 한다.
- ④ 모든 직원은 본 규정 제4장 내용과 제3항 회사의 각 인트라넷 좌측 배너에 위치한 정품 소프트웨어 관리지침을 위반하여 발생하는 회사의 손실을 책임져야 하며, 이에 수반되는 민·형사상의 모든 처벌도 감수하여야 한다.

제 5 장 기타

제18조 [계약직 직원의 지원금 컴퓨터 신청 및 관리]

- ① 계약직 직원이 업무상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본 규정 제5조 제2항에 따라 지원금 컴퓨터를 구입 신청할 수 있다.
- ② 계약직 직원이 2년 내 계약기간 종료를 사유로 지원금 반환금이 발생할 경우, 직원은 퇴사 시 급여에서 제8조에 따른 지원금 반환금을 공제할지, 지원금 컴퓨터를 회사에 반납하고 반환금을 납부하지 않을지 결정할 수 있다. 단 이외 사유에 해당하는 직원의 경우 본 조항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며, 제8조에 따라 지원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 ③ 본조에 의해 반납하는 컴퓨터는 회사 자산으로 관리되며 지급 또는 대여 컴퓨터로 사용될 수 있다.

제19조 [감가상각]

관리주체는 지급 또는 대여 컴퓨터에 대한 감가상각을 하며, 그 방법과 시기 등에 관하여는 회계처리규정에 의한다.

제20조 [인수인계]

지원 신청인, 컴퓨터 수령인, 대여 신청인을 관리하는 소속관리자는 업무의 인수·인계 시, 컴퓨터 지원금 지급여부, 컴퓨터 지급 또는 대여 현황을 반드시 인수인계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본 규정은 2019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본 규정 시행일 이전에 시행된 관련규정은 본 규정에 의거하여 시행된 것으로 간주한다.

[별표 1] 지원금 컴퓨터 구입 신청 및 동의서

지원금 컴퓨터 구입 신청 및 동의서			
성명		회사명	
		부서(팀)	
신청근거 (문서번호)			
<p>본인은 아래와 같이 동의하며 지원금 컴퓨터 구입을 신청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 아 래 -</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재)아이쿱협동조합연구소 컴퓨터 구입지원, 지급 또는 대여 및 정품 소프트웨어 사용에 관한 규정」을 숙지하였고, 이를 준수한다. 2. 지원금 컴퓨터를 업무 외에 사용하지 않는다. 3. 회사 내 대외비 등 정보 유출이 없도록 관리한다. 4. 「(재)아이쿱협동조합연구소 컴퓨터 구입지원, 지급 또는 대여 및 정품 소프트웨어 사용에 관한 규정」에 따른 지원금 반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당 금액을 급여 또는 퇴직금 등에서 차감하는 것에 동의한다. <p>※ 첨부 : 「(재)아이쿱협동조합연구소 컴퓨터 구입지원, 지급 또는 대여 및 정품 소프트웨어 사용에 관한 규정」 1부 지원금 컴퓨터 구입신청 결재 문서 1부</p> <p style="text-align: center;">20</p> <p style="text-align: center;">성명 (서명)</p> <p style="text-align: center; font-weight: bold; font-size: 1.2em;">(재)아이쿱협동조합연구소 귀 중</p>			

성명:

(서명)

(재)아이쿱협동조합연구소 귀중

(재)아이쿱협동조합연구소 계간지 <생협평론> 회계 및 운영 지침

제정: 2012년 12월 20일

개정: 2013년 6월 20일

개정: 2016년 11월 18일

개정: 2019년 3월 22일

I. 회계

1. 원고료

1) 국내 원고료

- ① <생협평론>(이하 평론)의 원고료는 외부 필자와 내부 필자로 구분해서 지급한다.
- ② 내부필자는 고정 급여를 받는 세이프넷 임직원 및 세이프넷의 현직 활동가로 분류하지만, 임직원과 활동가 동일하게 6,000원으로 책정한다.
- ③ 외부 필자는 원고지 1매당 10,000원을 지급한다.
- ④ 르췌의 경우 취재 경비 10만 원을 별도 지급한다.
- ⑤ 원고료는 최종 편집을 완료한 후 편집위원회에서 기안하여, 평론 발행 후 1주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한다.
- ⑥ 원고료의 지급과 관련한 변동 사항은 편집위원회에서 정한다.

2) 해외 원고료

- ① 해외 원고 외부 필자에 대해 450words에 65달러, 62유로를 지급한다.
 - 기준 : 450words = 약 A4 2/3매 = 원고지 8매 = 8만 원(한국어 원고료로 환산)
 - USD 1,129.03원, EURO 1,282.29원 (매매기준율, 2019년 3월 19일)
- ② 원고료는 최종 편집본을 제출한 후 1주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한다.
- ③ 송금방식은 필자와 협의하여 정한다.
- ④ 원고료의 지급과 관련한 변동 사항은 편집위원회에서 정한다.

2. 회의비(편집회의비, 교정회의비)

- ① 편집회의에 참가한 편집위원에게는 소정의 회의비를 지급한다.
- ② 세이프넷 활동가에게는 3만 원을 지급한다. 그 외의 사항은 세이프넷의 회의비 지급 규정에 따른다.
- ③ 각종 회의비는 편집위원회에서 회의 종료 후 기안하여, 기안 후 1주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한다.

3. 좌담회 참가비

- ① 평론의 좌담회 참가자에게는 소정의 회의비와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② 세이프넷 활동가 및 임직원은 회의비 5만 원과 수도권 외 지방에서 온 경우 교통비를, 외부 인사는 10만 원과 교통비를 지급한다. 교통비 관련 세부 사항은 세이프넷의 지급 규정에 따른다.
- ③ 좌담회 참가비는 편집위원회에서 회의 종료 후 기안하여 기안 후 1주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한다.

II. 편집위원회

1. 위원회 구성

- ① 평론의 편집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과 실무 간사를 둘 수 있다.
- ② 위원장과 위원의 선임은 평론의 제작에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인사로 하며, 그 범위는 따로 정하지 않는다. 임면은 편집위원회에서 추천하고 사무국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 ③ 위원은 ‘(재) 아이쿱협동조합연구소 운영규정’에 따라 소장의 위촉을 받는다.

2. 위원회 임기

- ①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장 여부는 편집위원회에서 정한다.

3. 위원의 역할

- ① 위원장은 평론의 기획, 제작과 관련한 업무의 최종 책임을 맡는다.
- ② 위원들의 중요한 임무는 3달에 한 번씩 평론 기획회의에 참석하는 것이다. 그 외에 <생협평론>과 관련한 특별한 안건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편집위원회의 의견을 조율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임시 회의에 참석한다.

4. 간사의 역할

- ① 간사는 편집위원장을 보좌하여 평론의 기획, 제작과 관련한 제반 업무와 회계 업무를 처리한다.
- ② 편집회의, 기획회의, 좌담회, 그리고 기타 회의의 소집을 위원들에게 알리고, 진행을 담당한다.

5. 제정 및 개정

이 지침의 제정 및 개정은 편집위원회 의결에 따른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지침은 2013년 9월 20일 발행분부터 적용하여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지침은 2019년 1월 1일부터 소급하여 시행한다.

연구활동비(잡비) 운영 지침

2017년 5월 11일 제정

1. 기본원칙

- ① (연구활동비 집행의 합목적성) 연구활동비는 연구계획 및 목적에 부합되게 집행
- ② (연구활동비 집행기간의 적합성) 연구활동비는 협약 연구기간 내에 집행
- ③ (증명자료의 객관성) 연구활동비 집행은 객관적인 서류 구비를 통해 증명 (지출결의서, 세
금계산서, 회의록 등)

※ 증명자료는 해당과제 연구종료일로부터 최소 5년간 보존해야 함.

2. 연구활동비(잡비)의 내용

- ① 연구를 위한 활동에 직접 투입되는 경비를 말함.
- ②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과제와 직접 관련 있는 인쇄. 복사. 인화비.
 - 설문조사, 인터뷰 수행과 관련된 비용,
 - 연구를 위한 출장경비.
 - 회의장 사용료, 세미나 개최비, 학회.세미나 참가비.
 - 원고료, 통·번역료, 속기료.
 - 기타 연구 활동에 직접 투입되는 경비.

3. 연구활동비의 계상기준과 증빙

- ① 연구활동비 처리 절차
 - 연구활동비는 연구자가 선집행 후 지출결의서와 영수증을 제출하고 사후정산 받음.
 - 연구 종료일로부터 1주일 이내 연구활동비 사용 실적을 보고하고 영수증 제출

- 연구 기간이 2개월 이상일 때는 월 단위로 정산할 수 있음.

② 연구활동비 사용 내역을 증명하는 데 필요한 증명자료와 계상기준

구 분	증 명 자 료
지출결의서	<p>연구소 소정 양식의 지출결의서에 지출내역을 기록하여 영수증과 함께 제출하여야 함.</p> <p>*실제 사용한 경비와 법적증빙자료 첨부하여 제출. *회의비로 지출하는 경우 : 회의일시와 참석자, 회의주제를 기재해야 함 *주류 등 유흥성 경비가 포함되어 있는 회의비는 제외함. *인터뷰 사례로 지출시 : 인터뷰 대상자 및 인터뷰 목적을 기재함. *회의비, 출장경비, 인터뷰 사례비 등 지급금액기준은 연구과제 예산서에 따름.</p>
영수증	<p>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혹은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제출.</p> <p>*계산서, 영수증을 받을 수 없는 개인이나 조직에게 지급했을 경우 : 연구소 소정 양식의 영수증과 원천세증빙서류를 받아야 함. 현금 지급이 아닌 계좌이체로 지급해야 함. *대중교통을 이용했을 경우 금액이 기재된 승차권은 영수증의 효력 있음</p>
원천세증빙서류	<p>계산서, 영수증을 받을 수 없는 개인, 단체에 비용을 지급했을 경우 소정양식의 원천세증빙서류를 작성하여 연구소 소정 양식의 영수증과 함께 제출하여야 함.</p>

③ 지원 기관은 해당과제 정산 시 필요에 따라 세부항목별 내역서, 증명자료 등을 제출받아 검토함. 검토 결과 부당집행금액은 해당 연구책임자에게 통보하여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고 확정된 부당집행 금액은 정산하지 않음.

아이쿱(iCOOP) 임직원 윤리 지침

제정 : 2010년 3월 24일

개정 : 2017년 11월 7일

아이쿱(iCOOP) 임직원 윤리 지침의 배경과 목적

1997년 설립된 아이쿱은 국내 협동조합 및 사회적경제의 대표적인 조직으로 성장하였고 한국의 협동조합운동과 사회적경제운동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 다방면으로 기여하고 있습니다. 그 바탕에는 매 시기 아이쿱이 직면한 어려움과 난관을 협동과 연대의 힘으로 극복해 온 자랑스러운 조합원, 활동가의 헌신과 기여가 있었습니다. 또한 갈수록 어려워지는 농업환경에서도 친환경 농업의 저변을 확대하여 조합원, 소비자의 안전과 안심을 지키고자 단기이익이 아닌 장기적인 이익과 공동의 목표를 추구하며 함께 협력, 연대해 온 농업생산자 및 가공생산자의 뜻과 노력이 있습니다. 우리 아이쿱 임직원 역시 소비자 조합원, 생산자와 함께 지난 아이쿱의 역사 속에서 '함께 행복한 삶을 만들어가는 협동조합' 아이쿱을 일구어온 자랑스러운 일 주체입니다. 생존과 성장의 과정에서 발생한 임직원의 이탈로 인해 뼈아픈 경험을 하기도 했지만 조합원을 위해 봉사하면서 협동조합운동의 발전을 묵묵히 뒷받침해온 임직원의 헌신과 동료들과의 협력 그리고 자기혁신과 창의적 도전은 계속 되어야 합니다. 그 정진의 과정에서 우리 아이쿱 임직원은 조합원과 모든 이해관계자를 공정하게 배려하며 윤리적으로 행동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지금까지의 성과와 성취에 안주하지 않고 보다 유능하고 혁신적인 조직으로 아이쿱을 발전시켜야 할 책무와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본 윤리지침은 우리 임직원이 각자의 과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할 핵심적인 가치와 임직원의 직업윤리에 대한 기본적인 지침을 제공합니다. 이 윤리지침은 협동조합의 원칙과 자조, 차기책임, 민주주의, 평등, 형평성, 연대, 정직, 공개, 사회적 책임, 타인에 대한 배려 등 협동조합이 추구하는 가치 그리고 아이쿱의 사명선언을 기본 바탕으로 합니다.

우리의 사명

함께 만드는 미래, 아이쿱
“아이쿱은 함께 행복한 삶을 만들어가는 협동조합입니다.”

우리의 비전

- 생활의 안심**
아이쿱은 윤리적 생산과 소비를 바탕으로 먹을거리, 돌봄, 교육, 주거, 의료 등 생활의 안심을 만들어 갑니다.
- 사람중심 경제**
아이쿱은 정직과 신뢰의 협동조합생태계를 바탕으로 노동을 존중하고 성과를 공유하는 사람중심경제를 만들어 갑니다.
- 더 나은 미래**
아이쿱은 협동조합의 가치를 바탕으로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 갑니다.

우리의 핵심목표

- | 생활의 안심 | 사람중심경제 | 더 나은 미래 |
|---|---|--|
| 1. 식품안전
2. 생활속의 안심 실현
3. 세상을 바꾸는 윤리적 소비자 운동
4. 상상을 현실로 만드는 실천가 | 1. 일하고 싶은 협동조합 기업
2. 이익을 공유하는 윤리경영의 확산
3. 정직과 신뢰의 협동조합생태계 조성
4. 서로를 지지하는 혁신가 | 1. 지속가능한 생산·소비 체계
2. 기후변화에 대처하는 생활운동
3. 협동조합 가치의 확산
4. 현재와 미래를 잇는 촉진자 |

아이쿱(iCOOP) 임직원 윤리 지침의 적용 대상

이 윤리 지침은 아이쿱(iCOOP)그룹 내 연합 조직과 공동의 사업과 활동을 위해 설립한 제 조직의 임원과 직원을 대상으로 합니다.

조합원에 대한 윤리 지침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을 모태로 하는 협동조합인 아이쿱(iCOOP)의 모든 임직원은 회원조합과 연합조직의 정관에서 정한 조합원 주권과 권리가 반드시 지켜지도록 합니다. 조합원의 이해관계가 걸려 있는 모든 일에 있어서 가장 먼저 조합원의 입장을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합니다.

■ 우리는 협동조합이 조합원의 요구를 해결하기 위해 만든 민주적인 조직임을 늘 생각하여 조합원의 정당한 요구를 적극적인 자세로 받아들이고 긍정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 우리는 조합원의 의사결정에 필요한 관련 정보를 최대한 공개하고 제공해야 하며 아울러 조합원이 그 내용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합니다. 또한 조합원이 결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편의를 제공합니다.

- 우리는 법령에 의해 부과되는 의무가 아닌 경우 어떠한 경우에도 사업과 활동 속에서 알게 된 조합원의 개인정보를 누설하지 않습니다. 이를 위해 법령이 규정하는 개인정보 보호 의무를 반드시 준수합니다.
- 우리는 조합원들이 자주적으로 수립한 친환경적이고 안전한 물품의 생산, 가공, 취급 기준에 근거하여 선택된 물품이 조합원에게 안전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또한 조합원의 기여로 조성된 아이쿱의 모든 유무형의 공동자산을 소중히 다루고 부주의로 인한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합니다.
- 우리는 조합원을 대함에 있어서 성, 연령, 언어, 피부색, 경제적 능력, 학력, 외모, 종교, 사회적 위치 등이 다르다고 차별하지 않으며 모두를 평등하게 존중합니다.

생산자, 거래처 및 다양한 이해관계자에 대한 윤리 지침

아이쿱(iCOOP)의 임직원은 아이쿱의 구성원으로서 생산자를 비롯한 모든 거래 상대자 및 이해관계자 등 모든 사람과 이해관계자를 소중하게 대합니다. 뿐만 아니라 나아가 한국사회 협동조합운동과 사회적경제운동을 함께 발전시켜 나갈 협력적 파트너가 되도록 노력합니다.

- 우리는 생산자, 거래처 및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대할 때 사적인 관계가 아닌 공적인 관계에 입각해 모든 일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처리 합니다. 특히, 조합원에게 공급하는 물품의 선정과 취급과 관련해서는 조합원의 요구, 사회적 가치, 품질,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에게 공정한 가격, 거래 상대자의 신뢰성 등에 관한 정보를 최대한 수집, 분석하고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판단합니다.
- 우리는 생산자, 거래처 및 이해관계자와 항상 공정한 관계를 유지하도록 노력합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공정한 거래관계를 벗어난 금품, 접대, 향응, 사적인 편의제공 및 특혜를 받거나 요구하지 않습니다. 불가피한 상황에서 위와 같은 상황이 벌어졌을 경우에는 즉시 권한을 가진 상사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 적절한 조치를 취합니다.
- 우리는 생산자, 거래처 등과의 업무관계 속에서 알게 된 정보에 대해 비밀을 유지하여야 하며 외부에 누설하지 않습니다.

임직원 간의 윤리지침

아이쿱(iCOOP)에서 근무하는 임원이나 직원은 모두 소중한 아이쿱의 인재입니다. 아이쿱은 자본이나 돈 보다 사람을 더욱 소중하게 여기는 협동조합입니다.

- 우리는 아이쿱(iCOOP)에 근무하는 임직원 모두를 협동조합운동의 동반자이자 아이쿱의 사

명과 비전, 목표를 함께 추구하는 동료로 존중합니다.

- 우리는 지위나 직책에 관계없이 서로를 성숙한 인격체로 대하며 창의와 도전, 지속적인 자기혁신을 지지, 격려하며 상호간의 협력과 협동, 성장을 촉진하는 조직문화를 만들어갑니다.
- 우리는 협동조합운동의 동료로서 상사는 조직 구성원의 창의와 혁신, 협력과 협동을 촉진하고 조직 성원의 성장을 도와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필요한 지시와 통제는 합리적이어야 하고 정당해야 합니다. 직원은 상사, 동료와 협력하여 과업을 책임있게 수행하며 자기혁신과 자기발전을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아이쿱(iCOOP)의 얼굴이자 신용이라는 자각을 가지고 조직의 사회적 신뢰와 명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합니다.

지역사회와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임직원 윤리 지침

한국 사회는 수도권 지역과 비수도권 지역의 편차가 세계 어느 나라 보다 극심하고 지역 간 균형 발전으로 인한 사회문제가 매우 심각합니다. 협동조합의 원칙 중 하나는 '지역사회에 대한 관여'입니다. 우리는 아이쿱의 사업과 활동이 지역사회의 균형적 발전을 위해 기여하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아이쿱(iCOOP)이 실천하는 윤리적 소비의 핵심인 '지속가능한 생산과 소비'를 통해 '생태계의 지속 가능성'과 함께 '사회의 지속 가능성'을 함께 추구합니다.

- 우리는 지역이 조합원들이 생활을 영위하는 기본적인 정주공간임을 인식하여 지역주민에 의한 풀뿌리 정치와 시민을 위한 경제의 활성화, 지역의 고유한 문화의 형성 및 포용적이고 건강한 지역사회가 만들어 질 수 있도록 합니다.
- 우리는 아이쿱의 사업과 활동의 결과가 수도권, 대도시 지역에 비해 불리한 비수도권, 농어촌 및 인구 과소 지역의 성장과 균형적인 발전에 보다 더 기여하도록 합니다. 특히 조합원에게 공급하는 물품의 선정에 있어 동일한 가격, 품질일 경우에는 가능한 불리한 지역에서 생산된 상품을 우선 고려, 배려합니다.
- 우리가 살고 있는 자연, 생태계는 계속 유지되고 후세대에게 이어져야 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생태계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자연을 보전하고 화석연료의 소비와 탄소 배출 등을 최대한 억제합니다.
- 사회가 유지, 계승되기 위해서는 계급과 계층, 세대, 성, 민족, 종교 등의 갈등이 줄어야 합니다. 우리는 사회 갈등이 최소화 되도록 힘쓰며, 경제.사회.신체적 약자를 우선 배려하고 연대하여 모든 사람이 함께 살아가는 사회가 되도록 노력합니다.

아이쿱(iCOOP) 아카이브 수집 정책

2017년 11월 13일

□ 아카이브 수집정책의 필요성

아카이브의 수집정책은 체계적인 수집활동의 수단이며, 해당 아카이브의 정체성과 방향성을 나타내는 지표가 된다. 효과적이며 체계적인 기록물 수집을 위해 기관의 특성에 맞는 수집정책을 정의하고 명문화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특정 주제에 대한 아카이브는 수집과 기증을 주된 기록물 입수 방법으로 채택한다. 그러나 아이쿱 아카이브는 수집과 기증뿐만 아니라 내부 조직에서 생산된 기록물의 이관 영역까지 포함하여 확장된다. 이처럼 민간의 영역에서 기록물의 이관 및 수집활동에 있어서 수집정책은 기록물을 입수 및 관리의 측면에서 필수적인 도구라 할 수 있다.

□ 아이쿱 아카이브의 사명

아이쿱 아카이브는 아이쿱생활협동조합의 역사와 국내·국외 협동조합운동에 관한 기록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보존하는 것을 사명으로 한다. 과거의 기록물들을 이관 및 수집하고 보존하여 후일의 업무와 연구의 토대가 되는 지식창고로서 기능을 수행하고 기록물을 통해 협동조합의 역사를 현세대와 미래세대가 공유할 수 있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수집 및 관리 대상으로서 기록물의 정의

「공공기록물관리법」제3조(정의)에서 “기록물”이란 공공기관이 업무와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접수한 문서·도서·대장·카드·도면·시청각물·전자문서 등 모든 형태의 기록정보 자료와 행정박물(行政博物)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민간기관인 아이쿱생활협동조합 기록물의 정의를 규정하는 데에는 공공기관과 크게 다르지 않으며, 아이쿱 아카이브에서 관리 및 보존하고자 하는 기록물을 위와 같이 설정하고자 한다.

다만, 이것은 기록물의 유형을 정의한 것일 뿐이며, 기록물의 종류와 기록물의 내용, 기록관리를 위한 기반은 공공기관과 많은 차이를 가진다.

□ 기록물 관리의 필요성

기록물은 특정의 목적을 위한 본원적 가치(해당 기록물을 생산했을 때의 가치)와 의도한 목적이 아닌 다양한 쓰임새의 활용적 가치가 존재한다.¹⁾

① 설명책임성의 확보

조합원·생산자·활동가·직원 등으로 구성된 아이쿱 관련 사람들이 수행하는 업무 및 활동에 대한 답변의 의무로 아이쿱생협이 왜 그 업무와 활동을 수행했는지에 대한 타당한 답변의 역할을 수행한다. 어떤 사안에 대하여 일을 진행한 것에 대한 타당성과, 진행과정에 대한 투명성, 결과에 대한 책임성을 가지게 된다.

② 업무참고적 가치(행정적 가치)

관리되고 있는 기록물은 추후 동일하거나 유사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효율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업무참고적 가치를 지닌다. 업무참고적 가치를 지니는 기록물은 일반적으로 현용기록물²⁾로 분류되어 사무실에 배치하여 관리하는 경우가 많다. 업무참고적 가치가 낮아지거나 소멸되었을 때 기록물의 활용적 가치를 판단하여 아카이브로 이관되어 보존된다.

③ 증거적 가치

기록물은 조직의 기능, 정책, 결정, 절차, 운영 등을 비롯하여 다양한 업무활동에 대한 증거 능력과 법률적 증거성을 지닌다. 이는 기록물이 지니는 가장 대표적인 가치이며, 기록물의 핵심 기능이다.

→ “탈퇴조합원에 대한 공급출자금 반환요청”

해당 기록물의 경우 탈퇴한 조합원에 대하여 공급출자금을 반환하라는 요청의 문서이면서 반

- 1) 바디버든 줄이기 캠페인 관련 기록물의 경우 1차적으로 ‘바디버든 줄이기’라는 캠페인과 관련하여 생산 당시의 가치가 부여되며, 기록물의 생산이 끝나고 시간이 지난 뒤 해당 기록물은 다양한 쓰임새로 활용되어 추가적인 가치를 지니게 된다.
- 2) 기록물을 활동정도에 따라 분류한 것으로 현용기록물, 준현용기록물, 비현용기록물로 구분한다. 현용기록물은 현재 업무와 관련하여 참고할 만한 가치가 높은 것이며, 준현용기록물은 현용기록물과 비교하여 참고적 가치가 떨어지나 어느 정도 업무에 활용되는 기록물이며, 비현용기록물은 현재 업무에 참고적 가치는 없으나 추후 활용적 가치를 위해 보존할만한 가치 있다고 판단되는 기록물이다.

환요청을 한 것에 대한 증거적 가치를 지니게 되는 것이다.

④ 맥락적 가치(맥락정보)

기록물은 일반도서와 다르게 맥락정보를 가지고 있으며, 이 맥락정보는 기록물이 가지는 가장 중요한 정보 중 하나이다.

- “탈퇴조합원에 대한 공급출자금 반환요청”
- “○○생협 탈퇴조합원 출자금 반환처리의 건”
- “탈퇴조합원에게 탈퇴출자금 반환”

위와 같은 기록물이 존재한다고 했을 때 하나의 기록물은 해당 문서의 내용만을 제공하지만 사안에 대하여 일련의 연속된 기록물은 사안의 전체적인 내용을 파악할 수 있으며 이해관계조직 간의 의견을 통해 해당 사안을 좀 더 구체적이며 다각적으로 볼 수 있는 맥락정보를 형성하게 된다.

건축물을 지을 때 일반적으로 “건축허가 → (건축허가승인) → 준공허가 → (준공승인) → 사용허가 → (사용허가승인)”의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A 건축물이 지어진 전체적인 맥락을 보려면 건축허가부터 사용승인허가까지의 일련의 기록물이 필요하며 각 단계별 기록물만으로는 A 건축물에 대한 맥락정보를 확인할 수 없다.

⑤ 역사적 가치

기록물은 시간이 흐를수록 역사적 가치를 지니게 되며, 후대에 전승할만한 가치가 있는 기록물을 보존하고 관리한다. 기록물은 과거를 보여주는 거울이며, 미래를 개척할 도구이다. 우리는 여전히 조선왕조실록의 도움을 받고 활용을 하고 있다. 조선시대 선조들께서 남겨주신 기록물이 오늘 날 이처럼 역사적 의미를 가지듯이 우리가 지금 관리하고 보존하고 있는 기록물은 후대에 어떤 역사적 가치로 남을지는 그 누구도 당장 확신할 수 없다.

⑥ 활용적 가치

기록물 관리의 패러다임이 “보존”에서 “활용”으로 변화하고 있으며, 이는 활용하지 않는 기록물의 보존은 큰 의미가 없음을 시사한다. 기록물은 증거성을 지니고 있으므로 기록물을 활용하여 콘텐츠를 제작할 경우 콘텐츠 내용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다. 새롭게 창조하는 콘텐츠가 아닌 경우 대부분 이전의 것을 조직하거나 재구성하여 만들게 된다. 이럴 때 기록물

은 콘텐츠를 만들기 위한 중요한 자료로써 활용될 것이다. 특히나 조직의 역사를 재구성하거나 조직의 변천을 조사할 경우에 기록물 없이는 신뢰할 수 있는 결과를 가져올 수 없다.

→ (예시) 기록물을 활용한 아이쿱 조합원 교육 콘텐츠

→ (예시) 아이쿱생협 50년사, 아이쿱생협 물품 전시회

□ 아이쿱 아카이브의 이용고객

아이쿱 아카이브는 아이쿱생협을 구성하고 있는 조합원·생산자·활동가·직원뿐만 아니라 대학 및 교육기관의 학생과 연구자를 비롯하여 지역사회 주민까지 다양한 범주의 사람들을 이용고객으로 설정할 수 있다.

① 아이쿱생협 구성원(조합원·생산자·활동가·직원 등)

기록물의 업무참고적 가치의 측면에서 가장 많은 이용객은 아이쿱생협의 구성원이 될 것이다. 동일하거나 유사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기존의 기록물은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업무의 지원이 가능하므로 아카이브에 대한 인식과 이용을 아이쿱의 다양한 구성원들에게 소개하고 교육할 필요가 있다.

② 각 대학 및 교육기관의 학생과 연구자

협동조합 및 사회적경제 등을 공부하는 학생과 연구자들에게 다양한 교육자료 및 연구자료를 제공하는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아이쿱협동조합연구소는 협동조합의 지식창고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며 아카이브는 대내외적으로 이러한 역할을 지원하게 된다.

③ 지역사회를 구성하는 구성원

생협은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존재하는 조직이다. 지역사회를 벗어나 생협의 존재를 설명하기 힘들 듯이 아이쿱 아카이브도 지역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다양한 주민들에게도 개방되어야 할 것이다.

아이쿱 아카이브의 예상 이용고객은 위와 같으나 아카이브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기반이 마련된 이후 단계적으로 제도를 마련하여 이용고객을 확대하여야 한다.

□ 기록물 수집의 주체

기록물 수집 및 이관의 주체는 아카이브를 운영하고 있는 아이쿱협동조합연구소가 되어야 하며 아카이브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기록물관리전문요원이 수행하여야 한다. 아이쿱협동조합연구소는 주체적으로 기록물의 수집 및 이관을 진행하여야 하며 이관되거나 수집된 기록물을 활용하여 다양한 콘텐츠를 만들어 이용자들에게 제공할 수 있다. 다만, 특정 목적이나 필요에 의해서 다른 조직에서 기록물의 수집을 수행할 경우 수집된 기록물은 아이쿱 아카이브로 이관 되어야 한다.

□ 기록물 수집 및 이관 범위 및 대상

아이쿱 아카이브의 이관 및 수집 범위는 다음에 해당하는 기록물 중 영구적으로 보존할 가치가 높은 기록물을 대상으로 한다.

- 1980년 전후로 하여 현재까지 생산된 협동조합 관련 기록물
- 협동조합의 정책, 사업, 행사 또는 조합원의 관심이 높았던 사건, 사고, 인물 등과 관련된 기록물
- 역사적 가치가 높아 아이쿱협동조합연구소의 장이 수집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기록물

이관의 경우 아이쿱생협에서 생산된 기록물 중 아이쿱협동조합연구소 및 다양한 조직에서 보존할만한 가치가 있다고 인정된 기록물을 위주로 우선 이관을 원칙으로 하며 구체적인 수집 및 이관대상은 아래와 같다.

① 아이쿱 조직 운영에 따른 기록물

정기총회, 이사회, 권역별 회의, 전국팀장회의 등의 자료집과 회의록(+녹취록), 감사자료, 승급 및 승진 관련 인사자료 등

② 아이쿱 내부에서 생산된 기록물

특정 사업 및 활동의 연속된 일련의 기록물, 교육자료, 해당조직의 정기간행물, 아이쿱 관련 건물의 도면(괴산, 구례 등), 장기간 보존되어야 하는 계약서, 연구자료 등

③ 별도의 법령에서 보존기간을 명시하고 있으며, 그 이상을 보존해야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 되는 기록물

(법령 보존기간까지는 해당 조직에서 관리하며, 그 이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 아이쿱(iCOOP)아카이브로 이관)

④ 아이쿱 조직 내·외부로 수발신된 공문

수·발신된 공문들 중 사안별로 중요도에 따라 해당 조직에서 판단하여 아카이브에 보존할만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기록물(해당 사안에 따른 일련의 모든 기록물을 이관)

⑤ 외부자료이나 아이쿱생협과 관련하여 보존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기록물

국외 협동조합 관련 자료, 법개정을 위한 모임 자료, 국제포럼자료, 관련논문, 타생협 관련 자료, 협동조합 관련 학과 자료 등

⑥ 위의 내용과 관련된 시청각 및 행정박물

아이쿱 및 협동조합 관련 방송분, 관련 인사의 구술기록, 타 기관에서 받은 기념선물, 상패, 역사성을 지니는 물건 및 아이쿱 제품의 초기 모델 등

□ 기록물 수집 및 이관 제외 대상

아이쿱협동조합연구소의 장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수집을 하지 않을 수 있다.

- 소장 경위나 출처, 소유권 등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
- 자체관리 또는 다른 조직에서의 관리가 더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보존할 가치가 낮다고 판단되는 경우

□ 기록물 입수 방법

아이쿱 아카이브에서 기록물을 입수하는 방법으로는 이관·수집·기증·구매의 방법으로 진행한다.

- 이관 : 아이쿱생협 내부조직에서 생산된 기록물을 아이쿱 아카이브로 이관한다. 이관의 경우 불가피한 상황을 제외한 후 원본이관을 원칙으로 한다.
- 수집 : 외부에서 생산된 기록물이나 특정인이 소장하고 있는 기록물에 대해서 수집절차에 따라 진행하며 원본 수집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할 경우 사본 수집을 진행한다.
- 기증 : 기록물을 소장하고 있는 소장자의 기증 요청이 있을 경우 기록물의 보존가치를 판

단하여 기증을 받으며, 기증자에 대한 예우를 할 수 있다.(기증자에 대한 예우는 아이쿱협동조합연구소의 장이 결정한다.)

- 구매 : 기록물의 소장자가 판매를 원하거나, 아카이브 판단에 따라 구매를 할 기록물의 현황을 파악한 경우 구매계약에 따라 기록물을 구매할 수 있다.
- 제작 : 필요한 경우 기록물을 제작할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구술녹취가 이에 해당한다.

위의 방법에 따라 기록물을 입수할 수 있으며, 기록물의 입수와 관련하여 저작권 및 소유권의 문제를 명확하게 하여야 한다.

□ 기록물의 입수 절차

아카이브를 구축하여 기록물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우선 아카이브의 수집 및 보관이 이루어져야 한다. 기록물은 각 조직에서 아카이브로 기록물을 이관하는 경우가 있으며 기록관에서 기록물을 수집·구매하거나, 기증받는 경우가 있다. 아이쿱생협의 경우 다양한 조직이 존재하며 그 조직으로부터 기록물을 이관 받아야 하는 구조이며, 민간기관의 특성 상 수집의 영역도 존재한다.

① 기록물의 수집

기록물을 수집하는 방법에는 구매, 기증, 제작 등의 방법이 있으며 일반적으로 외부자료를 관리하기 위한 방법이며 내부자료라도 이미 퇴직자가 가지고 있는 기록물이라면 수집의 방법으로 모아서 관리하여야 한다.

기록물을 수집하기 위해서는 조직에서 수집하고자 하는 기록물의 생산기록조사, 최근 문헌조사, 기증자, 연구자, 소장처, 수집일정관리 등에 대한 정보를 가지는 리드파일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리드파일 구축은 인력 및 기간의 한계를 가지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필요성에 따라 신중한 결정을 해야 한다.

따라서, 현재는 기록물을 기증받는 형식의 수집이 가장 우선적이며, 현재 아이쿱 아카이브에서는 아이쿱 혹은 한국의 협동조합과 관련하여 기록물을 기증할 기증자가 나타날 시 기증을 받거나, 별도로 제작한 경우의 기록물만이 존재한다.

- 연구소에서(혹은 연구소 직원 개별적으로) 구매하여 관리하고 있는 기록물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의 협동조합 관련 기록물 목록을 정리하여 직접 제작한 기록물
- 이건우님 기증자료(일본도서)

㉔ 기록물의 이관

현재 아이큐브 아카이브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록물의 대부분이 각 조직에서 이관 받은 기록물로 정기적인 이관에 의해 받은 기록물이 아니라 특정 목적에 의해 일시적으로 이관받은 기록물이 대부분이다. 현재까지 각 조직으로부터 정기적으로 이관 받은 사례는 없으며 앞으로 체계적인 기록물 관리를 위해 각 조직으로부터 정기적으로 이관 받을 준비를 계획하고 있다.

기록물 이관의 경우 다음과 같은 과정을 통해 이루어질 예정이다.

“각 조직으로부터 연 2회 정기적 이관 수행”

.기록물의 [실물 및 전자파일]과 함께 [목록정보³⁾]와 함께 이관

.기록물이 목록과 전자파일은 CUG 별도 게시판을 통해 이관

.기록물의 실물은 오프라인 이관 수행

.기록물의 이관목록과 실물 대조 확인

.기록물의 인계인수서 작성

.기록물의 분류와 정리 후 서가배치

□ 기록물의 관리 절차

이관되거나 수집된 기록물은 아이큐브 아카이브에서 관리되고 보존된다. 확인이 완료된 기록물을 생산조직, 생산년도, 기록물 형태에 따라 분류를 수행한다. 기록물은 출처분류를 메인으로 적용하고 보조적인 분류로서 주제분류, 형태분류, 시대분류를 적용한다. 정리와 분류가 완료된 경우 비전자기록물은 서고에 배치되고 전자기록물은 보존용 외장하드에 저장된다.

이후에 필요에 따라 비전자기록물의 전산화⁴⁾를 수행하고 기록물의 형태에 따라 보존용 표지와 보존용 상자 처리를 진행할 예정이다.

□ 기록물의 이용

원칙적으로 아이큐브 아카이브에 소장된 기록물의 경우 외부로 대출이 불가하며 열람을 위해서는 “기록물 열람 신청서”를 작성하여 열람 및 사본제작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기록물의 보안등급 및 내용의 민감도에 따라 열람 및 사본 서비스가 제한될 수 있다. 다만, 이미

3) 기록물의 제목, 생산일자, 생산조직(생산자), 수량, 비고(요구사항 등) 등

4) 종이기록물의 전자화, CD/DVD/미니테이프 등의 시청각기록물의 전자화 등

외부에 공개되어 있거나 사료관리시스템에 파일이 있는 경우 별도의 신청 과정 없이 이용할 수 있다.

□ 기록물의 폐기

모든 기록물을 영구적으로 보존할 수 없기 때문에 보존할만한 가치가 소멸하였을 경우 폐기를 진행하여야 한다. 일반적으로 기록물의 폐기는 보존기간 만료에 의한 폐기이나, 현재 아이큐생협 혹은 아이큐 아카이브에 보존기간에 대한 규정이 없으므로 해당 규정이 만들어질 때까지 폐기대상 기록물을 담당자(기록관리)가 선정하되 생산조직 및 연구소 소장, 국장의 확인 작업이 반드시 필요하다.

폐기대상기록물(담당자 선정) → 생산조직 의견조회 → 담당자 검토 → 연구소 소장 및 국장 최종검토 → 결과 및 폐기목록 CUG 고시 → 폐기집행

기록물 관리가 안정화 단계에 접어들면 기록물의 폐기는 1년에 한 번 이루어지도록 예정하고 있다.

□ 개인정보보호

기록물의 열람 신청과 기증 신청 등에서 작성된 이용자의 개인정보는 외부 및 타인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별도로 관리하여야 하며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에 기재된 개인정보 보존 및 이용기간(1년 : 기록물 기증·기탁 이후 지체 없이 파기)을 엄수하여야 한다. 또한 기록물에 기재된 개인정보에 대해서도 비공개대상정보로써 관리하여야 하며 개인정보가 포함된 기록물은 비공개하거나 개인정보를 가리고 공개하는 부분공개로 설정되어야 한다.

□ 기록물의 저작권

일반적으로 조직 및 단체에서 생산된 경우 기록물을 생산한 직원이 아닌, 그 해당 법인이 저작권 및 소유권을 가지게 된다. 따라서 아이큐생협 내부조직에서 생산된 기록물의 경우 생산한 직원이 속한 조직이 저작권과 소유권을 가지며, 아이큐 아카이브로 이관된 경우 해당 기록물의 저작권과 소유권은 아이큐 아카이브로 귀속되어야 한다. 이관된 후에도 저작권과 소유권이 아이큐 아카이브로 이관되지 않는다면 기록물을 활용함에 있어 제한사항이 따를 수밖에 없다.

저작권 문제에 있어 더욱 예민한 부분은 수집기록물 영역이다. 수집기록물의 경우 수집하는 과정에서 저작권과 소유권의 문제를 명확하게 규정하여야 한다. 해당 기록물이 아이큐 아카이브로 기증되어 소유권이 이관되더라도 저작권마저 이관됐다고 판단할 수 없다. 기록물을 수집할 경우 기록물의 대한 소유권과 저작권 문제를 명확히 하고 저작권에 대한 이양이 없었을 경우 해당기록물의 자체적인 활용은 할 수 없다.

따라서 기록물을 이관 받거나 수집할 경우 기록물의 대한 소유권과 저작권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고 각각의 기록물에 따른 저작권 현황⁵⁾을 작성하여 기록물과 함께 관리되어야 한다.

□ 기록물 수집과 협력사항

아이큐생협과 협동조합 관련된 기록물을 이관 및 수집하는 아이큐 아카이브는 동종업계 아카이브 및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맺을 필요가 있다. 특히 한살림, 두레생협, 행복중심생협 등과의 아카이브 협력을 통한 통합적 기록물 목록 공유 체계를 확립하고 한국협동조합학회 및 단체들과의 연계를 통해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기록물 수집 및 관리의 고도화를 추진할 수 있다. 다만, 아카이브의 필요성의 인식과 활성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시점에서 당장 추진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른다.

□ 기록물 수집의 책임과 권한

아이큐 아카이브의 기록물관리전문요원은 기록물을 수집할 권한이 있으며, 타 조직에 기록물의 이관을 요청할 수 있다. 그리고 수집된 기록물을 관리하고 보존할 책임이 따른다. 기록물의 분실 및 훼손이 발생하는 경우 1차적으로 기록물관리전문요원에게 그 책임이 따르며, 실제 그 기록물을 분실하거나 훼손한 사람에게 책임이 따른다.⁶⁾ 또한 기록물 수집의 주체가 되는 아이큐협동조합연구소는 보존해야 할 가치가 있는 기록물이 무단으로 폐기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기록물의 보존환경을 구축할 의무가 있다.

5) 해당 기록물의 소유권과 저작권은 누구에게 있는가? 1차 저작물의 활용만 가능한 것인지? 1차 저작물을 활용한 2차 저작물의 생산도 가능한 것인지? 등에 대한 구체적인 저작권에 대한 정보를 담아야 한다.

6) 기록물을 분실 및 훼손, 외부유출 등과 관련하여 규정이 마련되어야 한다.

아이쿱 아카이브 비공개대상정보(안)

아이쿱 아카이브가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아래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1. 법률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 ① 근로자의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 제6항)
 - ② 통계작성을 위해 수집된 개인 또는 법인이나 단체의 비밀에 속하는 통계기초자료(통계법 제33조)
 - ③ 우편물의 검열·전기통신의 감청 또는 통신사실 확인자료,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 대화 내용(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 ④ 직무 발명의 내용에 대한 사항(발명진흥법 제19조)
2. 공개될 경우 아이쿱넷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정보
 - (예시) 아이쿱의 정보통신망 및 시스템 관리에 관한 사항
 - 구례 및 괴산자연드림파크 내부 설계도/배치도/평면도/단면도 등
3. 공개될 경우 조합원·직원·생산자 등의 생명·신체·재산의 보호에 현저히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아래 예시)
 - 아이쿱넷 관련 청사 및 건축물 등의 보안 및 경비에 관한 사항
 - 위법, 부정행위 등의 신고자, 피의자, 참고인에 관한 사항
 - 상·벌점 및 경위서(책임관리) 및 신고제보 등에 관한 사항
4.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로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인정되는 정보
5.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 등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으로서 공개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다만,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을 이유로 비공개할 경우에는 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검토 과정이 종료되면 공개로 전환할 수 있다.(아래예시)
 - 불시감사계획, 불시 지도점검계획
 - 채용 응시자의 성적, 석차, 답안 등
 - 심사위원의 후보자 명단

- 비공식/미확정 유관기관 협의 내용
 - 입찰종료 이전 입찰참가 신청서 및 첨부서류
6.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아래 예시), 다음의 각 항목에 열거한 정보(①~②)는 제외한다.
- 성명,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 자택 주소, 개인 이메일 주소
 - 학력 및 경력, 가족관계, 급여현황
 - 징계내역, 개인사유로 인한 휴가 내역 등
- ① 직무를 수행한 직원의 성명 및 지위
 - ②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
7.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상·영업상의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할 경우 상당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정보. 다음의 각 항목에 열거한 정보는 제외한다.
- ① 사업 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危害)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 ② 위법·부당한 사업 활동으로부터 조합원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 ③ 협동조합기본법 제49조와 제49조의2에 의하여 경영공시대상정보에 한하여 조합원에게 제공할 수 있는 정보(조합원과 채권자에 한함)
8. 공개될 경우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정보
9. 정보부존재 및 아이쿱넷에 소유권 및 저작권이 없는 일체의 정보

IX. 연구소 발행 단행본 및 보고서 목록

1. 단행본

번호	발행 년도	제 목	저 자 / 역 자
1	2006	『생활 인프라의 사회적 활용과 그 미래』	일본 21세기코프연구센터 저 한국 생활연합회 역
2	2008	『iCOOP생활 10년사: 협동, 생활의 윤리』	iCOOP생활연대 저
3	2008	『일본 워커즈 콜렉티브 활동 사례연구』	김주숙 · 김미영 · 김양희 · 안세희 · 정금수 · 이향숙 저
4	2008	『생활 속의 협동』	오사와 마리 저 아이쿱협동조합연 구소 옮김
5	2009	『세상을 바꾸는 소비자의 힘 2009 윤리적 소비 체험수기 공모전 수상집』	아이쿱협동조합연구소 엮음
6	2009	『새로운 생활운동』	한국생활연대 엮음 (초판 : 2002)
7	2011	『뒤영벌은 어떻게 나는가』	이바노 바르베리니 저 김형미 · 김영미 옮김
8	2012	『한국 생활협동조합운동의 기원과 전개』	김형미 외
9	2012	『협동조합, 그 아름다운 구상』	에드가 파넬 저 염찬희 옮김
10	2012	『후쿠이생활협회의 도전』	일본생활연합회 엮음 이은선 옮김
11	2012	『일러스트로 배우는 생활협동조합 매장 운영 가이드 북』	오리토이사오와카니시 케이코 저 이은선 옮김
12	2012	『현대일본생활협동운동소사』	사이토 요시아키 저 다나가 히로 시 옮김
13	2012	『꺼지지 않는 협동조합의 불꽃』	와카츠키 타케유키 저 이은선 옮 김
14	2013	『살아 숨쉬는 마을 만들기』	니시무라 이치로 저 번역모임 연

			리지 율김
15	2013	『로치데일 공정선구자 협동조합 역사와 사람들』	조지 제이콥 홀리요크 저 정광민 율김
16	2013	『협동조합 운영 사례집』	서울특별시
17	2013	『진짜 가격은 얼마인가요(2013)』(E-Book)	아이쿱협동조합연구소 엮음
18	2014	『진짜 가격은 얼마인가요(2014)』(E-Book)	아이쿱협동조합연구소 엮음
19	2014	『협동조합 키워드 작은 사전』	김기태 · 김형미 · 신명호 · 장종익 · 정병호 외 저
20	2014	『협동과 연대의 인문학』	김창진 편저
21	2015	『iCOOP생협 2015년 입문협동조합』	아이쿱협동조합연구소 엮음
22	2015	『사람을 탐하다:협동조합 역사에서 살아온 그 사람을 탐하다』	인물탐구동아리 '사탐' 저
23	2015	『스웨덴에서 협동조합을 배우다』	아너스 오르네 저 이수경 율김
24	2015	『21세기의 협동조합 - 레이들로보고서』	A.F.레이들로 저 염찬희 율김
25	2015	『영국협동조합의 한 세기』	G.D.H. 콜 저 정광민 율김
26	2016	『iCOOP생협 2016년 입문협동조합』	아이쿱협동조합연구소 엮음
27	2016	『아이쿱사람들-협동조합의 문을 열다』	차형석 저 아이쿱협동조합연구소 엮음
28	2017	『산업혁명기, 협동의 공동체를 건설한 사회 혁신가 로버트 오언』	G.D.H. 콜 저 흥기빈 율김
29	2017	『기업 소유권의 진화』	헨리 한스만 저 박주희 율김
30	2018	『스무 살 아이쿱 : 협동하는 사람들의 가치와 실현』	아이쿱협동조합연구소 엮음
31	2019	『이탈리아와 독일 협동조합 100년 성공의 비결』	장종익 외 13 저
32	2019	『사회적경제의 힘 : 통계 방법론과 해외 사례들』	마리J.부샤 · 다미앙루슬리에 · CIRIEC 엮음 이상운 · 윤길순 율김
33	2019	『한국 협동조합운동 100년사 1권, 2권』	한국협동조합운동 100년사 편찬위원회
34	2019	『프랑스의 사회적경제 : 효율성에 도전하는 연대』	태에리 장테 저 편혜원 율김

31	2020	『협동조합 클로즈업 : 만들 땐 몰랐던 협동조합의 어려움』	김현하 저
----	------	----------------------------------	-------

2. 자료집

번호	발행 년도	제 목	내 용
1	2006	『생협 인프라의 사회적 활용과 그 미래』	출판기념 토론회
2	2006	『제1기 생협아카데미 자료집』	생협아카데미 1
3	2006	『제1기 생협아카데미 후속교육 자료집』	제1회 후속교육
4	2006	『제2기 생협아카데미 자료집』	생협아카데미 2
5	2006	『지속가능한 푸드시스템형성을 위한 생협의 과제』	제1회 포럼
6	2006	『한국 사회의 식문화 현황과 문제점 - 식육법의 필요에 대하여』	제2회 포럼
7	2006	『생협에서 공정무역이 갖는 의미와 방향』	제3회 포럼
8	2007	『사회발전에 있어서 협동조합의 역할』	제4회 후속교육
9	2007	『협동조합에서 출자금이 가지는 의미와 중요성』	제6회 후속교육
10	2007	『iCOOP생협 10년의 사업과 활동에 대한 정리와 평가』	iCOOP생협 10주년 기념 심포지엄
11	2007	『한일생협조합원 의식조사 결과 발표』	iCOOP협동조합연구소 창립 1주년 기념 심포지엄
12	2007	『제3기 생협아카데미 자료집』	생협아카데미 3
13	2007	『친환경 우리농산물 학교급식의 사례와 향후 과제』	제4회 포럼
14	2007	『우리밀 생산과 소비운동의 성과와 이후 과제』	제5회 포럼
15	2007	『새로운 대안운동으로써의 사회적경제와 생협운동』	제6회 포럼
16	2007	『iCOOP생협의 정체성에 대한 토론』	제7회 포럼
17	2008	『제4기 생협아카데미 자료집』	생협아카데미 4
18	2008	『제1회 대학(원)생 윤리적 소비 논문공모 수상집』	공모전 2008
19	2008	『윤리적소비의 방향과 실천적 모색 - 공정무역을 통한 제3세계 지원과 우리밀살리기운동을 통한 식량자급률 제고를 중심으로』	iCOOP생활협동조합연구소 2주년 기념 심포지엄
20	2008	『스태그플레이션 위기의 한국 경제와 생협 운동의 전	제8회 포럼

		망』	
21	2008	『광우병 촛불정국에서 생활운동체인 iCOOP생협과 이후 과제』	제9회 포럼
22	2008	『람사르총회와 논습지보전의 필요성과 과제 전망』	제10회 포럼
23	2009	『한국의 조세_재정 현황과 바람직한 방안』	제9회 후속교육
24	2009	『국제협동조합연맹(ICA)가입과 생협의 사회적 책임』	iCOOP생협 ICA가입기념 심포지엄 자료집
25	2009	『제5기 생협아카데미 자료집』	생협아카데미 5
26	2009	『생산과 소비의 상생 연계를 통한 우리밀 산업화의 과제』	우리밀 1%의 기적 10%의 희망을 위한 정책 세미나
27	2009	『2009 윤리적 소비 공모전 논문부문 수상작 논문집』	공모전 2009
28	2009	『2009년 iCOOP생협 활동가 의식조사 결과 발표』	제11회 포럼
29	2009	『생협의 노동과 임금』	제12회 포럼
30	2010	『2010 윤리적 소비 공모전 논문부문 수상작 논문집』	공모전 2010
31	2010	『제6기 생협아카데미 자료집』	생협아카데미 6
32	2010	『일본자료연구모임 '연리지' 2010년 활동 자료집』	동아리 2010
33	2010	『아시아 소비자생활협동조합 발전을 위한 ICA/iCOOP 생협 워크숍』	기타 2010
34	2010	『개정 생협법 이해』	제12회 후속교육
35	2010	『2010년 유럽영국몬드라곤 방문 보고회』	제13회 후속교육
36	2010	『개정된 생협시행령 시행규칙 내부지침에 대한 과정과 이해』	제14회 후속교육
37	2010	『통화 운동의 필요성과 추진 방향』	제13회 포럼
38	2010	『생협이 지역 사회를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	제14회 포럼
39	2010	『생협에서 공제사업이 가지는 의미와 방향』	제15회 포럼
40	2010	『2009년 iCOOP생협 조합원 소비생활과 의식 결과 보고』	제16회 포럼
41	2010	『유통인증 5년에 대한 평가』	제17회 포럼
42	2010	『아이쿱생협 활동을 위한 이론 정리를 위한 토론』	제18회 포럼
43	2011	『성공회대학교 협동조합경영학과 영국 방문보고』	제16회 후속교육
44	2011	『복지국가 스웨덴에 대한 이해』	제20회 후속교육
45	2011	『2011 스웨덴, 덴마크협동조합 - 북유럽협동조합, 사회복지 기관방문 연수보고』	제21차 후속교육
46	2011	『협동조합기본법해설』	제23회 후속교육
47	2011	『제7기 생협아카데미 자료집』	생협아카데미 7
48	2011	『일본자료연구모임 '연리지' 2011년 활동 자료집』	동아리 2011

49	2011	『한국생협운동의 기원과 전개』	(재)iCOOP협동조합연구 소 5주년 기념 심포 지엄
50	2011	『지속가능한 지역사회를 위한 사회적경제분야의 역할』	한국사회포럼 2011
51	2011	『아이쿱생협 직원 복지의 바람직한 방향』	제19회 포럼
52	2011	『조합원 활동 활성화를 위한 지원 방향 모색』	제20회 포럼
53	2011	『조합원 활동가 교육 현황, 평가』	제21회 포럼
54	2011	『iCOOP생협 공정무역 5년의 성과와 과제』	제22회 포럼
55	2011	『아이쿱생협의 새로운 생협운동 정책에 대한 평가』	제23회 포럼
56	2012	『보편적 복지시대를 열어가는 친환경무상급식운동의 성과와 향후 과제』	(재)아이쿱협동조합연구 소·(사)학교급식전국네 트워크 공동포럼
57	2012	『한국협동조합운동에 대한 진단과 과제』	2012 세계 협동조합의 해 한국조직위원회 포 럼
58	2012	『제8기 생협아카데미 자료집』	생협아카데미 8
59	2012	『2011 윤리적 소비 공모전 논문부문 수상작 논문집』	공모전 2011
60	2012	『2012 윤리적 소비 공모전 논문부문 수상작 논문집』	공모전 2012
61	2012	『2012 해외협동조합탐방의 열매를 나누다』	제24회 후속교육
62	2012	『유럽민중의 집과 지역 네트워크 iCOOP생협 경험 연구 - 윤리적 소비와 지역생협 이사회 분석』	제25회 후속교육
63	2012	『유럽생협의 성공과 실패 요인 분석』	제24회 포럼
64	2012	『일본 생협매장 사업의 실제와 시사점, (『현대일본생협운동소사』)저자에게서 듣는 일본생협운동의 전망』	출판기념세미나 및 제 26회 포럼
65	2012	『ICA 총회 및 해외협동조합 연수보고회』	제26회 후속교육
66	2012	『한국 사회의 물 공공성과 식수 안전성을 생각해 보 다』	제27회 포럼
67	2013	『일본자료연구모임 '연리지' 2012년 활동 자료집』	동아리 2012
68	2013	『2013 윤리적 소비 공모전 논문부문 수상작 논문집』	공모전 2013
69	2013	『CS자유대학 - 수강생 격언집』	기타
70	2013	『윤리적인 언론 소비, 어떻게 할 것인가?』	제27회 후속교육
71	2013	『농지가격이 친환경 농산물 가격에 미치는 영향』	제28회 포럼
72	2013	『공정무역을 통한 인권 회복 활동』	제28회 후속교육
73	2013	『iCOOP생협의 공정무역 현황과 방향』	제29회 포럼
74	2013	『생활협동조합의 경제적 역할 분석』	제29회 후속교육
75	2013	『한일생협의 조합원 소비생활과 의식조사 결과 발표』	제30회 포럼

76	2013	『윤리적소비와 시민사회』	2013년 시민사회포럼·한국NGO학회·(재)아이쿱협동조합연구소 공동 기획 포럼 및 제 31회 포럼
77	2013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한 협동조합의 역할』	아이쿱생협 국제포럼 및 제32회 포럼
78	2014	『제1회 아이쿱 협동조합 논문 공모전 수상작 모음집』	공모전 2014
79	2014	『윤리적 생산을 위한 iCOOP생협 생산자들의 활동과 비전』	제33회 포럼
80	2014	『영국 코퍼라티브 그룹의 위기와 거버넌스 개혁』, 『파고르 가전 파산을 어떻게 볼 것인가』	제34회 포럼
81	2014	『아이쿱생협 생산자에게 듣다』	제30회 후속교육
82	2014	『아이쿱생협 생산자 회원의 특성』	제35회 포럼
83	2014	『협동조합 제6원칙 ‘협동조합 간의 협동’의 의미와 사례』	GSEF 2014-iCOOP SESSION 및 제36회 포럼
84	2015	『아이쿱시민협동대학 2015 졸업논문집』	시민협동대학 2015
85	2015	『경영연구동아리 2015 논문집』	동아리 2015
86	2015	『협동조합의 자금조달과 금융의 문제에 대한 전문가 간담회』	간담회 2015
87	2015	『칼 폴라니와 21세기 경제』	구례자연드림파크 개장 1주년 & KPIA 창립기념 공동포럼 및 제37회 포럼
88	2015	『‘협동조합 사이 협동’의 목표와 방도를 찾아』	제38회 포럼
89	2015	『2015년 아이쿱생협 조합원의 소비생활과 의식에 관한 조사. 2015년 아이쿱생산자회원 실태 및 의식조사』	제39회 포럼
90	2015	『제2회 아이쿱 협동조합 논문 공모전 수상작 모음집』	공모전 2015
91	2016	『세계 유기농식품 동향과 아이쿱 인증』	제40회 포럼
92	2016	『좋은 동네에서 살자: 지역사회의 내일을 만드는 협동조합』	연구소 10주년 기념 심포지엄
93	2016	『아이쿱협동조합연구소 10년 보고서』	연구소 10주년
94	2016	『친환경 우유의 생산 및 소비 확대와 낙농제도- 아이쿱생협의 판매대행제의 시사점(후속교육 : 아이쿱인증의 차별성과 농가현장보고)』	제41회 포럼 및 후속 교육

95	2016	『제3회 아이쿱 협동조합 논문 공모전 수상작 모음집』	공모전 2016
96	2016	『한·일 소비트렌드를 안다 - 소비의 키워드 '희망』』	제42회 포럼
97	2017	『김종걸의 창 - 낮은 곳으로부터의 연대와 혁신』	김종걸의 창 컬럼 모음집
98	2017	『한국협동조합 법제도 개선연구 - 협동조합 법제도를 탐구하다』	국회사회적경제포럼·(재)아이쿱협동조합연구소 공동포럼(제43회 포럼)
99	2017	『아이쿱 20년사 - 아이쿱 이야기』	제44회 포럼
100	2017	『제4회 아이쿱 협동조합 논문 공모전 수상작 모음집』	공모전 2017
101	2018	『유럽연합 협동조합법 공통원칙을 통해서 보는 한국 협동조합 제도 개선 방향』	제45회 포럼 (국회사회적경제포럼 공동포럼)
102	2018	『소비자 알권리와 GMI 표시제 한미일 국제심포지엄』	GMO 국제심포지엄
103	2018	『아이쿱생협 20주년 심포지엄 - 협동조합과 네트워크 생태계』	아이쿱생협 20주년 심포지엄
104	2018	『2018 아이쿱 조합원의 소비생활과 의식에 관한 조사 / 2018 파머스쿱 조합원의 실태와 의식에 관한 조사』	제46회 포럼
105	2019	『협동조합법의 최신 흐름과 시사점 : 포르투갈과 스페인의 협동조합법』	학술행사 (한국법제연구원 주최/국회사회적경제포럼·(재)아이쿱협동조합연구소 후원)
106	2019	『한국 사회적경제 공제의 실태와 발전 방안』	국회사회적경제포럼·(재)아이쿱협동조합연구소 공동포럼
107	2020	『협동조합 정체성을 강화하는 세제 개편 방향』	사회적경제연대포럼·(재)아이쿱협동조합연구소 공동포럼

3. 연구보고서 (수탁연구)

번호	발행 년도	수탁기관	제 목	연구자
1	2014	연구원 리포트	『훗카이도 지역 밀 산업의 시사점』	이향숙
2	2014	서울시 기획 연구	『학교건강매점 협동조합 모델개발 연구』	지민진·최은주
3	2015	고양파주 아이쿱생협	『고양파주아이쿱생협조합원의 소비생활과 의식에 관한 조사』	손범규·신효진
4	2016	양천구 기획 연구	『양천구 사회적경제 인적 자원 조사』	이향숙·김경아
5	2019	한국법제 연구원	『주요국 협동조합 관련 법체계 연구』	박광동·김형미· Hirota Yasuyuki ·강봉준·신창섭· 홍성민
6	2019	한국법제 연구원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협동조합법제 개선방안 연구』	김용진·김형미·최은 주·신창섭·이태영·김 재원
7	2020	고용노동부	『플랫폼 노동 종사자 보호를 위한 공제회 설립방안』	장진희·손정순·이 향숙
8	2021	아이쿱생협 연합회	아이쿱의 공정무역 도서 사업	김선화·신효진
9	2021	(주)쿠팡무역	아이쿱의 공정무역 백서 사업	김선화·신효진

4. 연구보고서 (일반)

번호	발행 년도	시리즈명	제 목	연구자
1	2007	연구보고 2007	『생활협동조합조합원의 소비생활과 의식에 관한 조사 보고서 - 한국생협연합회 소속 조합원을 중심으로』	김주숙·김성오 ·정원각
2	2009	연구보고 2009	『2009년 iCOOP생협 활동가 의식조사 보고서』	김아영·정원각 ·이향숙
3	2010	연구보고 2010-1	『협동조합과 지역사회 :생협운동을 중심으로』	염찬희·엄은희 ·이선옥
4	2010	연구보고 2010-2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연합회의 공제조합운영에 관한 연구』	장원봉·하승우 ·임동현
5	2010	연구보고	『생협밸리 커뮤니티 디자인 연구』	김찬호

		2010-3		
6	2010	연구보고 2010-4	『2009 iCOOP생협조합원의 소비자생활과 의식에 관한 조사』	염찬희
7	2011	연구보고 2011-1	『아이쿱생협의 교육현황, 그리고 교육효과 및 만족도에 대한 연구』	정해진
8	2011	연구보고 2011-2	『친환경농업의 육성을 위한 지자체와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협력방안』	장종익 · 김아영
9	2011	번역서 2011-1	『일본공익재단법인생협총합연구소 리포트 No.62 : 위기에 대응하는 외국생협-영국 이탈리아 스위스 스웨덴생협-의 동향』	김연숙 · 이주희 · 정화령
10	2011	번역서 2011-2	『일본공익재단법인생협총합연구소 리포트 No.64 : 협동조합의 출자금, 자본회계 문제』	김연숙 · 이주희 · 정화령
11	2012	기획연구과제 2012-1	『유럽 주요 국가 소비자협동조합의 성패요인 분석에 관한 연구』	장종익
12	2013	기획연구과제 2013-1	『지대(地代)가 친환경농업에 미치는 영향』	장상환
13	2013	기획연구과제 2013-2	『2012아이쿱생협조합원의 소비생활과 의식에 관한 조사』	염찬희 · 손범규 · 지민진
14	2013	기획연구과제 2013-3	『생협의 사회 가치 - 아이쿱생협을 대상으로-』	이향숙 · 지민진
15	2013	생활과 동향 1	『한국소비자원, 「2013 한국의소비생활 지표」 발표』	지민진
16	2014	생활과 동향 2014-1	『윤리적 소비 속, 업사이클링(Upcycling) 다시생각하기』	손범규
17	2014	생활과 동향 2014-2	『일본의 유기농업인증제도의 시사점 - 참가형 인증시스템의 의의』	지민진
18	2014	생활과 동향 2014-3	『밀레니엄세대에 동기 부여하기 - 아이쿱생협의 20대 직원의 특성을 중심으로-』	손범규
19	2014	기획연구과제 2013-4	『2013 아이쿱생협 직원의 직무만족도 조사』	손범규
20	2014	연수보고서 2014-1	『2014 ICA Research Conference in Pula, Croatia and 2014 Co-operative and Social Enterprise Summer School in Sheffield』	서진선
21	2014	기획연구과제 2014-1	『공정무역을 통한 지역사회 역량강화 iCOOP생협과 PFTC-AFTC의 파트너십』	엄은희

			연구』	
22	2014	기획연구과제 2014-2	『생협의 사회가치 2014 아이쿱생협을 대상으로』	이향숙 · 이문희
23	2015	연구원리포트 2015-1	『협동조합 자본조달 방안 중 조합원 차입금과 기금에 관한 사례 조사』	서진선
24	2015	연구원리포트 2015-2	『협동조합의 자본조달과 우선출자제도』	지민진 · 서진선
25	2015	기획연구과제 2015-1	『iCOOP생협 생산자회원의 특성- iCOOP생산자회 정회원조사 2014년도』	정은미
26	2015	기획연구과제 2015-2	『2014 아이쿱생협직원의 직무만족도 조사』	손범규
27	2015	기획연구과제 2015-3	『아이쿱생협 통계 2014』	지민진
28	2015	기획연구과제 2015-4	『2015년 아이쿱생협 조합원의 소비생활과 의식에 관한 조사』	손범규 · 이예나
29	2015	기획연구과제 2015-5	『2015년 아이쿱생산자회원 실태 및 의식조 사』	이향숙
30	2016	흐름을 읽다 1-01	『저성장 시대, 가치소비의 경험』	지민진
31	2016	기획연구과제 2016-1	『아이쿱 통계 2015』	지민진
32	2016	기획연구과제 2016-2	『친환경 우유의 생산 및 소비 확대와 낙농제도- 아이쿱생협의 판매대행제의 시사점』	장재봉
33	2016	번역서 2016-1	『협동조합의 난제-자본』	윤길순 · 최은주 · 서진선
34	2016	흐름을 읽다 1-02	『소비, 근심을 덜다-저성장기 소비의 질적 변화』	지민진
35	2017	기획연구과제 2017-1	『한국 협동조합 법제도 개선 연구 1』	협동조합 제도개 선연구회
36	2017	흐름을 읽다 2-01	『소비, 그리고 쉼(休)』	지민진
37	2017	흐름을 읽다 2-02	『생활동향연구, 2017.6』	지민진
38	2017	흐름을 읽다 2-03	『생활동향연구, 2017.7』	지민진

39	2017	흐름을 읽다 2-04	『생활동향연구, 2017.8』	지민진
40	2017	흐름을 읽다 2-05	『생활동향연구, 2017.9·10』	지민진
41	2017	흐름을 읽다 2-06	『생활동향연구, 2017.11·12』	지민진
42	2017	기획연구과제 2017-2	『GMO 없는 사료 도입에 관한 일고찰 - 생협 사례를 중심으로 -』	이향숙
43	2017	흐름을 읽다 2-07	『경기와 일상의 괴리 : ‘나’를 찾는 소비』	지민진
44	2017	기획연구과제 2017-3	『아이쿱생협의 공급망 품질관리 개선을 위한 탐색적 연구』	박상선·권영기
45	2018	I.B 2018-01	『소비자 알권리와 GMO 표시제 이슈브리프 1 - 한국 GMO 보급 및 표시제 현황』	(재)아이쿱협동 조합연구소
46	2018	I.B 2018-02	『소비자 알권리와 GMO 표시제 이슈브리프 2 - 소비자 알 권리의 제한과 그 한계』	문선혜
47	2018	I.B 2018-03	『소비자 알권리와 GMO 표시제 이슈브리프 3 - Non-GMO 표시제에 대한 주요 국가의 현황과 시사점』	노주희
48	2018	I.B 2018-04	『소비자 알권리와 GMO 표시제 이슈브리프 4 - GMO 이력추적제의 도입 필요성 : 소비자 신뢰와 위해성 차단의 관점에서』	최승환
49	2018	I.B 2018-05	『소비자 알권리와 GMO 표시제 이슈브리프 5 - BT와 GM 시대, 농업의 진로를 다시 생각한다』	장민기
50	2018	기획연구과제 2018-1	『2018년 아이쿱생협 조합원의 소비생활과 의식에 관한 조사』	지민진·신효진 ·정용찬
51	2018	기획연구과제 2018-2	『2018년 파머스쿱(Farmer's COOP) 조합원 실태 및 의식조사』	이향숙
52	2018	기획연구과제 2018-3	『한일 협동조합 공제에 대한 일고찰』	이향숙
53	2019	요약본-인포그 래픽	『2018년 아이쿱생협 조합원의 소비생활과 의식에 관한 조사 요약본(인포그래픽)』	(재)아이쿱협동 조합연구소
54	2019	요약본-인포그 래픽	『2018년 파머스쿱(Farmer's COOP) 조합원 실태 및 의식조사』	(재)아이쿱협동 조합연구소

			요약본(인포그래픽)』	
55	2019	기획연구 2019-1	『공공부문과 협동조합의 공동체 활동 비교에 관한 연구 - 주민자치센터와 아이쿱생협 지역조합을 중심으로』	정용찬
56	2019	경제소비브리 프 2019-1	『어수선한 한국 경제, 다가오는 변화』	김석희
57	2019	기획연구 2019-02	『아이쿱생협 조합원의 생협 이용 결정요인 탐색』	지민진
58	2019	기획연구 2019-03	『한국 사회적경제 공제 실태와 제도개선 방안』	이향숙
59	2019	경제소비브리 프 2019-02	『2019 경제 리뷰, 새로운 시대로의 돌입』	김석희
60	2019	기획연구 2019-04	『아이쿱생협 조합원의 생협 이용 충성도 탐색』	지민진
61	2020	기획연구 2019-05	『리뷰, 한국 생협의 궤적』	이은정
62	2020	흐름을 읽다 2020-01	『생활 일기 모음집 : 2017~2019』	지민진
	2020	학술지 게재	『한국 사회적경제 공제의 커뮤니티 기여』	이향숙
63	2020	기획연구 2020-01	『가치 전환 시대의 협동조합의 사회적 가치』	지민진
64	2020	학술지 게재	『동일성 원칙과 협동조합 조합원 지분에 대한 탐색적 연구』	신창섭
65	2020	학술지 게재	『사회적경제 기업의 사회적 성과 평가 - 부가가치 정보를 중심으로』	최은주
66	2020	경제·소비동 향브리프	『사회경제동향』	최은주
67	2021	기획연구 2020-02	『아이쿱생협 조합원 조사 조망, 2006~2018』	지민진
68	2021	기획연구 2020-03	『세이프넷 소유노동(노동자소유)과 오너파트너십 전개 과정과 의의』	이은정
69	2021	투고 예정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을 둘러싼 갈등 분석: 행위자 네트워크 이론(ANT)을 적용』	염찬희

5. 연구보고서 (아이쿱해외협동조합연구동향)

번호	발행 년도	시리즈 번호	제 목	번역자
1	2012	2012-1-1	『어떻게 사회적 혁신을 이룩할 것인가 정책 개발을 위한 프레임워크를 위하여』	이경수
2	2012	2012-1-2	『2008년 이탈리아의 협동조합』	이경수
3	2012	2012-1-3	『이탈리아 사회적 협동조합(1)』	이경수
4	2012	2012-2	『미국 협동조합 현황(1)』	이경수
5	2012	2012-3-1	『다중-이해관계자 협동조합 매뉴얼』	이경수
6	2012	2012-3-2	『다중-이해관계자 협동조합 매뉴얼-사례연구』	이경수
7	2012	2012-3-3	『유릭스 베네치아회의 최종보고서』	이경수
8	2012	2012-4-1	『다중-이해관계자 협동조합 매뉴얼-조언 Tips』	이경수
9	2012	2012-4-2	『ICA 세계 협동조합 모니터』	이경수
10	2012	2012-4-3	『협동조합 녹색경제에 연료를 공급하다-캐나다 재생 에너지 분야 보고서』	이경수
11	2012	2012-5	『로치데일의 의미: 로치데일 선구자조합과 협동조합 원칙』	이경수
12	2012	6-1	『소비자 협동조합의 지역사회 발전 접근법』	이경수
13	2013	7-1	『사회연대경제 이해하기』	이경수
14	2013	8-1	『몬드라곤 노동자 협동조합 이해』	이경수
15	2013	8-2	『지역사회 만들기와 생협』	이경수
16	2013	9-1	『식품부문의 협동』	이경수
17	2013	9-2	『자주관리돌봄: 협동조합접근방식』	이경수
18	2013	9-3	『지역복지·어르신복지와 생협의 역할 (地域福祉·高地域福祉と生協の役割)』	이경수
19	2013	10-1	『푸드 디저트 문제와 지역 커뮤니티』	이경수
20	2013	10-2	『전업주부는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경수

21	2013	11-1	『규모화 vs. 참여: 협동조합 딜레마?』	이경수
22	2013	11-2	『소비자 협동조합 인수 시도에서 얻는 이론적, 실용적 함의』	이경수
23	2013	11-3	『협동조합, 공제조합의 거버넌스: 역설 시각에서』	이경수
24	2013	12-1	『협동조합의 지역사회 관여: 조합원에서 출발해 지역사회 이익을 향해』	이경수
25	2013	12-2	『이론과 실제에서의 협동조합 회사』	이경수
26	2013	13	『대규모 협동조합, 공제조합의 조합원 거버넌스 참여: 코퍼라티브 그룹 형성평가』	이경수
27	2013	14-1	『노동자 회생기업 현황과 관련 연구』	이경수
28	2013	15-1	『노동자 회생기업 현황과 관련 연구』	이경수
29	2014	2014-1	『협동조합 조합원과 운동』	이경수
30	2014	2014-2	『무지개 깃발과 국제협동조합의 날 기원』	이경수
31	2014	2014-3	『위기 동안 이탈리아 협동조합』	이경수
32	2014	2014-4	『대규모 협동조합 사업체의 거버넌스(1)』	이경수
33	2014	2014-5	『대규모 협동조합 사업체의 거버넌스(2)』	이경수
34	2014	2014-6	『협동조합 리더십 역량평가』	이경수
35	2014	2014-7	『유럽 및 세계의 사회보안통화 실천: 사회적 기업 촉진과 관련해』	이경수
36	2014	2014-8	『사회연대경제: 해방과 재생산 사이에서』	이경수
37	2014	2014-9	『미국의 노동자 협동조합: 규모를 향해서1』	이경수
38	2014	2014-10	『미국의 노동자 협동조합: 규모를 향해서2』	이경수
39	2014	2014-11	『협동조합과 지속가능 발전:포스트 2015 논의에 대한 기여』	이경수
40	2014	2014-12	『사회연대경제와 지속가능발전의 도전: TFSSE 입장보고서』	이경수
41	2014	2014-13	『이론』『사례』『거버넌스』	이경수
42	2015	2015-1	『사회연대경제의 포스트 2015 개발의제 권고』	이경수
43	2015	2015-2	『범대서양무역투자동반자협정과 식품: 소비』	이경수

			자협동조합의 시각』	
44	2015	2015-3	『2014 아이쿱해협동조합연구동향 모음집』	이경수
45	2015	2015-4	『기후변화와 소비자협동조합: 도전에 앞서 나가기』	이경수
46	2015	2015-5	『핀란드 협동조합 운동과 SOK 역사: 핀란 드 소비자협동조합 탐구-1』	이경수
47	2015	2015-6	『핀란드 S그룹 사업모델: 식품 부문』	이경수
48	2015	2015-7	『핀란드 S그룹 비식품 부문 사업모델과 조 합원 제도: 핀란드 소비자협동조합 탐구 3』	이경수
49	2015	2015-8	『핀란드 S그룹의 거버넌스』	이경수
50	2015	2015-9	『핀란드 S그룹의 사회적책임』	이경수
51	2015	2015-10	『핀란드 S그룹의 환경 책임: 핀란드 소비자 협동조합 탐구 6』	이경수
52	2015	2015-11	『핀란드 S그룹의 직원 정책: 복리와 교육』	이경수
53	2015	2015-12	『지속가능발전 개발재원과 사회연대금융의 역할』	이경수
54	2016	2016-01	『핀란드 S그룹: 핀란드 소비자협동조합 탐 구 1-7』	이경수
55	2016	2016-02	『스페인 바르셀로나 시의 사회적연대경제의 현황』	이향숙
56	2016	2016-03	『이탈리아 협동조합의 역사: 이탈리아 소비 자협동조합 탐구 1』	이경수
57	2016	2016-04	『이탈리아 레가 역사와 지역·부문 조직: 이 탈리아 소비자협동조합 탐구 2』	이경수
58	2016	2016-05	『이탈리아 레가 거버넌스와 주요 활동: 이탈 리아 소비자협동조합 탐구 3』	이경수
59	2016	2016-06	『이탈리아 레가 불로냐 주요 활동: 이탈리아 소비자협동조합 탐구 4』	이경수
60	2016	2016-07	『레가 소비자협동조합 ANCC-COOP 주요 활동: 이탈리아 소비자협동조합 탐구 5』	이경수
61	2017	2017-01	『레가 소비자협동조합 ANCC-COOP 거버넌 스: 이탈리아 소비자협동조합 탐구 6』	이경수
62	2017	2017-02	『바르셀로나 시청의 사회적연대경제추진 정 책』	이경수
63	2017	2017-03	『이탈리아협동조합연맹 알레안차: 이탈리아 소비자협동조합 탐구 7』	이경수
64	2017	2017-04	『이탈리아 소비자협동조합 탐구: 2016 아이	이경수

			쿠팡외협동조합연구동향 모음집』	
65	2017	2017-05	『협동조합의 국제화와 몬드라곤의 도전: 몬드라곤의 경영 탐구 1』	윤길순
66	2017	2017-06	『몬드라곤 협동조합 조직 구조의 진화: 몬드라곤의 경영 탐구 2』	윤길순
67	2017	2017-07	『몬드라곤 협동조합의 자본 조달: 몬드라곤의 경영 탐구 3』	윤길순
68	2017	2017-08	『몬드라곤 협동조합의 경영 교육: 몬드라곤의 경영 탐구 4』	윤길순
69	2017	2017-09	『사람 중심의 일터: 사회 혁신 생태계 몬드라곤 사례연구: 몬드라곤의 경영 탐구 5』	윤길순
70	2017	2017-10	『몬드라곤 협동조합과 노동조합』	윤길순
71	2018	2018-01	『몬드라곤의 경영 탐구』 모음집	윤길순
72	2018	2018-02	『유럽소비자협동조합연합회-유로쿱의 활동과 정책』	가지가지살롱협동조합
73	2018	2018-03	『유럽소비자협동조합연합회-유로쿱의 활동과 정책 2』	가지가지살롱협동조합
74	2018	2018-04	『협동조합 과세 : 일반적 가이드라인과 문제들』	번역협동조합
75	2020	2020-01	『농업과 푸드시스템은 기후위기에 어떤 영향을 주고받는가?: 기후위기시대의 푸드 솔루션 1』	이미옥
76	2020	2020-02	『채식 위주의 식단이 주목받는 이유: 기후위기시대의 푸드 솔루션 2』	이미옥
77	2020	2020-03	『유기농을 넘어 지구환경을 되살리는 농업 방식: 기후위기시대의 푸드 솔루션 3』	이미옥
78	2021	2020-04	『음식물 쓰레기와 식품 패키징의 해법을 찾아: 기후위기시대의 푸드 솔루션 4』	이미옥

6. 연구보고서 (영문보고서, 번역본)

번호	발행 년도	제 목	저 자
1	2011	Cooperation between Consumer Co-ops and Local Communities: Focusing on the Case of iCOOP KOREA, Seoul: iCOOP Co-operative Institute	YEOM Chanhee

2	2013	iCOOP Members' Consumption Pattern and Attitude Survey, Seoul: iCOOP KOREA	YEOM Chanhe et al.
3	2013	Emerging Dual Legal Frameworks of Social Enterprise in South Korea: Backgrounds and Prospects, 4th conference of EMES held at the University of Liege, 2013.	JANG Jongick
4	2013	Flux on Korean Consumer Cooperative Activities, Conference on Global Cooperative Project, Sweden, Stockholm	KIM Hyungmi
5	2014	Community Empowerment through Fair Trade: The case study on partnership between iCOOP KOREA and PFTC/AFTC, (Translator: LEE Kyungsoo) Seoul: iCOOP Co-operative Institute	EOM Eunhui
6	2014	A Study on Price Stability in Consumer Co-operatives: Focusing on the Asymmetric Price Transmission for Agricultural Products of iCOOP Korea, ICA Global Research Conference (Finance Session), Pula, Croatia, June 25-28	Ji Minjin and CHOI Wooseok
7	2014	A Business Model for Healthy School Tuck Shop Cooperatives, International Conference on Social Enterprise in Asia (I, Wonju, Korea, July 4-6)	Ji Minjin and CHOI Eunju
8	2014	Feedback from iCOOP KOREA to the Guideline of ICA Co-operative Principles, Seoul: iCOOP KOREA	OH Miyea
9	2014	iCOOP KOREA's Cooperation with Social Economy Sector, 2014 Inaugural Meeting of Global Social Economy Forum, Seoul, November 17-19	LEE Jungjoo
10	2015	iCOOP KOREA's Social Value 2014, Seoul: iCOOP Co-operative Institute	LEE Hyangsook and LEE Munhee
11	2016	2015 iCOOP Association of Producer Group Member Survey	LEE Hyangsook
12	2016	2015 iCOOP KOREA Members' Consumption Pattern and Attitude Survey	SON Beomkyu and LEE Yena
13	2016	Making a Better Community: Co-operatives Driving Communities' Future, iCOOP Co-operative Institute 10th Anniversary Commemorating Symposium	SHIN Dong-Wook, HEO Jun-Gi, HWANG Ji-Eae, JEONG

			Hwa-Ryung
14	2017	Creating a New Commons:A Case Study of iCOOP's Natural Dream Park	YEOM Chanhee
15	2017	A Study on the Introduction of non-GMO Feed : focusing on the consumer co-operatives cases	LEE Hyangsook
16	2018	Reflection of 12 years on Rice Paddy Biodiversity Programme with citizens in Korea	IM Jeonghyang
17	2018	Consumer Rights and GMO Labeling	CHOI Seunghwan, Zen Honeycutt, Michico KoKetsu et al
18	2018	2018 iCOOP Korea Members' Consumption & Attitude Survey	Ji Minjin, SHIN Hyojin, JEONG Yongchan
19	2018	2018 Farmers's COOP Members' Situation & Attitude Servey	Lee Hyangsook

(재) 아이쿱협동조합연구소

www.icoop.re.kr